조사자료 2026-00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Budget : FY 2026

나영식, 신우영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진

나영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전문관리원)
신우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손영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이경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방영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조사자료 2026-00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 **발행인 :** 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황지호)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Tel) 043-750-2300
  Fax) 043-750-2680
  http://www.kistep.re.kr
- **인쇄 :** 주식회사 동진문화사

일 러 두 기

- 본 보고서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일반적인 개념과 2026년도 예산의 상세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자료의 통계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 수치 마지막 단위와 증감 및 증감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 비중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본문 표에서 금액의 '0'과 비중의 '0.0'은 소수점 이하에 해당 값이 있지만, '-'는 해당 금액과 비중 값이 없음을 의미
  - 증감 및 증감률의 △는 감소(-)를 의미
  - 증감률의 '순증'은 +100%, 증감률의 '순감'은 -100%를 의미

- 본 조사자료에서 부처명과 회계명은 본명과 약자가 병기될 수 있습니다.
  약자 목록은 다음 페이지 〈약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법·제도와 안건은 「」로, 세부사업 명칭의 경우 〈〉로 표기합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며, 본 보고서와 관련한 문의사항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영식(ysna@kistep.re.kr, 043-750-2523)

약자 표

부처명	약자	회계명	약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일반회계	일반
경찰청	경찰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고특
고용노동부	고용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특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지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세청	관세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
교육부	교육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소특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조실/총리비서실		
국방부	국방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특
국토교통부	국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특
기상청	기상청	조달특별회계	조특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기재부 기획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특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기재부 재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특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환특
농촌진흥청	농진청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국가유산보호기금	유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
방위사업청	방사청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법무부	법무부	기후대응기금	기후
법제처	법제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폐
보건복지부	복지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발
산림청	산림청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촉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산업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진
소방청	소방청	원자력기금	원자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여가부/성평등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정진
외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진
우주항공청	우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인사혁신처	인사처		
조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질병관리청	질병청		
통일부	통일부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청/지재처		
해양경찰청	해경청		
해양수산부	해수부		
행정안전부	행안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기후부		

요약문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Budget : FY 2026

Ⅰ. 총괄 현황

■ ’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전년 대비 19.9%(5조 9,010억 원) 증가한 35조 4,978억 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6조 1,162억 원, 특별회계가 6조 9,299억 원, 기금이 2조 4,517억 원임

Ⅱ. 분야별 현황

■ 주요/일반R&D 예산은 주요R&D 분야 30조 2,810억 원, 일반R&D 분야 5조 2,168억 원임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25년 대비 16.3% 증가한 4조 1,856억 원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연구기관 예산은 ’25년 대비 31.9% 증가한 7,148억 원임

Ⅲ. 신규·종료사업

■ ’26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6개 부·처·청·위원회의 302개 사업(1조 6,707억 원)이며, ’25년 종료사업은 24개 부·처·청·위원회의 208개 사업(9,578억 원)임

- 신규사업의 부처별 예산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5,510억 원, 33.0%)가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산업통상부(3,379억 원, 20.2%), 기후에너지환경부(3,031억 원, 18.1%) 순임
- 종료사업의 부처별 예산 규모 순으로는 산업통상부(2,160억 원, 22.6%)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20억 원, 16.9%), 기획재정부(943억 원, 9.8%), 국토교통부(910억 원, 9.5%) 순임

Ⅳ. 부처별 현황

■ ’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3.2%(11조 7,930억 원)로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16.5%(5조 8,396억 원), 산업통상부 14.7%(5조 2,15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6.2%(2조 1,959억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6.2%(2조 1,922억 원) 등이 뒤를 이음
-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 상위 5개 부처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7%에 이르며, 상위 3개 부처 예산 기준으로는 64.4% 수준임
- ’25년 산업통상자원부(’26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됨

Ⅴ. 특별회계별 현황

■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특별회계 총액은 ’25년 대비 13.6%(8,271억 원)가 증가한 6조 9,299억 원임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 특별회계 중 35.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9% 증가한 2조 4,229억 원 규모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4.5% 증가한 1조 2,184억 원이며, 조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9.5% 증가한 80억 원임
-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 특별회계에서 상위 5개 특별회계가 92.3%를 차지함

Ⅵ. 기금별 현황

■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기금 총액은 ’25년 대비 15.6%(3,313억 원)가 증가한 2조 4,517억 원임

- ’25년과 마찬가지로, ’26년 기후대응기금이 전체 정부연구개발 기금 예산의 33.4%(8,182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기후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28.0%(1,790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전년 대비 16.9%(917억 원) 증가함

목차

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1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념정의 3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주요 특징 8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변천과정 8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특징 11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와 지원방식 12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 12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원방식 15

제4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와 재정제도 16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 16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재정제도 22
3.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기타 재정제도 30

제5절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34
1. OECD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정의 34
2.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34

Ⅱ.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39

제1절 개 요 41

제2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1967년~1998년) 44

제3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1999년~2004년) 46

제4절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2005년~2007년) 48

제5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2008년~2011년 3월) 49

제6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2011년 3월~2013년 3월) 51

제7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2013년 3월~2017년 7월) 52

제8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2017년 7월~2022년 5월) 54

제9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2025년 4월) 56

제10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2025년 6월~현재) 57

Ⅲ.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61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 총량 추이 63

1. 중장기 추이 63
2. 부문별 추이 65
3. 회계별 추이 66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편성과정 68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방향 70

제4절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72

제5절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74

1. 주요/일반R&D 현황 74
2.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75

제6절 신규·종료사업과 세부사업 개편 현황 77
1. 2026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77
2. 2025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78
3. 2026년도 세부사업 개편 현황 79

Ⅳ. 2026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81

제1절 부처별 총괄 현황 83

제2절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8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
2. 방위사업청 87
3. 산업통상부 88
4. 중소벤처기업부 90
5. 기후에너지환경부 92
6. 교육부 94
7. 보건복지부 95
8. 우주항공청 97
9. 해양수산부 98
10. 농촌진흥청 99
1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00
12. 국토교통부 101
13. 질병관리청 103
14. 농림축산식품부 104
15. 기상청 105
16. 식품의약품안전처 106
17. 산림청 107
18. 문화체육관광부 108
19. 행정안전부 109
20. 해양경찰청 110
21. 국방부 111
22. 기타 부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2

Ⅴ. 2026년도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3

제1절 총괄현황 115

제2절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7

1.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17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9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1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3
5. 환경개선특별회계 125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7
7. 교통시설특별회계 129
8. 기타 특별회계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1

Ⅵ. 2026년도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3

제1절 총괄현황 135

제2절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7

1. 기후대응기금 137
2. 전력산업기반기금 139
3. 원자력기금 141
4. 방송통신발전기금 143
5. 정보통신진흥기금 145
6. 과학기술진흥기금 147
7. 기타 기금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49

참고문헌 151

표 목차

표 1-1	R&D 통계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	5
표 1-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6
표 1-3	최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회계 및 재원 변동 이력	9
표 1-4	16대 지출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1
표 1-5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구조 (예시)	12
표 1-6	주요 부처별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설립 근거	13
표 1-7	연구개발 분야 출연금의 목적에 따른 분류	15
표 1-8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	17
표 1-9	2026년 우리나라 정부재정 구조	18
표 1-10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개념	19
표 1-11	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간 상호 비교(2022년~2026년)	21
표 1-12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편성절차	23
표 1-13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비교	23
표 1-14	연구개발 분야의 조세감면액(2024년~2026년)	26
표 1-15	추가경정예산의 정책분야별 재원배분과 연구개발부문 편성 현황(2016년~2025년)	28
표 1-16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R&D 예산 현황(2025년~2026년)	33
표 1-17	회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R&D 예산 현황(2025년~2026년)	33
표 1-18	OECD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14년~2023년)	35
표 2-1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제도의 변천과정	42
표 2-2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체제 관련 법 개정 현황	54
표 2-3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관련 주요 국정과제	56
표 2-4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체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및 법률 개정 현황	57
표 2-5	대형R&D 사전점검제도 관련 근거 및 유형	58
표 3-1	2026년도 정부R&D 중점 투자방향	70
표 3-2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2023년~2026년)	72
표 3-3	주요/일반R&D 예산 현황(2023년~2026년)	74

표 목차

표 3-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2023년~2026년)	75
표 3-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현황(2023년~2026년)	76
표 3-6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2022년~2026년)	77
표 3-7	2025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78
표 4-1	2026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84
표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85
표 4-3	방위사업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87
표 4-4	산업통상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88
표 4-5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90
표 4-6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92
표 4-7	교육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94
표 4-8	보건복지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95
표 4-9	우주항공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97
표 4-10	해양수산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98
표 4-11	농촌진흥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99
표 4-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0
표 4-13	국토교통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1
표 4-14	질병관리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3
표 4-15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4
표 4-16	기상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5
표 4-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6
표 4-18	산림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7
표 4-19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8
표 4-20	행정안전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09
표 4-21	해양경찰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10
표 4-22	국방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11

표 4-23	2026년도 기타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12
표 5-1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22년~2026년)	116
표 5-2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개요	117
표 5-3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운용 현황(2025년~2026년)	118
표 5-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요	119
표 5-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용 현황(2025년~2026년)	120
표 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121
표 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22
표 5-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개요	123
표 5-9	환경개선특별회계 개요	125
표 5-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개요	127
표 5-11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요	129
표 5-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131
표 6-1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22년~2026년)	135
표 6-2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입 이력	136
표 6-3	기후대응기금 개요	137
표 6-4	기후대응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 사업추진부처별 현황(2025년~2026년)	138
표 6-5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139
표 6-6	원자력기금 개요	141
표 6-7	원자력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 사업추진부처별 현황(2025년~2026년)	142
표 6-8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요	143
표 6-9	정보통신진흥기금 개요	145
표 6-10	과학기술진흥기금 개요	147

그림 목차

그림 1-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2026년) 8
그림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25
그림 1-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25
그림 1-4 추가경정예산 추이(재원조달규모 기준, 2000년~2025년) 27
그림 1-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성과 추이(2020년~2024년) 31
그림 1-6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건수 및 징수액(2024년) 31
그림 1-7 OECD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00년~2023년) 36
그림 1-8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과 GDP 대비 비중(2023년) 37
그림 1-9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2023년) 38
그림 2-1 국과위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47
그림 2-2 과학기술본부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48
그림 2-3 연구개발 종합조정 기능의 분산 49
그림 2-4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50
그림 2-5 국과위와 재정부 간의 예산배분·조정 대상사업 범위 51
그림 2-6 미래부와 기재부 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흐름도 52
그림 2-7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흐름도 55
그림 2-8 대형R&D 유형별 사전점검 제도 절차 58
그림 3-1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가율 추이(1998년~2026년) 64
그림 3-2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및 전망(2019년~2029년) 65
그림 3-3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1998년~2026년) 67
그림 3-4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확정 과정 68
그림 3-5 2026년도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77
그림 4-1 2026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83
그림 5-1 최근 5년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121
그림 5-2 최근 5년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123

그림 5-3 최근 5년간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125
그림 5-4 최근 5년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127
그림 5-5 최근 5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129
그림 6-1 최근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139
그림 6-2 최근 5년간 원자력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141
그림 6-3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143
그림 6-4 최근 5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145
그림 6-5 최근 5년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147

I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념정의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주요 특징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와 지원방식
제4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와 재정제도
제5절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념정의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 정의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임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미래 핵심기술의 선행적 개발을 지원하며,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기술 영역인 기초·공공·복지 분야의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엄익천·이장재, 2009, p40)
- 재정 분야 측면에서 보면 연구개발예산은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및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임

■ 적용 범위는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기획재정부, 2025)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사업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 R&D 사업)과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일반 R&D 사업)으로 구분됨
- 주요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이상 대형 중장기 사업,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예산 배분 및 주요 내역을 심의함

① 상위 계획에 의거한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③ 새로운 지식 획득을 위한 기초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그 밖에 유사·중복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다부처 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출연기관 인건비·경상비 등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19년)으로 R&D 수행과 기관운영 간 유기적 연계를 명목 아래 처음으로 출연기관 운영비 등 주요R&D 사업으로 통합
- '23년 과기계 출연연 연구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주요사업비)는 주요R&D, 시설비는 일반R&D로 분리

- 일반 R&D 사업은 주요 R&D 사업이 아닌 과기계 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일부 국방 분야(高보안 수준), ODA 관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배분 및 주요 내역을 심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한 국방R&D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정식 심의대상으로 포함

■ **연구개발은 보통 연구개발의 통계분류인 OECD 권고기준(Frascati Manual)을 기본으로 하되, 직접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집계함**

- 연구개발은 지식[1]의 집적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지식을 통한 새로운 응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임(OECD, 2015)
  - 정부연구개발예산(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GBARD)은 국가의 표준 예산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 예산으로, 정부의 모든 하부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개발지출을 포괄함

■ **연구개발사업의 분류는 크게 세 분류로 ①연구개발예산으로 전액 포함하는 경우, ②관련 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만을 분리하는 경우, ③연구개발예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구분됨[2]**

-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 연구개발기반조성, 각 부처 정책연구비는 연구개발예산에 전액 포함
- 국립대학 등의 일반 운영지원,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특수고등교육기관, 연구개발활동을 병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은 관련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만을 분리
- 시험분석, 품질인증, 일반목적의 자료(Data)수집·처리·분석 예산 등은 연구개발예산에서 제외

■ **우리나라의 실무적 관점에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1개 분야 세출예산에 속해있는 연구개발예산과 순수 연구개발예산을 합한 것임[3]**

- 정부 총지출은 연구개발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와 순수 R&D, 통신,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 기타분야를 더한 값으로 산출함(국회예산정책처, 2014, p167)

■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분류의 기준은 변경될 수 있고 부처간 협의에 의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OECD 권고기준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함**

---

1) 인간,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을 포함.

2)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3)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의 16대 분야를 12대 분야로 다시 집계하여 발표하는데, 여기에 연구개발 부문이 포함됨. 12대 분야별 예산 추이는 [부록-11] 참조.

표 1-1 R&D 통계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4)]

대분류	소분류	내용	예시 사업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과학기술 활 동	연구개발 (R&D)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연구개발 과제 지원 • 연구기관 지원 • 고급인력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관련한 단순 교육훈련·연수 활동 (고급인력 양성사업 제외)	• 이공계 장학사업 • 교육과정개발 • 강의·연수지원 • 초중등교육지원
	과학기술 서 비 스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서비스
연구개발비로 분류되는 경비			
경상비	인건비	연구개발 참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기 타 경상비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 지출 (건물·장비 유지비, 재료비, 소규모 장비비, 운영 경비, 간접지원비 등)	
자본적 지 출	토지·건물	연구개발을 위한 토지·건물, 대규모 보수·수리비	
	기기·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고가의 기기와 장비비, 대규모 보수·수리비, 기기·장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4) 1963년 6월 이탈리아 프라스카티에서 열린 OECD회의에서 연구개발 통계조사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최초로 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OECD Frascati Manual」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의 정의와 그 하부 행위들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음 (2015년 제7판 발간)

표 1-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전액 연구개발 예산에 포함		
① 국책연구개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 포함 : 신규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모든 연구개발 • 제외 : 단순조사사업, 타당성 검토, 일상적인 전산화, 연구행정 지원 등	•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서비스 R&D 포함 및 연구기획평가관리비 • 제외 : 단순조사사업, 일상적인 전산화사업 등은 제외
② 연구기관지원 (국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등)	• 포함 : 전체 활동 중 연구개발활동이 90%이상인 연구기관의 모든 지원예산(이공계, 인문사회계 모두 포함) • 제외 : 연구개발활동이 10% 이하인 기관	• 포함 : 연구개발이 주목적인 국립연구기관, 출연(연) 및 대학연구소 및 연구기획·평가·관리가 주목적인 전문기관 등의 모든 지원경비 (이공계, 인문사회계 모두 포함) • 제외 :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협회 및 단체활동
③ 연구개발기반조성 (테크노파크, 신기술 보육 사업,지역 기술혁신센터 등)	• 포함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반조성 경비 • 제외 : 교육훈련, 시험검사, 기술 정보지원 등에 관련된 시설, 장비, 건물	• 포함 : 연구개발시설, 연구동건립, 연구단지조성, 지역 연구개발센터 등의 예산은 모두 포함 • 제외 : 연구개발이 필요없는 단순한 표준화 활동지원, 시험장 건설, 전시관 건립 등 시설·장비 관련 사업
④ 정책연구 (각부처 정책연구비)	• 포함 :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정책 연구 • 제외 : 정책의 분석, 평가, 정책 위원회 등의 활동	• 포함 :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연구 목적의 정책연구는 포함 • 제외 : 정책의 분석, 평가, 정책 위원회 등의 활동
관련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만을 분리		
① 국립대학 등의 일반 운영 지원	• 포함 : 대학일반지원금 중 교수 인건비의 일부 및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분리 포함 • 제외 : 비연구개발활동 관련예산	• 분리포함 : 대학 일반지원금 중 교수 인건비에 대해 연구시간 계수를 적용하여 분리 포함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0.5 - 전문대·개방대·교육대: 0.3 • 제외 : 연구목적이 아닌 강의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 (예시)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연구보조
② 대학의 특정 목적지원 사업 (우수대학원 중점 육성사업, 대학원 중심 및 우수 지방대 지원 등)	• 포함 : 연구목적의 모든 지원금은 포함하되 혼합된 경우 연구 개발부분은 분리 포함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은 포함) • 제외 : 단순 실험실습 등 순수 교육 목적 지원	• 포함 : 연구목적이 명확한 대학연구 시설, 대학연구소, 박사과정 연구지원 등은 전액 포함 • 분리포함 : 혼합된 예산인 우수대학원 중점사업 등은 전체 사업비에 대학의 연구시간계수인 0.4를 적용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③ 특수고등교육 기관 (산업기술대학 등)	• 포함 : 연구개발활동비율만큼만 포함 • 제외 : 순수교육관련 활동	• 분리포함 : 전체 지원금에 대해 대학의 연구시간계수를 적용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0.5 - 대학원과정이 없는 대학 및 전문대학: 0.3
④ 연구개발활동을 병행하는 시험검사기관	• 포함 : 새로운 시험검사방법의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만 포함 • 제외 : 일상적인 시험검사, 표준유지 및 품질인증 등	• 분리포함 - 국립시험검사기관 : 【(인건비+기준성 기본사업비)×연구계수 (연구인력수/전체 인력수)】+ 주요사업비중 연구개발사업 - 기타 출연 및 보조기관 : 정부지원예산 × 연구계수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전체예산)
연구개발 예산에서 제외		
①시험분석, 품질인증, 일반적인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 전액 불포함	• 전액 불포함
② 일반목적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 제외 : 지도제작, 지질학적·해양학적·기상학적 조사 및 관측, 시장조사, 센서스 등 • 포함 :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 처리 · 분석	• 좌동
③ 타당성조사	• 제외 :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공단·항만 등의 타당성 검토	• 제외 : SOC 설계검토, 공단 · 항만의 타당성 검토
④ 특허 및 라이센스	• 제외 :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모든 행정적 · 법적 업무 • 포함 :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특허 · 라이센스 업무	• 제외 : 연구개발과 관계없는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업무
⑤ 의료기관	• 제외 : 일상적인 의료행위 • 포함 : 임연구 등 새로운 질병치료 방법 및 임상연구	• 좌동
⑥ 융자지원	• 제외 : 원칙적으로 제외 • 포함 : 상환이 면제되는 융자금	• 전액 불포함

* 기준 변경 및 부처간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주요 특징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변천과정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26년도 기준 총 31개 부·처·청·실·위원회의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15개 부·청·실), 13개 기금(7개 부·청)에서 충당됨

그림 1-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2026년)

2026년도 정부 R&D 예산 (354,978)

※ 괄호 안은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억 원)

일반회계 (261,162)

과기부 (89,968)	해경청 (762)
방사청 (58,396)	국방부 (749)
산업부 (30,590)	원안위 (702)
중기부 (19,999)	경찰청 (682)
복지부 (10,955)	지재처 (682)
우주청 (9,495)	농림부 (533)
농진청 (7,575)	소방청 (503)
해수부 (7,504)	기후부 (427)
국조실 (6,921)	국가유산청 (345)
국토부 (3,351)	방통위 (138)
질병청 (2,641)	개보위 (133)
기상청 (2,397)	법무부 (52)
식약처 (1,719)	관세청 (49)
문체부 (1,413)	경호처 (33)
산림청 (1,385)	기획처 (8)
행안부 (1,058)	

10개 특별회계 (69,299)

1. 기타특별회계 (69,096)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4,229)

산업부 (19,485) 과기부 (4,639) 중기부 (10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749)

교육부 (14,323) 과기부 (1,4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184)

과기부 (8,378)	복지부 (51)
중기부 (1,855)	국토부 (50)
산업부 (1,521)	기후부 (49)
농진청 (159)	해수부 (20)
행안부 (84)	농림부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8,075)

과기부 (4,708)	산업부 (328)
기후부 (2,784)	국조실 (255)

환경개선특별회계 (3,722)

기후부 (3,7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624)

농림부 (2,068) 해수부 (415) 산림청 (141)

교통시설특별회계 (2,514)

국토부 (1,936) 해수부 (578)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5)

복지부 (113) 질병청 (2)

3. 기업특별회계 (88)

조달특별회계 (80)

조달청 (80)

우편사업특별회계 (8)

과기부 (8)

13개 기금 (24,517)

기후대응기금	기후부 (8,182)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부 (6,355)
원자력기금	과기부 (2,805)
방송통신발전기금	과기부 (2,778)
정보통신진흥기금	과기부 (2,632)
과학기술진흥기금	과기부 (59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기후부 (403)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34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산업부 (232)
국민건강증진기금	복지부 (74)
국민체육진흥기금	문체부 (65)
관광진흥개발기금	문체부 (3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부 (16)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는 회계구조 변동과 정부조직개편 등의 영향을 받아 매년 조금씩 달라짐

표 1-3 최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회계 및 재원 변동 이력

회계연도	부처	대상 사업	비고
2015년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	국민 안전 관련 사업 19개	국민안전처의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등 10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금 신설·추가
	중소기업청	〈지역기반특화지원사업〉 등 13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추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우편사업특별회계 추가
2018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일자리선도사업〉 등 3개	정부 조직개편 ('17. 7. 26.)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지원〉(일부)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정책연구개발〉 등 3개	
2019년	국토교통부 →환경부	〈물관리연구〉 등 3개	정부 조직개편 ('17. 7. 26.) 후속 조치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등 36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추가
2021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등 10개	보건복지부에서 외청으로 승격('20. 9. 12.)하면서 사업 이관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관세청	〈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	소관 첫 연구개발사업 추진
	환경부	〈대규모CCS통합실증및 CCU상용화기반구축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다부처사업 추진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외 4개 부처 →기획재정부	〈그린뉴딜유망기업100〉 등 39개	기후대응기금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등 1개	소관 첫 연구개발사업 추진

회계연도	부처	대상 사업	비고
2023년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등 22개	교육·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일반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이관)
	조달청	〈공공혁신수요기반혁신제품기술개발〉 등 1개	소관 첫 연구개발사업 추진 (조달특별회계 추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경비과학화〉 등 1개	소관 첫 연구개발사업 추진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6개 부처	〈연구개발특구육성〉 등 37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명칭 변경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	〈차세대발사체개발〉 등 34개	우주항공청 출범 ('24. 5. 27.)으로 사업 이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조사연구〉 등 7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24. 5. 17.) 및 문화재보호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명칭 변경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외 2개 부처	〈소재부품기술개발〉 등 22개	특별회계법 개정('24.12.3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명칭 변경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 30개	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로 에너지 관련 기능 이관('25. 10. 1.)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IP-R&D 전략지원〉 등 3개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면서 회계(책특회계→일반회계) 이관 ('25. 1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프로그래머블미디어핵심기술개발〉 1개	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로 미디어 관련 기능 이관 ('25. 10.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등 5개	일반회계 → 원자력기금으로 회계 이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등 49개	기후기금 관리 주체 이관('26.1.2)
	고용노동부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 1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추가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특징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다른 예산 부문과 달리 독자적 배분·조정 체계의 필요성, 세부사업별 성격의 이질성, 성과 측정·평가의 난해함 등 특징을 지님

- 연구개발예산은 다양한 기능 분야에 분포되고,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배분·조정 및 편성 과정에서 독자적 체계가 요구됨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단계별 성격이 상이하며, 전기, 화학, 생물 등 연구 대상이 기술 분야별로 세분됨
- 또한, 자금 투입에서부터 성과의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투자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까다로움

표 1-4 16대 지출 분야별[1]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분 야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합계	**295,968**	**354,978**	**59,010**	**19.9**
과학기술	95,667	116,634	20,967	2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1,806	88,474	16,668	23.2
국방	49,610	59,144	9,534	19.2
교육	14,864	16,736	1,872	12.6
보건	13,913	15,472	1,559	11.2
통신	12,909	14,840	1,931	15.0
농림수산	13,037	14,277	1,240	9.5
교통 및 물류	9,892	11,412	1,519	15.4
일반·지방행정	5,750	7,588	1,837	32.0
환경	3,837	4,512	675	17.6
공공질서 및 안전	2,480	3,032	552	22.3
문화 및 관광	2,124	2,760	636	30.0
사회복지	78	98	20	25.3

주 1) R&D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16대 분야 중 예비비를 제외한 15개 분야에 지출(실제 지출은 국토 및 지역개발, 통일·외교 등 2개 분야를 제외한 13개 분야에서 이루어짐)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와 지원방식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07년 이전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에 따라 [장-관-항-세항-세세항]의 사업구조로 관리되었고, 2007년부터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표 1-5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구조 (예시)

[품목별 예산제도]

부처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대/중과제	세부과제

[프로그램 예산제도]

부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과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원자력진흥	방사선이용 기술개발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경쟁우위 방사선기술	복합X-선 기반 항공보안 핵심요소 기술
산업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기술개발	전력공급 기술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기술 개발	현장맞춤형 해체기술 경쟁력 강화	레이저 절단/해체 기술고도화 및 실증
복지부	보건	보건의료	보건산업 육성	보건의료 연구개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환자 안전 임상의사 결정지원 기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상위 수준의 '사업(Program)관리시스템'과 하위 수준의 '과제(Project)관리시스템'으로 구분 가능

- '사업관리시스템' 수준에서는 부처별 사업기획, 예산의 배분·조정, 사업 집행, 성과평가 등을 수행
- '과제관리시스템' 수준에서는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연구수행, 성과 활용 등을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형태는 '부처 직접 수행·관리 형태', '위탁관리 형태', '기타'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부처 직접 수행·관리 형태'는 과제 단위의 기획, 공모, 선정평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정부 주도 Top-Down 형식의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연구개발예산의 규모가 작은 부처 또는 별도의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이 없는 부처에서도 부처가 직접 수행·관리
-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화 및 다변화로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이 드묾

● '위탁관리 형태'는 부처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5] 등에 기획·관리·평가 등을 위탁하는 형태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처럼 특정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가지는 대규모 연구사업도 일종의 위탁관리임

● '기타'는 교육공무원 인건비,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경직성 경비 등 별도의 체계적 기획·평가·관리 업무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이 해당함

표 1-6 주요 부처별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설립 근거[6]

소관 주요 부처	전문기관	설립 근거	설립 연도(지정)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1)]	「한국연구재단법」	'09
	정보통신기획평가원[2),3)]	「정보통신융합법」	'1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3)]	「연구개발특구법」	'05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3)]	「연구산업진흥법」	'07('22)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09
기후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3)]	「에너지법」	'09('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09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0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02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99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1)]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05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09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1)]	「기상산업진흥법」	'05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1)]	「원자력안전법」	'12('13)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09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1)]	「임업진흥법」	'12('17)

주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명시된 기관.
2) 한국연구재단의 부설 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명시된 기관 외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에서 명시된 주요 전문기관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고 및 공모, 보안, 제재, 사후관리 등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임.

6) 각 부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전부를 해당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각 전문기관은 소관 부처 외 타 부처 사업을 관리하기도 함. 그 외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임무 및 성격을 지닌 기관·사업단·공공 조직 존재 가능. 소관 주요 부처 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12개 소관 부처를 따름.

연구개발 수행부처에서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함

-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각 소관 부처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같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에서 과제 기획·공모·집행·평가 등을 거쳐 연구자에게 집행됨
  - 보통 민간 기업이나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참여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
- 2026년 현재 〈표 1-5〉과 같이 12개 부·청·위원회에서 17개의 연구관리전문기관(agency)을 운영 중임
  -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대표적인 12개 기관만을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소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중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편을 추진함
  - 정부는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1 부처·청 당 1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정비,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및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개편 등을 추진(관계부처 합동, 2018)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편입함('19. 1.)
    2) 산업통상자원부는 1부처 1전담기관 추진('18. 8.)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20. 7.)하였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이후 폐기됨
    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출범('21. 11.)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분야별로 진행하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기능 등을 통합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21)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과학기술자문회의('21. 10. 28.)를 통해 추가 확정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을 기관 및 회계별로 통합하고,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시행(기획재정부, 2021a)
  - '23년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現,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와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이 신설됨
  - '24년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 단위사업 이관
  - '25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기획평가관리 및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 신설
  - '25년 부처·전문기관 경계를 넘어서는 R&D의 통합적 관리 및 연구개발 특성 등에 따른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차수탁[7] 활성화 추진을 위해 1부처-1전문기관 체계 원칙 하에 일부 사업 시범 실시
  - '26년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산업통상자원부(現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이관

7) 전문기관이 소관부처가 아닌 타부처의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형태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원방식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게 국가 재원을 이전하여 지출하는 정부 이전지출[8]의 한 유형인 '출연금' 형태로 지원됨

- 학문적인 정의 방식에 따르면 출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편이 한결 효과적이라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해 재정상 원조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액'을 의미함(김인철, 2007, p171)
- 연구개발 부문의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명시됨[9]

■ 연구개발 분야의 출연금을 성질 및 목적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기관출연과 목적사업(R&D) 출연으로 분류할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0a, p16)

- 기관출연이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 목적사업(R&D) 출연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로 지급되는 출연금을 의미

표 1-7 연구개발 분야 출연금의 목적에 따른 분류

구분	예시사업
기관출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지원〉
목적사업(R&D) 출연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a) 토대로 재구성.

8) 정부 이전지출에는 출연금 이외에도 보전금, 보조금, 교부금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17, p49-51)를 참조하기 바람.

9)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와 재정제도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

(1)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

- 일반회계 세출에는 일반적으로 부처 및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세출이 특정되는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지출 대상에 제한이 없음

■ 특별회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로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됨

- 우리나라 정부 재정 구조상 특별회계는 모두 21개이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 특별회계(16개)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 관련 기업특별회계(5개)로 구성됨
  - 연구개발 분야에 지출되는 특별회계는 대부분 기타 특별회계이며, 기업특별회계에서는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조달특별회계의 일부 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국립병원지원사업에 일부 지출됨

■ 기금: 정부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에 의해 운영되지만, 특정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해서 운용하는 재원을 말함[10)]

-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함

10) 「국가재정법」 제5조에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68개 근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표 1-8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

구 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 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	• 특정사업 운용 • 특정자금 운용 • 특정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운용 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
수입·지출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 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예산처의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 조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 절차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목적 외 사용금지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계획 변경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이용·전용·이체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국회 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심의·의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a), 기획예산처(2026)에서 재인용.

■ 202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과 기금(67개)으로 구성됨

● 이 중 연구개발 관련 재원은 일반회계, 10개의 특별회계, 13개의 기금임

표 1-9 2026년 우리나라 정부재정 구조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th><th rowspan="2">기금</th></tr>
<tr><th>일반회계</th><th>특별회계</th></tr>
<tr><td>개수</td><td>1개</td><td>21개</td><td>67개</td></tr>
<tr><td>규모
(총지출)</td><td>385.3조 원</td><td>96.1조 원</td><td>246.5조 원</td></tr>
<tr><td></td><td colspan="3">727.9조 원</td></tr>
<tr><td>내용[1)]</td><td colspan="2">
<table>
<tr><th>세입</th><th>세출</th></tr>
<tr><td>• 내국세
• 관세
• 목적세
* 부족 시 국채발행</td><td>• 보건·복지
• 교육
• 문화·체육
• 환경
• R&D
• 산업·중소기업
• SOC
• 농림·수산
• 국방
• 외교·통일
• 공공질서
• 일반·지방 행정</td></tr>
</table>
</td><td>
<table>
<tr><td>기업 특별 회계 (5개)</td><td>• 우편사업
• 조달
• 양곡관리
• 우체국예금</td></tr>
<tr><td>책임 운영 기관 특별 회계</td><td>• 책임운영기관
– 국립재활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공주병원
– …</td></tr>
<tr><td>기타 특별 회계 (16개)</td><td>• 교통시설
• 고등·평생교육지원
• 지역균형발전
• 농어촌구조개선
• 에너지및자원사업
• 환경개선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 유아교육지원
• 국방·군사시설이전
• 우체국보험
• 등기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
• 주한미군기지이전
• 교도작업
• 혁신도시건설</td></tr>
</table>
</td><td>
<table>
<tr><td>사회 보험성 (6개)</td><td>•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 …</td></tr>
<tr><td>금융성 (8개)</td><td>• 신용보증
• 주택금융신용보증
• 산업기반신용보증
• …</td></tr>
<tr><td>계정성 (5개)</td><td>• 공공자금관리
• 외국환평형
• 복권
• …</td></tr>
<tr><td>사업성 (48개)</td><td>• 국민주택
• 남북협력
• 국가유산보호
• 관광진흥개발
• 국민체육진흥
• 방송통신발전
• 정보통신진흥
• 과학기술진흥
• 원자력
• 국민건강증진
• 전력산업기반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 방사성폐기물관리
• 기후대응
• …</td></tr>
</table>
</td></tr>
</table>

주 1) 연구개발 재원에 해당하는 회계는 밑줄로 표시.
자료: 기획예산처(2026)에서 인용 후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데이터 토대로 수정.

(2) 예산총계주의

■ 회계연도 내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

- 예산총계주의는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11)]
- 예산총계주의는 재정 전반에 대한 파악이 쉽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예산총계주의 채택

- 「국가재정법」 제53조에 수입대체경비, 국가의 현물출자 등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정의해 놓고 있음

(3) 예산순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특별회계 상호 간에는 전출입 관계로 인해 그대로 집계 시 중복 부분이 생김(신해룡, 2012, p45)

- 국가의 실질적인 예산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계액에서 중복 부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 예산순계임

표 1-10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개념

구분	내용
예산총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규모를 단순 합계한 규모
예산순계	계정간·회계간의 전출입을 조정하여 중복분을 공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표시

자료: 신해룡(2012).

(4) 통합재정

■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 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

- 통합재정을 작성하는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 재원 상황을 명백히 밝혀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음

11) 조세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징세비용을 공제하고 순수입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수입 일체를 그대로 계상.

-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의 3종으로 구분되며,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이 예산 외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총체적인 재정 활동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정부의 모든 재정 활동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통합예산의 작성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1979년 이래 국제통화기구(IMF)의 재정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통합예산제도를 도입, IMF가 연간 발행하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수록(하연섭, 2010, p64-67)

- 1997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7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및 공표
- 하지만 통합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제외되어 작성되다가 2005년부터 지방재정이 포함되었음
- 통합재정은 다음처럼 정의하며, 이 개념으로부터 통합재정수지를 도출이 가능

>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순융자)

(5) 총지출[12)]

■ 총지출은 국민으로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 사용하기 시작함

- 예산총계는 일반회계의 지출 규모와 특별회계의 지출 규모를 단순히 합산한 재정 규모를 말하나, 이 지표는 회계 간 내부거래가 중복계상되는 문제점 존재
- 반면 총지출은 일반회계의 총계와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의 총계를 모두 합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와 기금 간 내부거래,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집계한 재정 규모임
- 이때 보전지출은 국채 발행 또는 상환, 차입이나 차입금 상환 등 채무원금상환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인 수입·지출이라기보다 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총지출을 계상함

> • 총지출 = 일반회계 총계 + 특별회계 총계 + 기금 총계 - (내부거래 + 보전지출)

12) 하연섭(2010, p68-69)과 국회예산정책처(2011)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함.

- 따라서 총지출은 통합재정처럼 예산순계 방식으로 집계하나, 아래의 차이점을 보임
  - 총지출은 통합재정과 달리 융자지출을 집계하는 방식에서 양자 간의 차이점이 있음. 즉 총지출은 융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포함하지만, 통합재정은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포함
  - 순융자는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직접 미치기 때문에 통합재정규모를 산정할 때 포함함
  - 하지만 우리나라는 융자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융자사업 전체를 지출에 계상해야만 재정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총지출이라는 지표를 사용 중이며, 총지출은 융자회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항상 통합재정의 규모보다 큼
- 이러한 총지출과 통합재정의 차이점은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음

  •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 통합재정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 또한 총지출과 통합재정규모는 기업특별회계를 집계하는 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함
  - 총지출은 영업 지출 총계 규모를 계상하는 반면, 통합재정은 영업 수입과 영업 지출의 크기를 비교하여 순계금액을 통합재정수입 혹은 통합재정지출로 계상함
  - 즉, 영업 수입이 영업 지출보다 크면 영업수지를 통합재정수입으로, 영업 수입이 영업 지출보다 작으면 통합재정지출로 계상함
- 결국,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지표가 총지출이라면,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지표가 통합재정임
- 지금까지 논의한 정부 재정 규모의 지표를 나타내는 총계, 총지출, 예산순계, 통합재정을 비교해보면 〈표 1-11〉과 같음

표 1-11 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간 상호 비교(2022년~2026년)

(단위: 조 원)

구분	포괄범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계	일반·특별회계+기금	1,254.0	1,427.1	1,573.3	1,529.8	1,615.6
총지출	일반·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	607.7	638.7	656.6	673.3	727.9
협의의 세출예산(순계)	일반회계+특별회계-회계 간 내부거래	455.8	484.4	488.6	510.1	545.4
통합재정	총지출-융자회수	571.8	601.6	617.7	-	-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토대로 산출, '26년 통합재정규모는 보고서 작성시점 미확정.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재정제도

(1)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함(대한민국 정부, 2025a)[13)]

- 정부는 1982년부터 재정적자 구조를 해소하고자 중기재정계획을 작성
  - 초기에는 개략적인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 시 재정 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
- 2004년에 최초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부터는 법적(「국가재정법」)으로 제도화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
  - 정부는 경제·재정 여건 전망을 고려하여 5년 단위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12대 분야별 재정 투자 계획을 제시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최초 수립 이후 계획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로 실효성이 강화되었음
  - 2005년 예산부터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 계획수립과정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통보[14)]를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

(2)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 Budgeting)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ceiling)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임

- 기존의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제도는 해당 부처의 사업별 예산 요구에 대해서 중앙예산기관이 각 세부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부처별 규모와 총지출 규모가 결정하는 방식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제도로서 총지출 규모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개별 사업을 검토하는 방식

13) 중기재정계획제도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3-5년 단위의 중기적인 시계의 정부의 지출 계획임. 선진국들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수지를 예측하여 연도별 재정지출 규모와 분야별 지출한도를 제시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에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강태혁, 2010, p147).

14) 「국가재정법」 제29조 2항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표 1-12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편성절차

기존 상향식(Bottom-Up) 방식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방식
총지출 규모 확정 ⇧ 각 사업별 예산 규모 확정 분야별·부처별 지출 규모 확정 ⇧ 각 부처별 사업 예산 요구	총지출 규모 확정 ⇩ 분야별·부처별 지출 규모 확정 ⇩ 각 부처가 담당하는 사업별 예산 요구 중앙예산기관의 협의·조정을 거쳐 각 사업별 예산 규모 확정

자료: 김상헌 외(2014).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으로 미시적 방식에서 벗어난 거시적·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원 배분을 도모함

-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사업우선순위를 최대한 존중하고, 중앙예산기관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

(3) 프로그램 예산제도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구조(국회예산정책처, 2010b, p4-7)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성과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임(김춘순, 2012, 334)
  -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제도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와 분류체계가 다르며 성과와 자율이 중심인 하향식 예산제도

-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 아래에서 예산의 기본구조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7단계로 구성되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구조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5단계로 분류
-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과 통제 중심인 반면,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각 부처의 자율 편성과 이에 따른 성과와 책임에 초점을 맞춤

표 1-13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비교

구분	품목별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접근방식	투입과 통제 중심	성과와 자율 중심
예산편성의 초점	예산품목(지출통제)	프로그램/사업 단위(자율, 결과책임)
시계	단년도 예산	다년도 예산
예산운영방식	상향식	하향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b).

(4)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대규모 공공투자목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 실시 전 선행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7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이명박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간 기능조정의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편입됨
- 2012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총괄하여 수행
  - 2019년부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도 연구개발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기술 비지정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
- 이후, 2026년 2월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기획의 부실 방지 및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후속 제도인 대형 R&D 사전점검제도로 변경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요건 및 관련 규정

- 총사업비[15]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 구조상 '세부사업'이 기준
  -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대상선정(舊 기술성평가)을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함
-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4회(2, 5, 8, 11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야 함
-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종합평가위원회 12인(PM 및 자문위원 2인 포함)이 최종결과 논의 및 AHP 평가를 수행

15)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임. 예를 들어 순수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인건비,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 간접비, 장비비 등을 포함함. 또한 재원측면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부담분 등을 포괄함.

그림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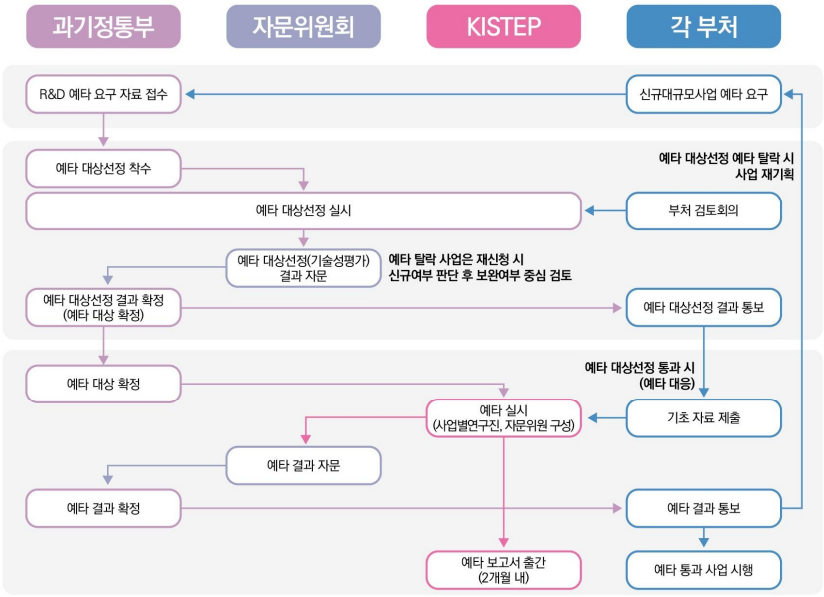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및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등에서 밝힘

- 특정 조건을 갖추었으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해 법령 및 시급성 등을 갖춘 사업에 해당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18조에서 안내하고 있음

그림 1-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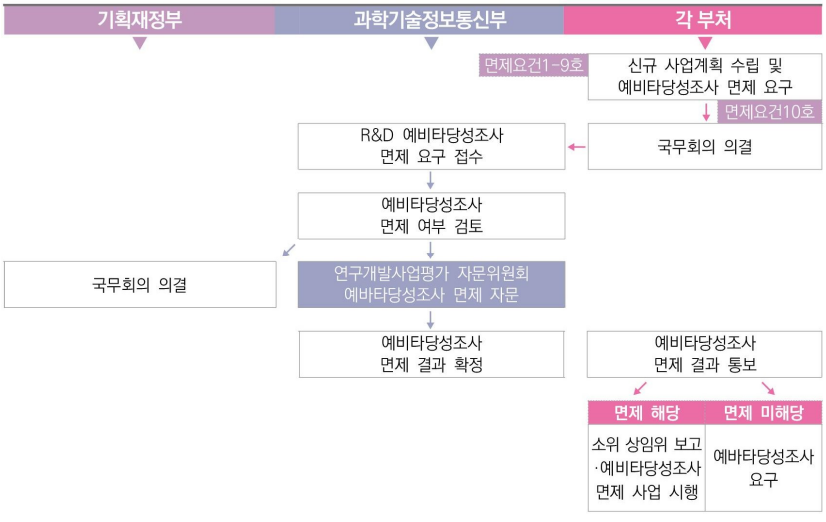

(5) 조세지출예산제도

-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조세지출의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대한민국 정부, 2025b)
  -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16]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됨
  - 조세지출내역을 작성·공표하여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지원되는 연구개발 분야의 실질적인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려면 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 '정부연구개발예산'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로 간접 지원되는 '연구개발 조세감면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이 예산의 한 부분인 세입을 포기하는 보조금 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부지출의 증가 규모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조세지출지원 규모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최미희·최종국, 2011, p306)

-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6년 연구개발 분야의 조세 감면액 전망은 5조 1,477억 원으로 2025년 4조 8,662억 원에 비하여 6.8%(+2,815억 원)가 증가할 전망

표 1-14 연구개발 분야의 조세감면액(2024년~2026년)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24년 실적	비중	2025년 전망	비중	2026년 전망	비중
■ 국가 조세지출 총계	705,171	100.0	764,719	100.0	805,277	100.0
• 연구개발 18개 항목 계[1)]	35,325	5.0	48,662	6.4	51,477	6.4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9,575	4.2	41,473	5.4	43,954	5.5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861	0.3	2,027	0.3	2,116	0.3
- 기타	3,869	0.5	5,162	0.7	5,407	0.7

주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분야 18개 항목의 총계.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5b) 토대로 재구성.

16)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6) 추가경정예산(추경)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에 추가나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용어임(국회예산정책처, 2018, p68-69)

- 추가예산: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
- 경정예산: 이미 정해진 예산 총액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액의 감소, 예산 목적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변경 등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명시되고 있음

- 헌법상 근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56조)."
- 법률상 근거: "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그림 1-4 추가경정예산 추이(재원조달규모 기준, 2000년~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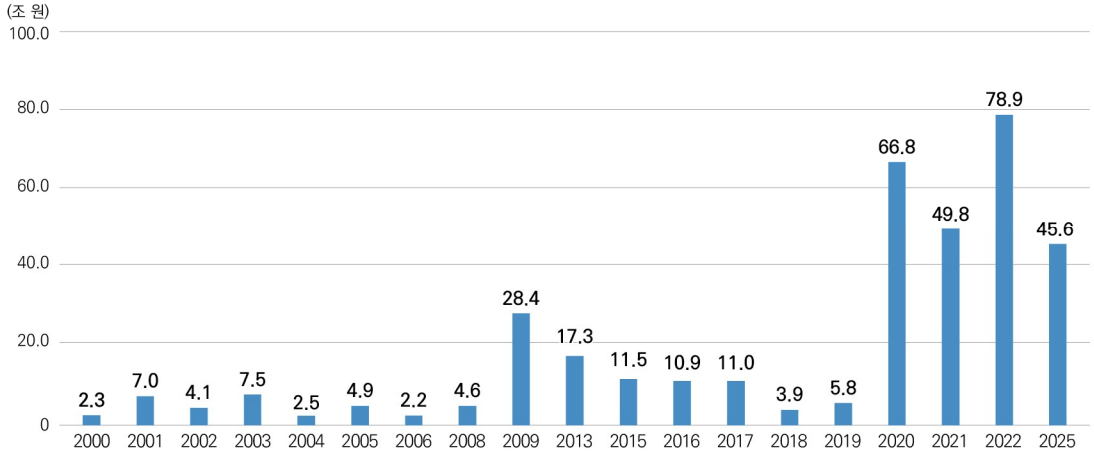

참고: '01년, '03년, '04년은 1~2회, '20년은 1~4회, '21년~'25년은 1~2회 추경 규모의 합.
자료: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www.index.go.kr) 데이터 토대로 수정.

■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편성은 19개 회계연도에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 2009년 이후의 추가경정예산편성('09, '13, '15, '16, '17, '18, '19, '20, '21, '22, '25)은 모두 연구개발 부문을 포함

● 해당 경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가경정 규모의 전반적인 증가, 대형 시설·장비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연구개발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이루어짐(국회예산정책처, 2025)

표 1-15 추가경정예산의 정책분야별 재원배분과 연구개발부문 편성 현황(2016년~2025년)

연도	정책분야별 재원배분	연구개발부문 편성내역
2016	• 구조조정 지원(1.9조 원) •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9조 원) • 지역경제 활성화(2.3조 원) • 지방재정 보강(3.7조 원) • 국가채무 상환(1.2조 원)	• 조선업계의 불황 대응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 미래부·산업부의 8개 사업, 550억 원 증액 (본예산 대비 0.3%)
2017	• 일자리 창출(4.2조 원) • 일자리 여건 개선(1.2조 원) •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2.3조 원) • 지방재정 보강(3.5조 원)	• 과학기술 인력 육성을 확대지원하고, 양질의 R&D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증액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 18개 사업 404억 원 증액 (본예산 대비 0.2%)
2018	• 청년 일자리 대책(2.9조 원) • 구조조정 지역·업종 대책(1.0조 원)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증액 • 산업부(8개), 중기부(2개), 교육부(1개), 해수부(1개) 등 12개 사업 802억 원 증액(본예산 대비 0.4%)
2019	• 일본 수출규제 대응(2,732억 원) • 재난지역 지원(945억 원) • 미세먼지·민생경제 대응 등	•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연구개발사업 증액 • 산업부(11개), 과기정통부(11개), 교육부(1개), 중기부(2개), 기상청(1개) 등 26개 사업 3,203억 원 증액(본예산 대비 1.6%)
2020	• 코로나19 극복 - 고용(일자리안정/고용유지 등, 7조 원) - 긴급재난 및 소상공인 지원(15.6조 원) - 한국판뉴딜 등 경기보강(10.4조 원) 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방역 관련 연구개발사업 중심 증액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원마련 구조조정 감액 혼재 • 추경 內 신규사업(16개, 1,915억 원)
2021	•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7.3조 원) •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1.1조 원) • 긴급 고용대책(2.5조 원) • 방역 대책(4.2조 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5.3조 원)	• 방역 대책 관련 과기정통부 1개 예산 증액 - 과기정통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146억 원 증액) • 백신 방역 관련 복지부 1개 예산 증액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980억 원 증액)

연도	정책분야별 재원배분	연구개발부문 편성내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1.0조 원)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0.3조 원) •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0.7조 원) • 백신 방역 보강(4.9조 원)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2.5조 원) • 지역경제 활성화(12.6조 원)	• 방사청 사업 2개 감액 – 〈130mm 유도로켓-Ⅱ〉(51억 원 순감) – 〈해군교전급분석모델〉(8억 원 감액)
2022 1차 (2. 21.)	• 소상공인 지원(12.8조 원)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0.7조 원) • 방역 지원(2.8조 원)	• 해당없음
2022 2차 (5. 29.)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28.7조 원) • 방역 보강(7.1조 원) • 민생·물가안정(2.2조 원)	• 방역 관련 질병청 1개 사업 신규 편성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55억 원 순증) • 102개 사업 총 2,687억 원 감액[17]
2025 1차 (5. 1.)	• 재해·재난 대응(3.3조 원) • 통상 및 AI 지원(4.5조 원) • 민생 지원(5.1조 원) • 건설경기 보강 등 기타(1.0조 원)	• 세부 5개 신규 사업 편성 –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개발〉(112억 원 순증) • 내역 5개 신규 사업 편성 – 〈연구개발특구육성-글로벌AI빅테크선도기업육성〉 (100억 원 순증) • 기존 사업 6개 증액 편성 – 〈AI스타펠로우십〉(30억 원 증액) • AI 관련 사업 600억 원 순증 (4대 과기원 비R&D 부문 포함 시 750억 원)
2025 2차 (7. 4.)	• 경기 진작(15.2조 원) • 민생 안정(5.0조 원) • 세입경정 등(10.3조 원)	• 세부 4개 신규 사업 편성 – 〈AI모델활용항체바이오베터개발 및 실증〉 (33억 원 순증) • 기존 사업 1개 증액 편성 –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10억 원 증액) • 기존 사업 3개 감액 편성 – 〈국립대학 인건비〉 등 R&D 부문 83억 원 감액[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각 연도), 한국재정정보원(2022), 대한민국 정부(2025c) 등에서 일부 인용 후 재구성.

17) 경찰청 1개, 과기정통부 5개, 교육부 1개, 국토부 2개, 기상청 7개, 기재부 1개, 농식품부 4개, 농진청 18개, 문체부 1개, 문화재청 2개, 방사청 2개, 법무부 1개, 복지부 4개, 산림청 9개, 산업부 12개, 새만금청 1개, 소방청 1개, 식약처 5개, 여가부 1개, 중기부 3개, 질병청 2개, 통일부 1개, 해수부 9개, 행복청 1개, 행안부 5개, 환경부 3개.

21) 의대 증원 교원 미채용 등 정·현원 차이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어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에서 감액 편성됨(국회예산정책처, 2025c)

3.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기타 재정제도

(1) 기술료

■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9)

- 기술료 중에서도 정부(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라고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원 보상 및 연구개발 재투자를 활성화하여 연구개발 구조의 선순환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초기에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모태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변천함
  - 부처별·사업별로 별도의 기술료 제도를 운용하다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연구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01. 12. 19.)됨[1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후,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에 비례(경상기술료)하여 공통 최대한도와 경상기술료 요율을 적용하는 납부방식 도입('21. 1. 1.)
  - 기술 실시한 후 기술료 징수/수익이 발생할 때 기술료를 납부하고, 최대 상한은 수혜한 정부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중소 10%, 중견 20%, 대 40%) 적용

■ 「국가재정법」 개정('14. 1. 1.)으로 그간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기술료가 예산체계에 포함됨

- 기술료 수입의 자의적 집행 또는 운용상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법」 정비를 통한 기술료 수입의 세입화 요구가 입법기관 등에서 제기됨. 이후 기술료 수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14. 1. 1.)
  - 규정 개정에 따라 기술료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편성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침
- 기존에는 「국가재정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각 부처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세입·세출 외로 운용하였으나, 관련 조항 개정에 따라 기술료를 기금에 산입하거나 국고에 납입하여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 1. 1.)에 따라 동 규정 폐지.

2024년 기준 기술료 징수액은 2,107억 원이며, 징수 건수는 10,037건임

그림 1-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성과 추이(2020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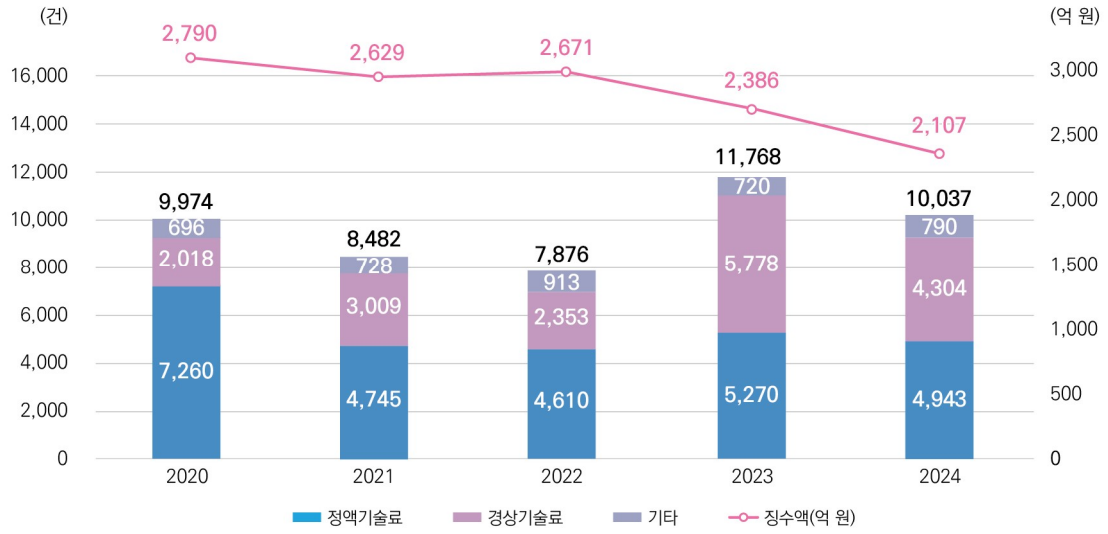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5).

부처별 기술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건수(3,083건)와 액수(1,093억 원)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1-6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건수 및 징수액(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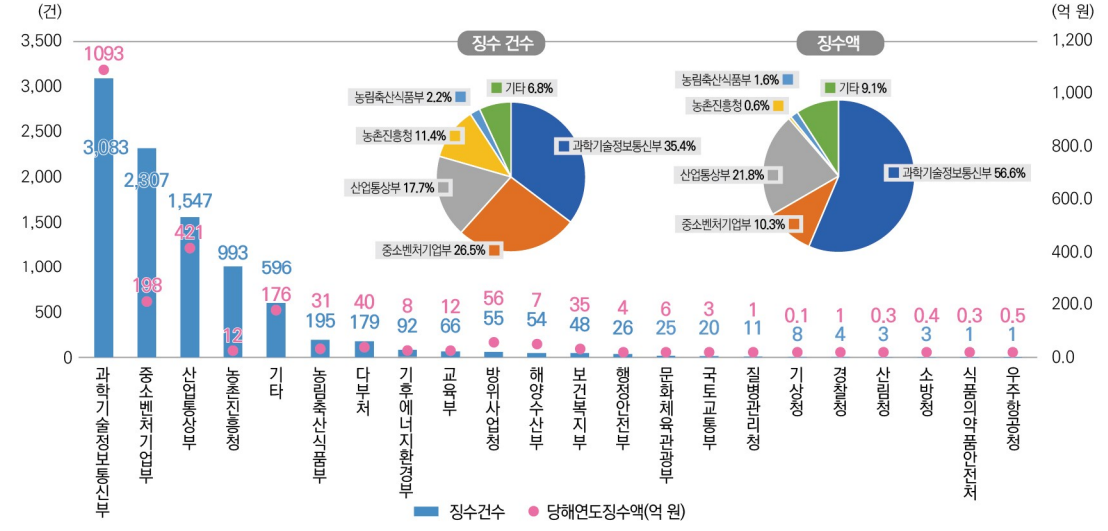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5).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을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국가재정법」 제27조 및 제68조의3)

-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효과를 높여, 국가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함
- '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도입되어, 국가 예산·기금 편성 및 결산 절차에 포함됨
  - ('21. 6.)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 ('21. 10.) 제도 운영방안 등 제7차 재정운영전략위원회 보고
  - ('21. 10~12.) 관계부처 합동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 ('22. 8.)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기재부 훈령」 제610호)

■ 세부사업 단위로 대상을 선정하되, 내역사업별로 감축 정책 부문별 감축 효과를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효과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함

- 감축 정책 사업 유형은 ①전환, ②산업, ③건물, ④수송, ⑤농축수산, ⑥폐기물, ⑦수소, ⑧흡수원, ⑨CCUS*, ⑩국제감축, ⑪기타로 구분됨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_2)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
  - R&D는 전 유형에서 감축인지 예산에 해당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내역사업 단위로 산정하며, 기술개발단계(TRL1~8)에서 발생하는 감축 효과를 추정해야하는 사업일 경우 R&D 사업에 해당함

■ R&D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조 4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3%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 수로는 2026년 149개로 전년 대비 2.1% 증가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R&D 세부사업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들의 규모는 세부사업 규모 대비 51.8% 수준임

표 1-16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R&D 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부 처	2025년 (A)	2026년 (B)	(세부사업)[1]	증감 (B-A)	증감률
기획재정부	5,876	-	-	△5,876	순감
기후에너지환경부[3]	149	13,783	14,236	13,634	9,150.3
산업통상부	7,980	2,860	18,836	△5,120	△128.3
국토교통부	785	1,259	1,633	474	120.7
해양수산부	336	933	1,429	597	355.6
농촌진흥청	410	588	1,142	178	86.6
농림축산식품부	156	476	738	320	4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337	553	294	1,366.2
산림청	-	120	521	120	순증
기상청	74	78	348	4	10.0
중소벤처기업부	13	-	-	△13	순감
합 계[2]	**15,822(146)**	**20,434(149)**	**39,437**	**4,612(3)**	**58.3(2.1)**

※ 기후대응기금으로 인해 예산소관과 추진부처가 다르므로, 실제 사업추진부처 기준으로는 달리질 수 있음

표 1-17 회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R&D 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회 계	2025년 (A)	2026년 (B)	(세부사업)[1]	증감 (B-A)	증감률
일반회계	**3,970**	**5,280**	**10,720**	**1,310**	**33.0**
특별회계	**2,847**	**4,005**	**16,990**	**1,158**	**40.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22	2,609	2,609	387	17.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3	476	738	303	175.1
교통시설특별회계	198	468	468	270	136.4
환경개선특별회계	149	216	216	67	4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8	50	50	△28	△35.9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7	186	12,909	159	588.9
기 금	**9,005**	**11,147**	**11,725**	**2,142**	**23.8**
기후대응기금	5,876	7,530	7,970	1,654	28.1
전력산업기반기금	3,129	3,496	3,509	367	11.7
원자력기금	-	111	236	111	순증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10	10	10	순증
합 계[2]	**15,822(146)**	**20,434(149)**	**39,437**	**4,612(3)**	**58.3(2.1)**

주 1)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 전체 국회확정 예산 규모.
2) 괄호 안은 R&D 세부사업 수.
3) '25년은 환경부 예산이며, '26년은 새정부 조직 개편 후속 조치로 기후기금 관리주체(기재부→기후부), 에너지 기능 이관(산업부→기후부) 등 사업 이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상에서의 정부안을 열린재정 기반으로 재산출하였음.

제5절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1. OECD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정의

■ 국가별 연구개발예산을 비교하기 위하여 OECD[19]의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로 명명함

- 프라스카티(Frascati) 매뉴얼에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특정 국가의 예산 절차를 통하여 배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예산으로 정의함(OECD, 2015)
  - 국가마다 예산절차는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의 예측과 제안, 최초 예산안, 최종 예산안, 지출의무, 실제 지출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됨
- OECD 소속 국가들은 프라스카티(Frascati) 매뉴얼에 입각하여 자국의 연구개발예산을 보고하며, 이 수치는 MSTI에 반영되어 공표됨
  -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보고하고 있음
- OECD의 정부연구개발예산 데이터는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음

2.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 총량 추이

■ 한국의 2023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375억 1,600만 PPP달러로, OECD 주요국과 비교시 예산 및 연평균증가율(CAGR) 등에서 상위권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12년에 프랑스를 추월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미국, 일본, 독일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
- 2014년~202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7.0%로 일본(12.2%)의 뒤를 이음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표 1-18 OECD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14년~2023년)

(단위: 백만U.S.달러(PP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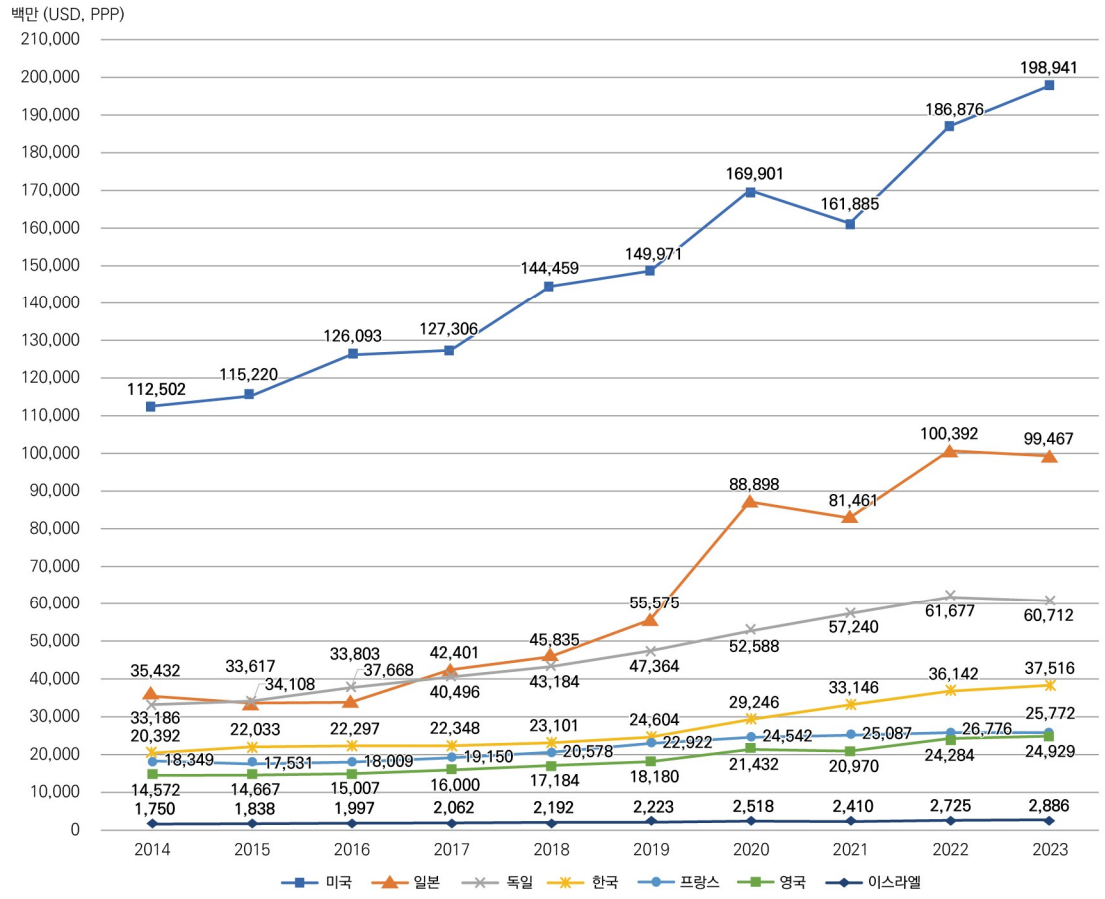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성장률 ('14~'23)
미국	112,502	115,220	126,093	127,306	144,459	149,971	169,901	161,885	186,876	198,941	6.5
일본	35,432	33,617	33,803	42,401	45,835	55,575	88,898	81,461	100,392	99,467	12.2
독일	33,186	34,108	37,668	40,496	43,184	47,364	52,588	57,240	61,677	60,712	6.9
한국	20,392	22,033	22,297	22,348	23,101	24,604	29,246	33,146	36,142	37,516	7.0
프랑스	18,349	17,531	18,009	19,150	20,578	22,922	24,542	25,087	25,776	25,772	3.8
영국	14,572	14,667	15,007	16,000	17,184	18,180	21,432	20,970	24,284	24,929	6.1
이스라엘	1,750	1,838	1,997	2,062	2,192	2,223	2,518	2,410	2,725	2,886	5.7

자료: OECD MSTI 2025 September (www.oecd.org/sti/msti.htm) 토대로 재구성.
참고: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반 환율 적용.

● 우리나라의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00년 예산 대비 748.2% 수준으로, 일본(468.5%), 독일(352.3%), 미국(273.7%) 등 OECD 주요국 대비 증가폭이 크며, 증가 추세도 꾸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7 OECD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00년~2023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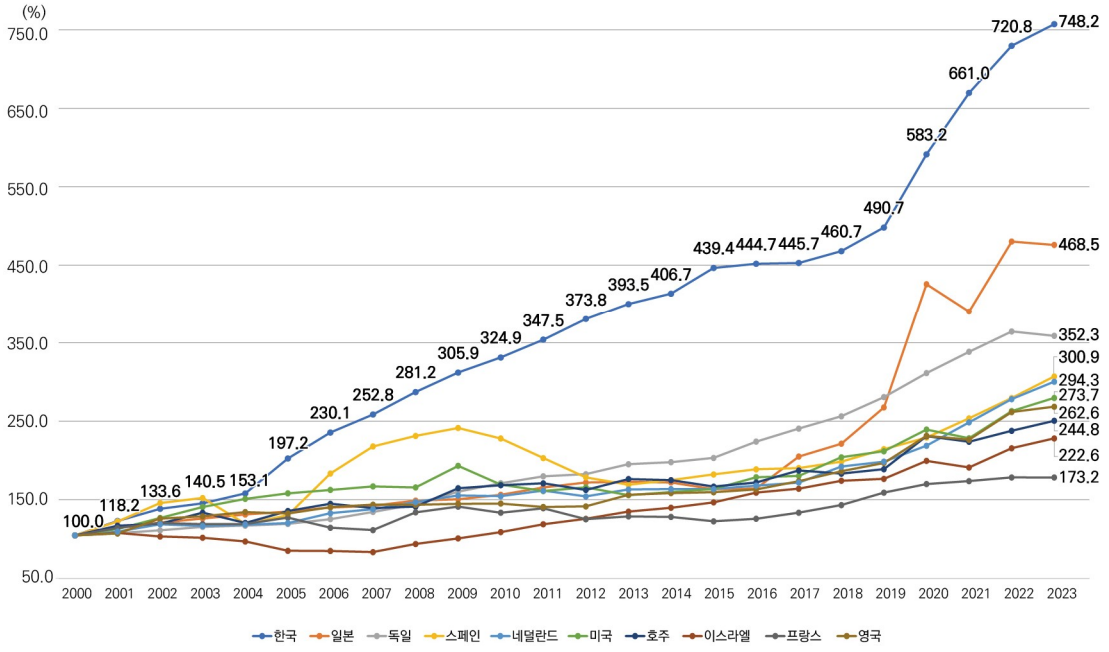

주 1) 2000년 = 100%
자료: OECD MSTI 2025 September (www.oecd.org/sti/msti.htm) 토대로 재구성.

(2) GDP 대비 비중

■ 2023년의 GDP[20)]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29%로 주요국 대비 상위권 수준이며(2023년 통계 발표 OECD 국가 중 2위), 일본(1.60%), 독일(1.04%), 오스트리아(0.87%)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2018년부터 과학기술혁신 전환[21)]이라고 불리는 검토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

20)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 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

21) 기존 사업에 선진기술을 도입, 선진기술을 도입한 물품조달 촉진, 과학기술혁신 관점에서 인재육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혁신 전환'에 판단하여 과학기술관계경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18년도 이후 관련 예산이 급증하였으나 내부에서 '선진기술' 정의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정권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준 변경으로 과거 과학기술예산과 비교가 어려워졌다는 문제 제기(김덕용·정민우, 2021).

그림 1-8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과 GDP 대비 비중(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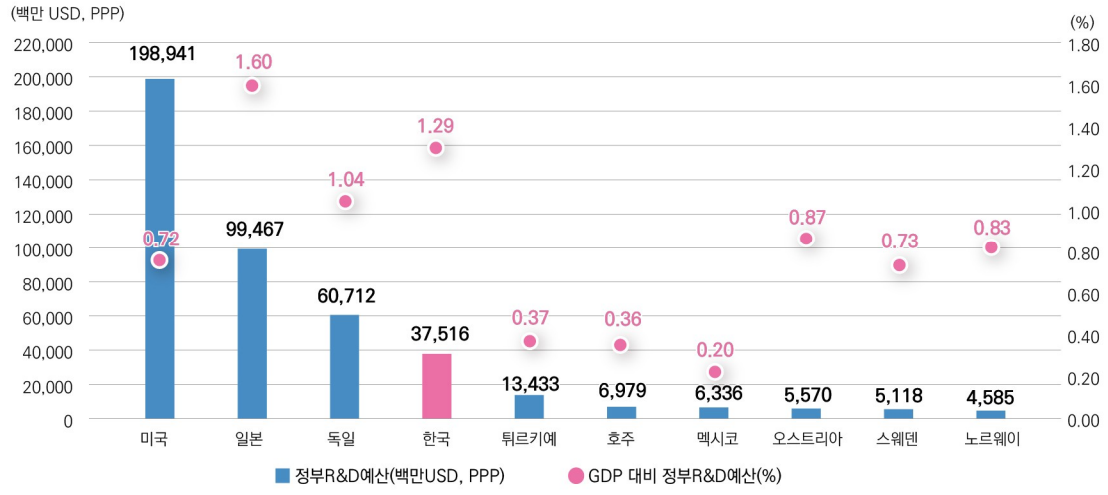

자료: OECD MSTI 2025 September (www.oecd.org/sti/msti.htm) 토대로 재구성.
참고: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반 환율 적용.

(3) 경제사회목적별 비중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Socioeconomic Objective)별 비중은 특정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주목적(Primary Objective)에 따라 14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MSTI는 이를 7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공표함

●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14개 유형

① 지구 탐사 및 개발
② 환경
③ 우주 탐사 및 개발
④ 운송, 통신체계와 기타 인프라
⑤ 에너지
⑥ 산업 생산과 기술
⑦ 건강
⑧ 농업
⑨ 교육
⑩ 문화, 레크레이션, 종교, 대중 매체
⑪ 정치와 사회 체계, 구조와 절차
⑫ 일반지식의 증대(GUF[22]에서 지원)
⑬ 일반지식의 증대(GUF 외 출처에서 지원)
⑭ 국방

● MSTI의 7개 유형

① 국방
② 경제발전
③ 건강 및 환경
④ 교육 및 사회
⑤ 우주 탐사 및 개발
⑥ 비목적 기초연구
⑦ GUF

22) General University Funds: 일반대학진흥금으로서, 공립고등교육기관(주로 대학교)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자금을 의미함.

■ 국방을 제외한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과 호주는 건강 및 환경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는 GUF에 각각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제발전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51.1%)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목적 기초연구(23.9%), 건강 및 환경(14.2%), 교육 및 사회(7.9%) 등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남([그림 1-10]참고)

■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부록-4] 참조

그림 1-9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2023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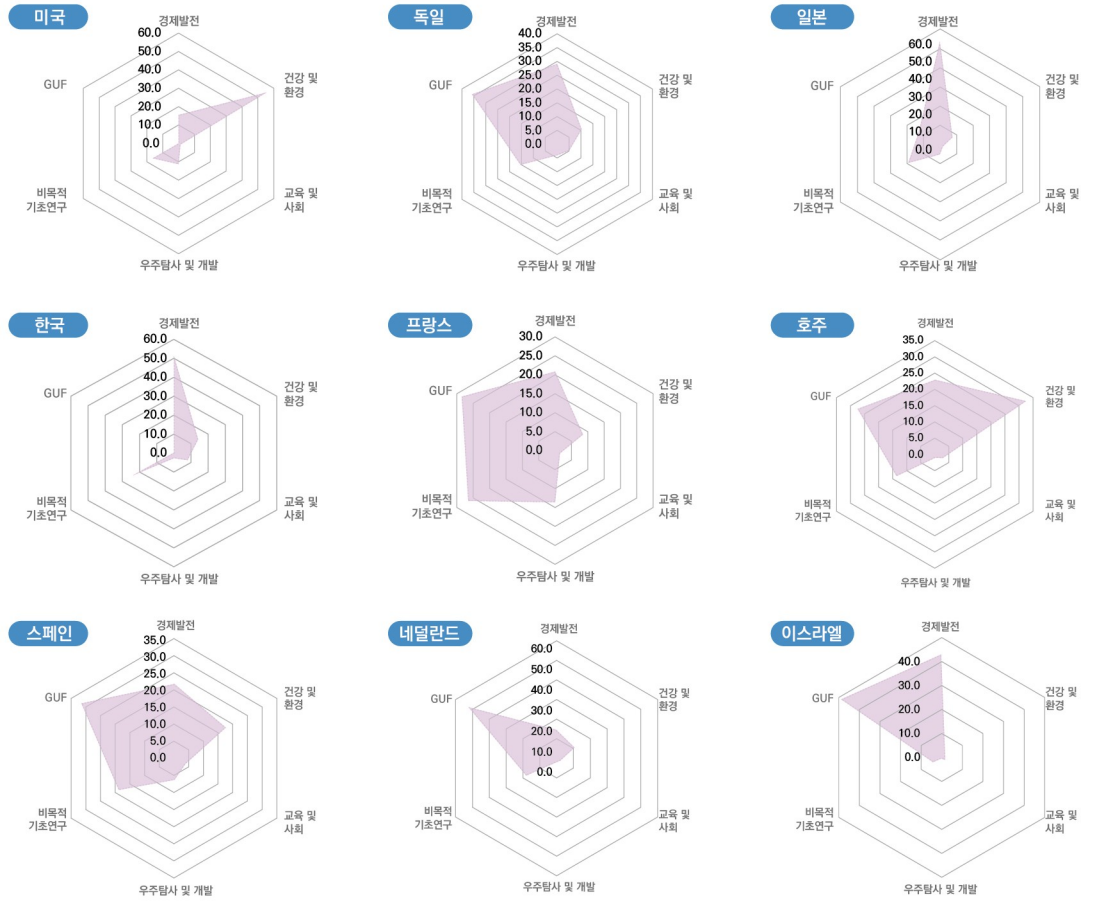

주 1) MSTI 경제사회목적별 분야 중 국방을 제외한 6개 분야의 합을 100%로 산정하여 계산.
자료: OECD MSTI 2025 September (www.oecd.org/sti/msti.htm) 토대로 재구성.

Ⅱ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제1절 개 요
제2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1967년~1998년)
제3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1999년~2004년)
제4절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2005년~2007년)
제5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2008년~2011년 3월)
제6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2011년 3월~2013년 3월)
제7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2013년 3월~2017년 7월)
제8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2017년 7월~2022년 5월)
제9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2025년 4월)
제10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2025년 6월~현재)

Ⅱ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제1절 개 요

■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체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원화 경향에 따른 종합조정 체계의 변천과 맞물리며 변화해왔음

● 이 변화과정은 〈표 2-1〉에서 살펴볼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1967년~1998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1999년~2004년)
-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2005년~2007년)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2008년~2011년 3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2011년 4월~2013년 3월)
-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2013년 3월~2017년 7월)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2017년 7월~2022년 5월)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2025년 4월)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2025년 6월~현재)

● 이러한 구분은 그간의 과학기술행정체제가 개편되는 주요 이슈별로 분류한 기준이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제도가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용한 분류기준으로 판단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관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권 부여,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등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2-1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제도의 변천과정

구 분	국과위 출범 이전 (1967년~1998년)	국과위 출범 이후 (1999년~2004년)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 (2004년~2007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2008년~2011년 3월)	국과위 상설화 이후 (2011년 4월~2013년 3월)
편성 과정	• 연구개발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반적인 정부예산의 편성과정 진행	• 국과위 종합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예산처 편성	• 국과위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결과를 수용하여 기획예산처 편성	• 예산배분방향은 교과부, 예산조정·배분과 평가는 기획재정부 이관	• 주요R&D 사업의 배분·조정과 평가는 국과위, 최종 예산편성은 기재부
연구개발 지출한도 설정	• 수립절차 없음	• 수립절차 없음	• 국과위와 기획예산처 간의 공동으로 총액규모와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후 각 부처 통보	• 기획재정부에서 총액과 지출한도 설정	• 기획재정부에서 총액과 지출한도 설정
주요종합 조정기구	• 기술진흥심의회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장관회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혁신본부 • 과학기술장관회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교육과학문화수석 → 미래전략기획관실('10. 7.)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미래전략기획관실
연구개발 분류기준	없음	있음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 수립절차 없음	• 국과위 작성 후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 통보	• 국과위 작성 후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 통보 •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활용	• 국과위 전문위원회 작성 후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통보 •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활용	• 국과위 전문위원회 작성 후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통보 •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활용
정부연구 개발예산 배분·조정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등을 통한 안건 상정·의결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 정부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권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방향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기술성 평가: 국과위 수행
정부연구 개발예산 심의조직	• 민간중심의 한시적 위원회	• 민간중심의 한시적 위원회	• 혁신본부 4개 심의관 • 9개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 운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기획재정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기획재정부
사업계획서 제출	• 주요 신규·계속사업 계획서 제출	• 주요 신규·계속사업 계획서 제출	• 중기사업계획서제출	• 중기사업계획서제출	• 중기사업계획서제출
성과평가 연계	• 연계과정 없음	•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미흡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배분·조정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안 편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안 편성

구 분	미래부 출범 이후 (2013년 3월~2017년 7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2025년 4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현재)
편성 과정	• 주요R&D 사업의 배분·조정과 평가는 미래부, 총량관리 및 예산편성은 기재부가 담당	• 주요R&D 사업의 배분·조정과 평가는 과기정통부, 총량관리 및 예산편성은 기재부가 담당	• 주요R&D 사업의 배분·조정과 평가는 과기정통부, 총량관리 및 예산편성은 기재부가 담당	• 주요R&D 사업의 배분·조정과 평가는 과기정통부, 총량관리 및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담당
연구개발 지출한도 설정	• 기획재정부에서 총액과 지출한도 설정	• 기획재정부에서 총액과 지출한도 설정	• 기획재정부에서 총액과 지출한도 설정	• 기획예산처에서 총액과 지출한도 설정
주요종합 조정기구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미래부 연구개발조정국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 과학기술장관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구개발 분류기준	있음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 국과심에서 심의 후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통보 •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활용	• 자문회의에서 심의 후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통보 •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활용	• 자문회의에서 심의 후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통보 •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활용	• 자문회의에서 심의 후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 통보 •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활용
정부연구 개발예산 배분·조정	•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기재부 → 과기정통부 위탁수행	•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기재부 → 과기정통부 위탁수행	•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권 • 사전기획점검 및 구축형 R&D 심사 신설 운영(과기정통부)
정부연구 개발예산 심의조직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기획재정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기획재정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기획재정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기획예산처
사업계획서 제출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기획점검 대상 신규사업은 전년도 10월31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성과평가 연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안 편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안 편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안 편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안 편성

제2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1967년~199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 시기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복지, 국방, 노동 등 다른 정부예산분야와 같이 재정 담당부처(재정경제원이나 기획예산위원회 등)에서 편성 절차를 담당(OECD, 1995, 15)

- 이 당시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매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지침을 마련해서 1월말까지 관계 부·처·청·시·도에 통보
  - 해당 부·처·청·시·도는 동 시행계획을 2월말까지 작성·통보하였으며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은 각 부·처·청·시·도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4월말까지 상정하고 산하 8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함
  - 과학기술처는 그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
  - 각 부·처·청·시·도는 이러한 심의과정을 거친 조정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관련 부처에 신청하고, 각 부처에서는 재정 담당부처에 해당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쳤음(강광남 외, 1994)
- 이 당시에는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집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편성된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였음
  - 정부연구개발의 집계기준은 현행 정부연구개발예산·기금의 범위가 아니라 과학기술처에서 매년 세입·세출예산서를 받아서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과학기술관계예산과 재정경제원에서 사용하는 과학기술예산[23]을 적용하였음(이장재, 1995; 황용수, 1997 등)
  - 또한 과학기술예산을 식별할 수 있는 공통 준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부연구개발예산 포함범위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였음(황용수, 1997, p44-46)

1990년대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종합조정 및 의사결정 지배구조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80년대 초반에는 일부 부처에서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
-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복잡·다원화되고 각 부처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1982년 1개에서 1998년 16개 부처로 확대되었으며, 정부연구개발예산 지출 규모도 1982년 0.2조 원에서 1998년 3.3조 원으로 16.5배 증액되었음
- 이에 따라 1990년대에 접어들어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관한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명확히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과학기술처, 1991, p206)

23) 재정경제원의 기능별 예산분류체계에 따르면, 예산체계상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코드 외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과학기술예산 통계에서 제외됨(황용수, 1997, 45).

● 한편 이 시기에는 필요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과학기술시행계획이나 주요 과학기술정책 등을 검토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결정 기구로 종합과학기술심의회[24], 과학기술장관회의[25] 등이 운영되었으나, 조정과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이 미약해 정책조정과 예산조정이 별도 과정으로 유리되는 등 종합조정의 실효성은 부족하였음(김종범, 1999, p71)

24)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정기구로, 1973년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처 장관을 간사로 하여 14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었음. 이 기구는 과학기술행정이 거의 과학기술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970년대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한 기술진흥심의회가 운영된 1980년대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았으나, 과학기술행정이 다원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총 8회가 개최되어 35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되거나 보고되었음.

25) 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정('97. 4.)을 계기로 1997년부터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대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기능 등을 담당하였음.

제3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1999년~200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됨

- 재정 담당 부처에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을 전담하는 담당과 신설[26], 연구개발 활동의 분류기준 정립과 그에 따른 통계현황 정비[27]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
- 1999년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제도[28]의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조정의 심의 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음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로 여타 정부예산의 편성과정과 달리 독특한 예산편성체계를 지니게 되었음

-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조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연구개발예산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음
- 이를 통해 종합과학기술심의회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조정 결과가 정부연구개발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음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Budgeting System)[29]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제도와 재정 담당부처의 예산검토 과정을 통해서 편성됨

- 이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출한 주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재정 담당 부처에 통보함

---

26) 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획예산처에 산업과학예산과가 신설되었음. 2000년에는 기존 산업과학예산과가 과학환경예산과로, 2006년에는 다시 과학환경재정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 과학환경재정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정부연구개발예산만을 전담으로 편성하지 않고 환경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음. 하지만 대폭 늘어나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규모에 비해 불과 2명 이내의 담당 공무원(주로 서기관과 주무관이 한 팀을 이룸)이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업무를 수행하였음.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에 정부연구개발예산만을 전담으로 편성하는 연구개발예산과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7) 연구개발 통계를 OECD 국제기준을 기본으로 재정비하고, 예산요구 및 심의단계와 연구개발사업 평가시 동일 사업 code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하였음(기획재정부, 1999).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제도는 1999년~2004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으로 수행됨.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에서는 전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조사·분석해서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과 같은 발전방향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에서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해서 차년도에 추진하려는 연구개발사업, 곧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배분을 수행함.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은 각 부처에서 차년도에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의 인정 여부와 계속사업의 예산 증감을 사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됨.

29)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된 정책우선순위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ceiling) 내에서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과 개별사업 검토중심으로 인한 거시적 재원분석 곤란,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됨.

- 재정 담당 부처에서는 이 의견을 참고해서 차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해당 지침을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시달함
- 각 부처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차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말까지 재정 담당부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제출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렇게 제출된 예산요구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조정을 시행해서 그 심의 결과를 재정 담당부처에 통보함
- 재정 담당 부처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내부심의에 활용하고, 10월 2일 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음

■ [그림 2-1]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 변화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을 보여줌

그림 2-1 국과위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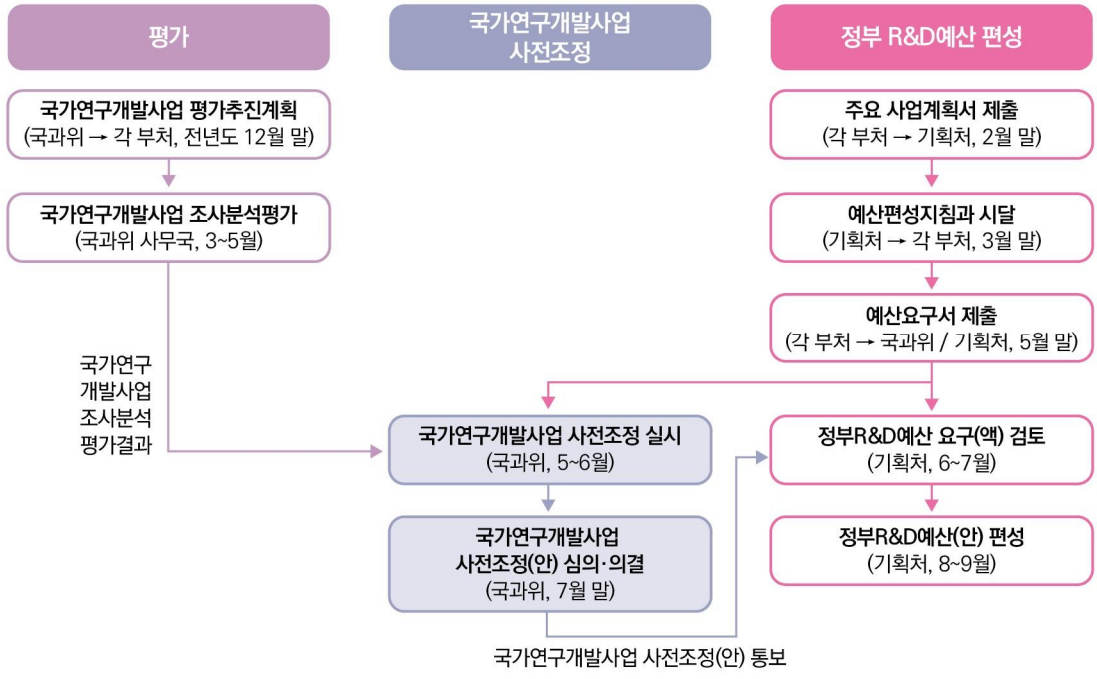

제4절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2005년~2007년)

-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는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와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2004년 10월 추진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권 부여 등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이 또다시 크게 변화되었음
  - 이러한 변화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 재정개혁 정책이 함께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향후 5년간 부처별 투자계획이 담긴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 또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실시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예산편성 단계가 추가되었음
  -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권 부여로 인해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제도 중 사전조정에서 제시하던 단순한 심의의견 수준이 아니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재정 담당 부처에 통보로 변경
  - 재정부처에서는 이 예산조정·배분(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안)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권명화, 2013, p28)

- [그림 2-2]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한 이후 변화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을 보여줌

그림 2-2 과학기술본부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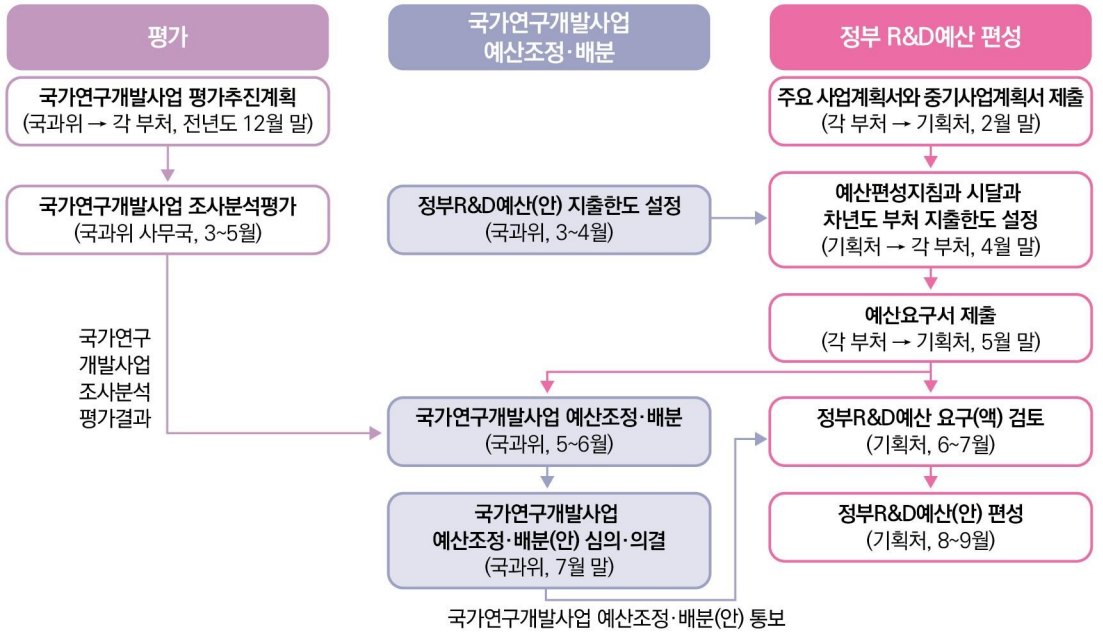

제5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2008년~2011년 3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여된 조정배분권이 폐지되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에 또다시 일부 변화가 발생함

-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로 분리됨
  - 정부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권한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 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만 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정부연구개발예산편성 권한이 기획재정부로 옮겨감

그림 2-3 연구개발 종합조정 기능의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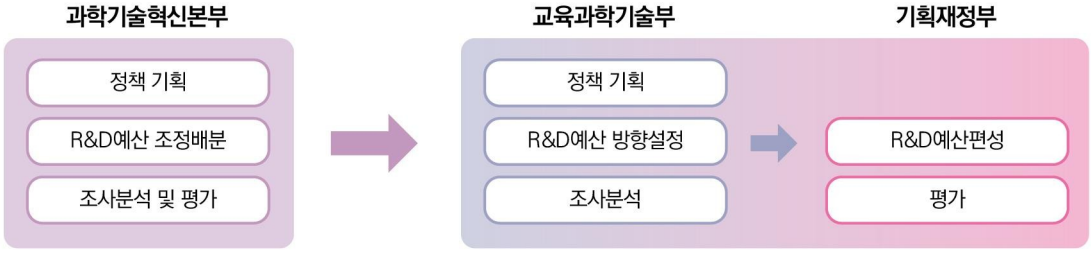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은 [그림 2-3]처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방향 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의 이원적 체제로 변경됨
- [그림 2-4]를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전년도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음
  -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4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출한도 설정이 폐지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권이 삭제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방향'만을 설정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는 동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을 편성하게 됨

그림 2-4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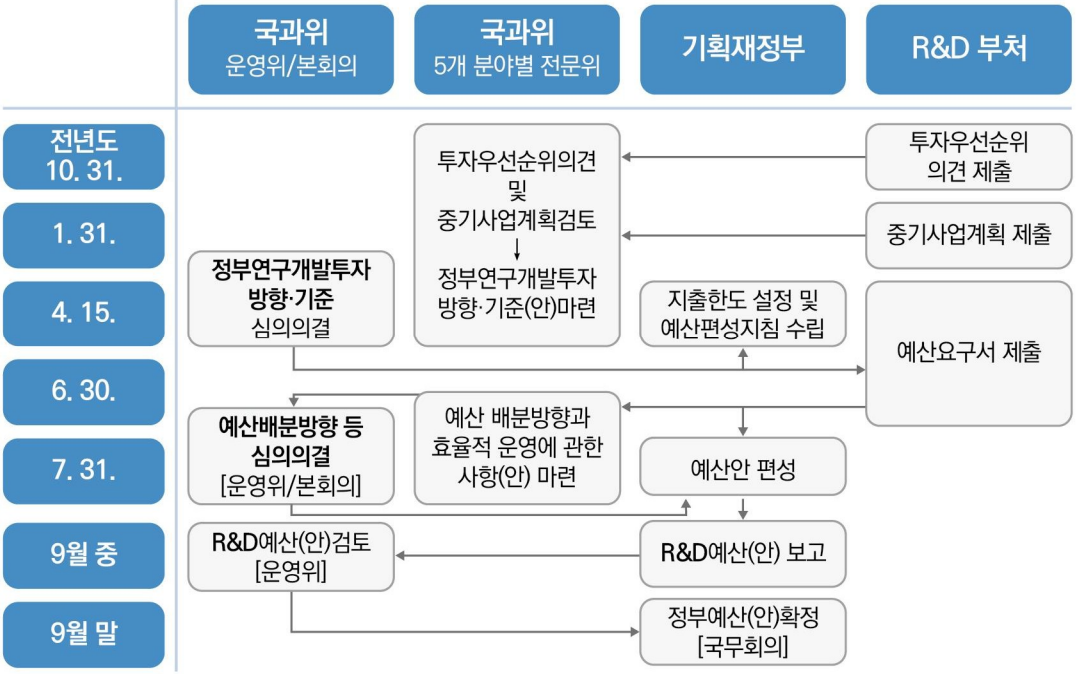

제6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2011년 3월~2013년 3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상설화된 이후에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30]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권이 부여되었으며, 성과평가 기능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받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연구 등 주요R&D에 대한 예산 배분을 수행
-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연계·중복성 등 연구개발 효율화 측면에서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의견 제시

그림 2-5 국과위와 재정부 간의 예산배분·조정 대상사업 범위

국과위 심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국과위 의견제시 [기타 연구개발사업(1)]	재정부 심의 [기타 연구개발사업(2)]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사업 유형**
• 기초원천, 응용개발 등 R&D 주요사업 •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의 주요 R&D 사업비 • 범부처 사업 • 시설장비구축 관련 사업	• Block funding성격의 대학(이공계) 지원금 • 국제부담금 • 연구기획평가 • 정보화 관련 사업	• 국방, 인문사회 R&D •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의 운영경비 (인건비 등) • 정책연구비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 1).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기술성 평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전개

■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와 비교한다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기능에 관한 정책수단은 일부 후퇴한 측면이 있음(박소희, 2014, p68)

-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은 정부연구개발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총액 및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상설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주요R&D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출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설정하도록 함

30)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 R&D,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R&D, ③ 기초과학 분야 R&D,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구축 R&D 등.

제7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2013년 3월~2017년 7월)

박근혜정부의 출범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폐지가 결정됨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과학기술 기능을 통합한 주요 부처로 자리매김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중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고, 심의회의체 기능은 새로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수행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주요R&D 예산 조정·배분(안)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에 반영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조정국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별 심의조정 및 편성을 수행함

그림 2-6 미래부와 기재부 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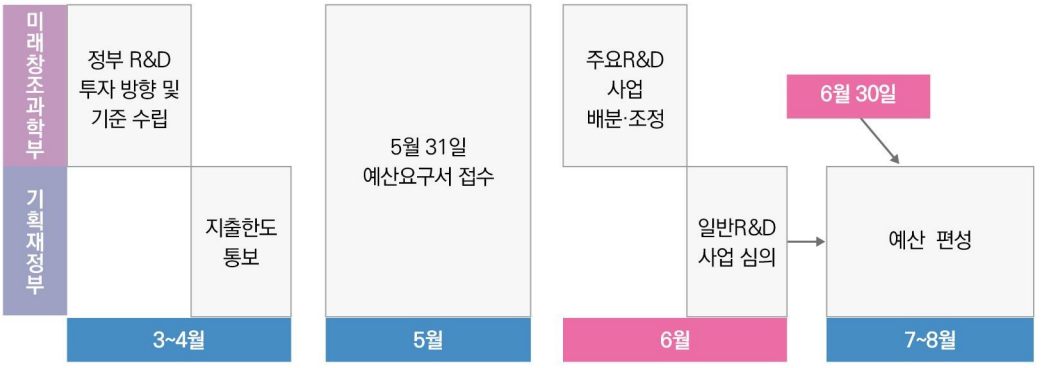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6).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시
-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초로 연구개발예산안 편성
  - 기획재정부는 주요R&D를 제외한 기타 연구개발사업(이하 일반 R&D)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연구개발예산의 총량관리 측면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검토하여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3년 3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였으며,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상설기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회의의장), 민간위원장(대통령 지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부위원(각 부처장관) 15명,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됨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은 산하에 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7개, 협의회 2개, 운영위원회로 구성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 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주요R&D의 예산을 배분 및 조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의 종합관리 및 활용을 지원함

제8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2017년 7월~2022년 5월)

■ 문재인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17. 5. 9.)'을 거쳐 2017년 5월 10일에 공식 출범하였음

- 대선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 정부와는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법령 정비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구상한 과기정책 거버넌스도 정부 출범 이후에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음
- 「정부조직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정부 출범 1년여 만인 2018년 4월부로 과기정책 거버넌스 개편이 일단락됨

표 2-2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체제 관련 법 개정 현황

개정 법	주요 개정 내용	의의
「정부조직법」 • 개정: '17. 7. 26. • 시행: '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舊 미래창조과학부) – 차관급 과기혁신본부 설치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舊 중소기업청) – 창조경제사업 및 과기정통부·산업부 연구개발사업 일부 이관 • 행정안전부 출범, 소방청·해경청 신설 등	• 과기정책 컨트롤타워(과기혁신본부) 위상 강화 •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지원 강화 전망
「과학기술기본법」 • 개정: '18. 1. 16. • 시행: '18. 4. 1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폐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배분·조정 분야 확대(과기출연연 연구사업비 外 인건비·경상비도 배분·조정)	• 과기정책 자문·심의·조정 기능의 연계 강화 • 과기출연연 특수성 고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개정: '18. 1. 16. • 시행: '18. 4. 1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폐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 과기정책 자문·심의·조정 기능의 연계 강화
「국가재정법」 • 개정: '18. 1. 16. • 시행: '18. 4. 17.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신설 – 기재부가 과기정통부로 위탁하여 시행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수성 고려

■ 업무기능 측면에서 과기정책 자문·심의·의결 기능의 연계가 강화되었고, 연구개발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조정 체계 및 예비타당성조사 주체의 변화가 이루어짐

-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위탁 형식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감한 결정으로 볼 수 있음
- 단, 문재인정부가 당초에 목표했던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지출한도 공동설정은 「국가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무산되었음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도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일부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

그림 2-7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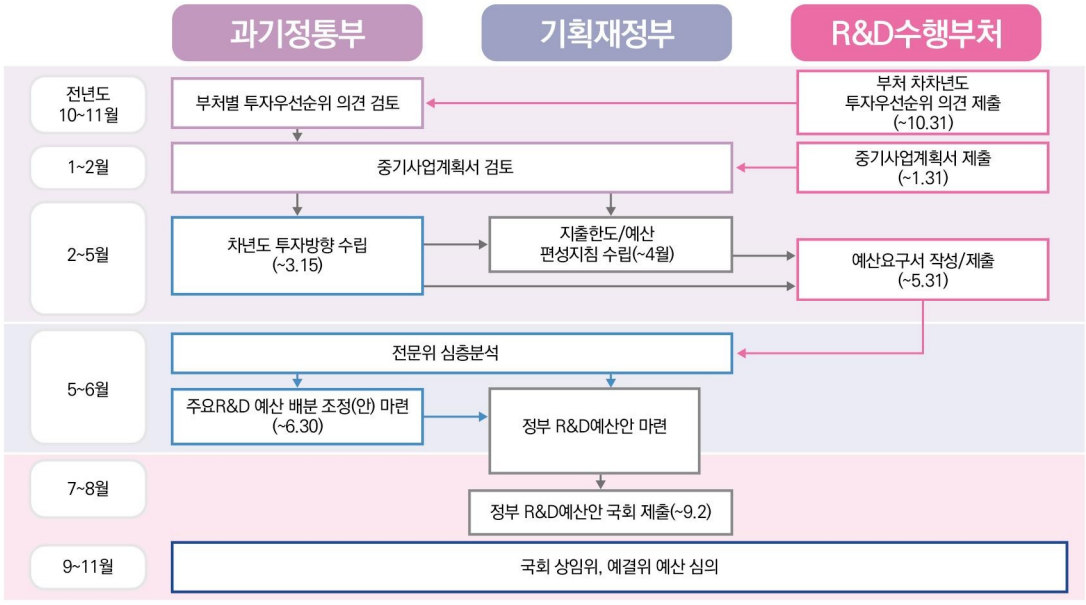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제9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2025년 4월)

■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민간 참여 확대, 국가전략기술·임무 중심 국가 R&D 추진 등의 과기정책 관련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함

-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추진함
- 범부처 민관합동회의체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민간 참여 제고 방안을 검토함

표 2-3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관련 주요 국정과제

구분	주요 목표	주요 내용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통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 전환, 산학연 융합 협력 강화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등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글로벌시장 선도와 국익안보 확보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 결집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 •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 발굴하여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등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을 발표함 ('24. 6.)

-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여 이를 폐지하고, 적기에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함
  - 1천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는 기획완성도 제고 및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해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가칭)사전기획 점검제'를 추진하고, 연구시설구축 및 체계개발 R&D는 사업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예정임

■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기술 발전 심화에 따라 세부 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정부 R&D 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년 정부 R&D 투자 방향,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정부 R&D 사업 예산 검토 등에 관한 자문과 검토를 수행함
  - 현행 ICT·융합 전문위원회에서 AI·ICT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해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되었으며, 전문위원 수도 기존 131명에서 165명으로 대폭 확대함

제10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2025년 6월~현재)

■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과학기술 부총리를 출범하고, 'AI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5강 실현' 등 과학기술 부문 국정과제를 제시함

- 정부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속도감 있는 이행 및 조율을 위한 협의체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부총리)'[31]를 출범함
- 'AI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등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정부총지출대비 5% 수준 R&D 예산 확대 노력,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등 세부 이행 목표를 설정함

표 2-4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체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및 법률 개정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의의
국정과제	•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AI 및 전략기술 등 추격형이 아닌 기술주권·국가경쟁력(국력) 관점의 선도 전략으로 격상 •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확대 노력, 연구행정 부담 대폭 완화,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등 R&D 예산·기초연구 환경·핵심인재 체계를 개편하고 상시 점검·조정 컨트롤타워 및 점검 체계 구축
「정부조직법」 • 개정: '25. 10. 01.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기정통부 장관 겸임) – 과기장관회의 출범(과기부총리 의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舊 환경부) – 산업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이관 •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및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신설 등	• 과기·AI 범부처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 •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 추진을 통해 이행력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 개정: '26. 2. 10. 「국가재정법」 • 개정: '26. 2. 10.	•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 연구개발사업 사전기획점검 신설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심사 신설	•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후속 제도 신설

3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그간 참여정부('04~'07), 문재인 정부('18.~'21.) 총 2회 운영되었음

’26년 2월, 정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 및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 사전점검제도를 본격 추진함[32)]

- 정부는 대형 R&D 사업 혁신방안('24.6) 발표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26.2)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기획의 부실 방지 및 신속·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사전점검제도를 신설하여 본격 추진함
- 대형 R&D 사업 사전점검제도는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형 R&D는 사전기획점검, 구축형 R&D는 전주기 단계별 심사로 구분하여 추진 예정임

표 2-5 대형R&D 사전점검제도 관련 근거 및 유형

구분	연구형 R&D	구축형 R&D
관련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3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4
점검유형	사전기획점검	사업추진심사 등 전주기 단계별 심사 (수요결정→개념설계(사업추진결정)→기본·실시설계→구축)
R&D유형	기초연구, 원천연구, 선행기술개발, 국제연구, 연구기관지원, 기술사업화, 인증/규제기술, 인력양성 등	연구시설·장비, 연구단지, 인공우주물체 등 체계개발

그림 2-8 대형R&D 유형별 사전점검 제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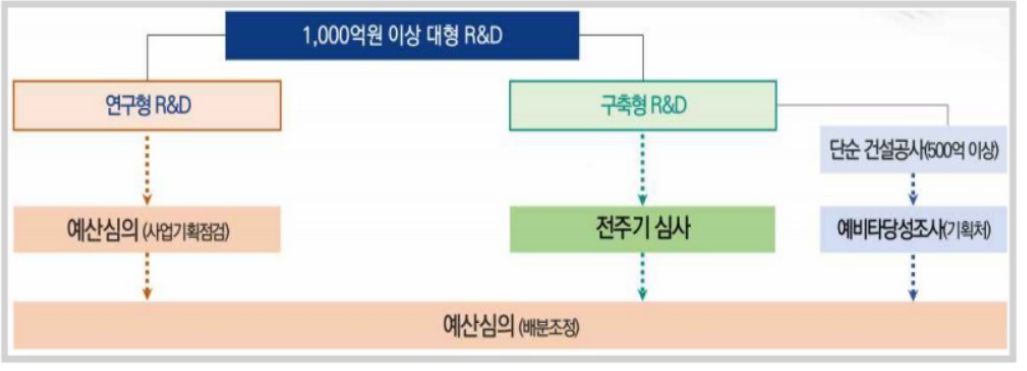

3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안)」, 2026. 2

■ 또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기존 PBS(Project-Based System)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적 중장기·대형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점도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음

관련 정책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6번 과학기술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 (과기관계장관회의, 2025.11.24.)「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 (과기관계장관회의, 2025.12.18.)「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 (재정 구조) 출연연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정부 수탁사업에서 충당 → 출연금 기본사업으로 인건비 전액 지원

- (기존) 출연연 인건비/간접비 수입은 출연금+외부 수탁(정부/민간)에서 충당
- (~'30년) 매년 종료되는 출연연 정부 수탁과제를 기관출연금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기관출연금에서 인건비 전액 충당 목표
- ('30년~) 기관출연금이 충분히 확보된 후 전략연구사업에서 인건비, 경상비를 분리하여 기관 운영비로 관리

● (사업 체계) 기관출연금을 기관 자체 수요에 따른 '기본연구사업'과 정부·기업수요 기반으로 운영하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유형화

- (신설 전략연구사업) 부처·산업계 수요 기반 중장기·대형 임무 수행

※ ①정부·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②출연(연)이 기술적 목표를 설정하고 ③자율적으로 수행하는 ④산학연 협력형 연구사업

- (기관고유사업) 기관 수요 기반 중장기 역량확보 중심으로 재편

※ 중장기 역량 확보 연구, 법적·정책 지원 등의 고유 연구, 우수연구자 유치 등 인재양성, 연구성과 스케일업 및 기업 사업화 지원 등

● (임무 체계)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하여 국가적 임무를 발굴·확정하고, 출연연은 기관출연금 내 중장기·대형인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임무 수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전략연구사업 예산 요구 절차〉

❶ 국가 임무 수요 조사(12~1월, 과기정통부·연구회) → ❷ 차년도 연구주제 확정(1월, 운영위원회) → ❸ 출연(연) 자체기획(1~3월, 출연(연)) → ❹ 조정·보완(3~4월, 전략연구지원단)→ ❺ 차년도 요구과제 확정 (4월 말, 운영위원회)→ ❻예산 요구(5월, 출연(연))

Ⅲ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 총량 추이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편성과정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제4절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5절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6절 신규·종료사업과 세부사업 개편 현황

Ⅲ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 총량 추이

1. 중장기 추이

■ 1998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연평균 8.8%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예산의 증가율(6.8%)[33]을 상회함

● 정부예산에서 연구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9%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4%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 최초로 5.0%를 기록 후 다시 증감을 반복 중

- 2016년에는 고용·복지 등의 분야에서 재정지출 증가 및 R&D 투자효율화 추진의 영향으로 4%대로 하락하였고(4.9%),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한 2019년에는 그보다 낮은 4.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9년의 통합재정규모 자체가 전년 대비 10.6%라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음

  * 통합재정 규모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07년~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확장재정을 추진했던 2009년 이후 최초임

- 2023년까지 총지출 규모 대비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3년 연속 약 5% 수준을 유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COVID-19 팬데믹(범유행) 이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및 정부연구개발예산 효율화 기조에 따라 2024년은 투자 규모를 조정(베이스라인 조정 기준 전년 예산 대비 9.5% 감소)

- '26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4.88%로, '23년 31.1조 원 이후 30조 원대를 회복함

33) 1999년~2006년 통합재정규모, '07년 이후 정부총지출 기준.

그림 3-1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가율 추이(1998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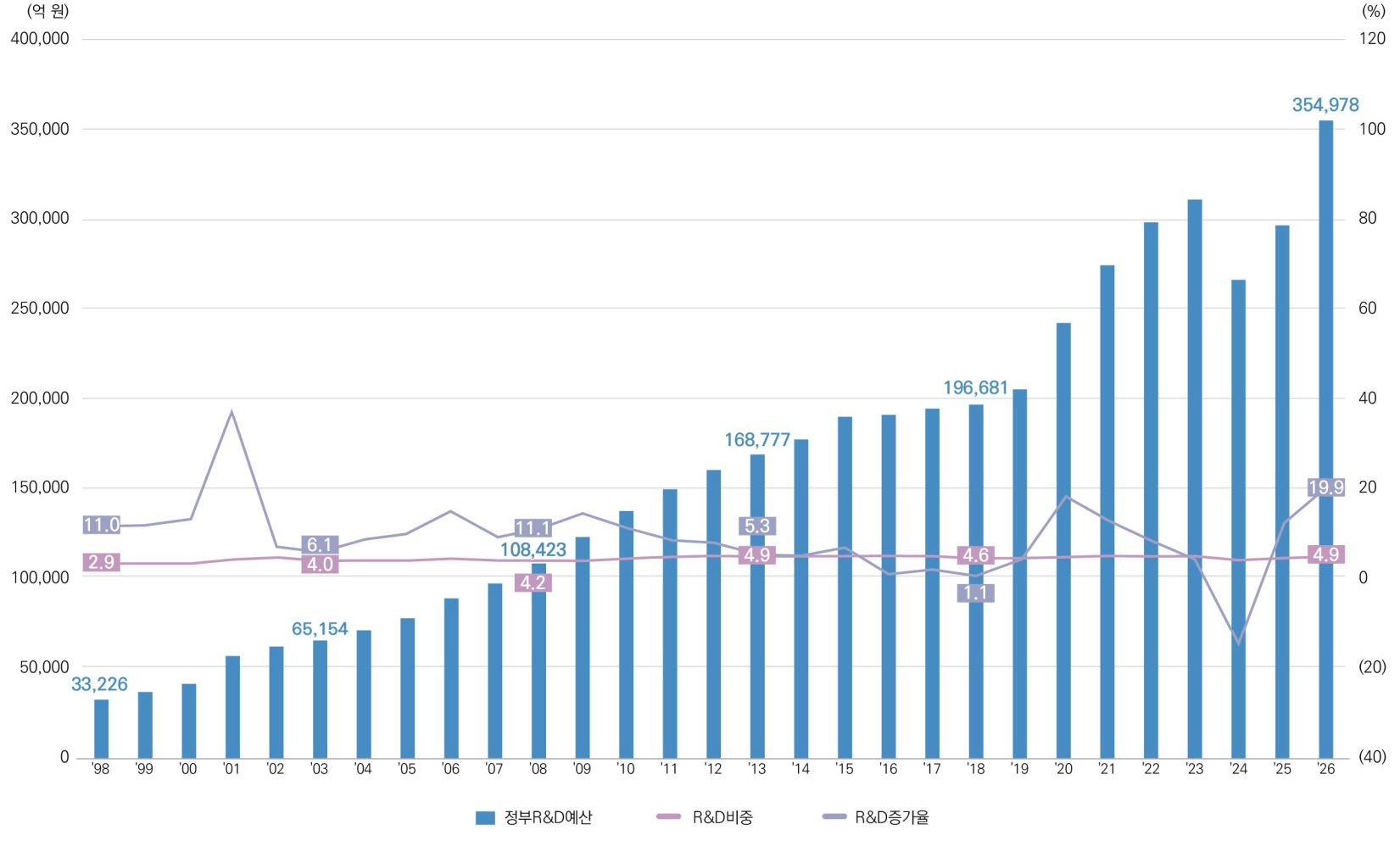

참고: 그래프의 세부 수치는 [부록-1A~부록-2] 참조.

2. 부문별 추이

그림 3-2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및 전망(2019년~20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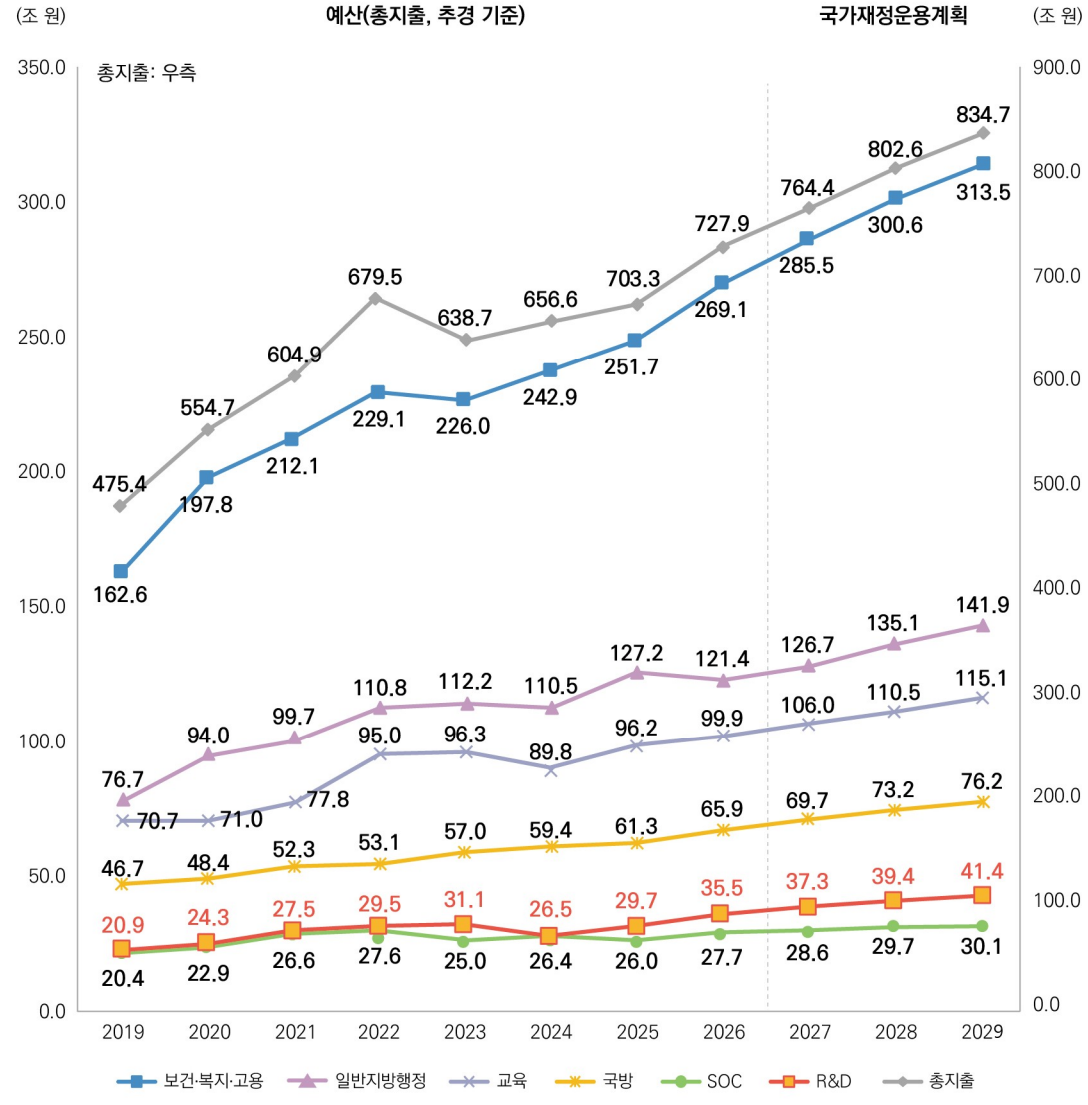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부(2025a)에서 인용 후 수정.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타 부문 예산이 재정 여건의 변동에 따른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비효율·낭비 요인을 구조 조정한 이후, 2026년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

● '25년~'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 '19년~'29년간(10년)의 주요 부분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R&D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7.1%로 가장 높으며, 보건·복지·고용(6.8%), 일반지방행정(6.3%), 국방, 교육(각 5.0%) 순으로 전망됨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24년도 효율화를 제외하고 2018년도부터 SOC 부문을 추월하는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1%로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음

3. 회계별 추이

■ 정부연구개발예산 통계는 '과학기술관계예산'으로 명명되던 1964년부터 관리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987년부터, 기금은 1998년부터 각각 정부연구개발예산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98년부터 2026년까지 각 회계별 연평균 증가율은 일반회계가 11.2%, 특별회계가 3.8%, 기금이 16.8%를 기록

■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특별회계 규모가 기금을 최초로 추월한 것은 2005년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특별회계 규모는 꾸준히 기금 규모를 상회함

●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각 회계별 평균 비중은 일반회계 74.5%, 특별회계 13.9%, 기금 11.6%임

그림 3-3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1998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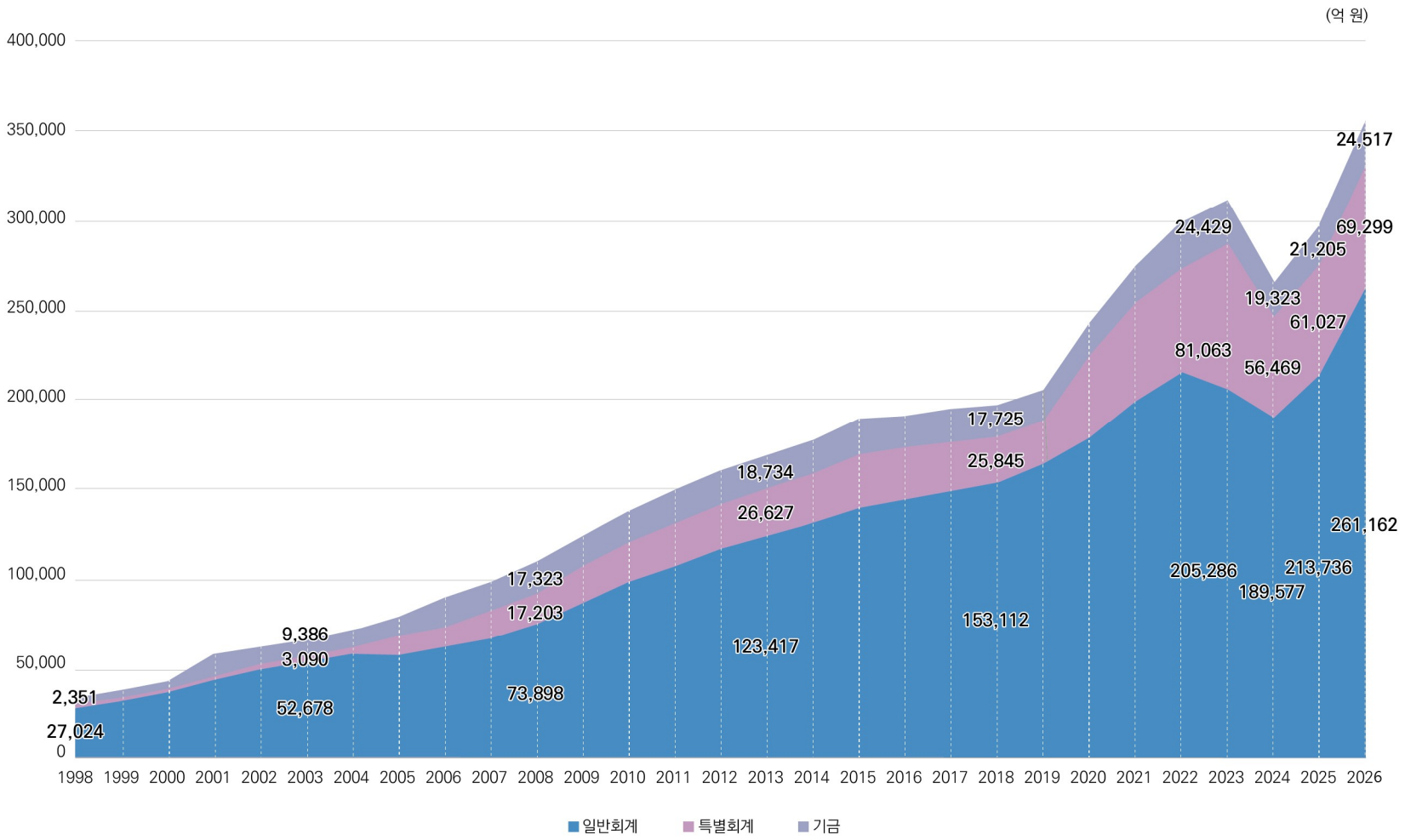

참고: 그래프의 세부 수치는 [부록-2] 참조.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편성과정[34]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그림 3-4]에서 보듯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 각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통보] → [예산요구서 제출]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 [기획재정부 내부 예산심의] → [정부연구개발예산(안) 국회 제출] → [국회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서 매년 연말에 최종 확정됨

그림 3-4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확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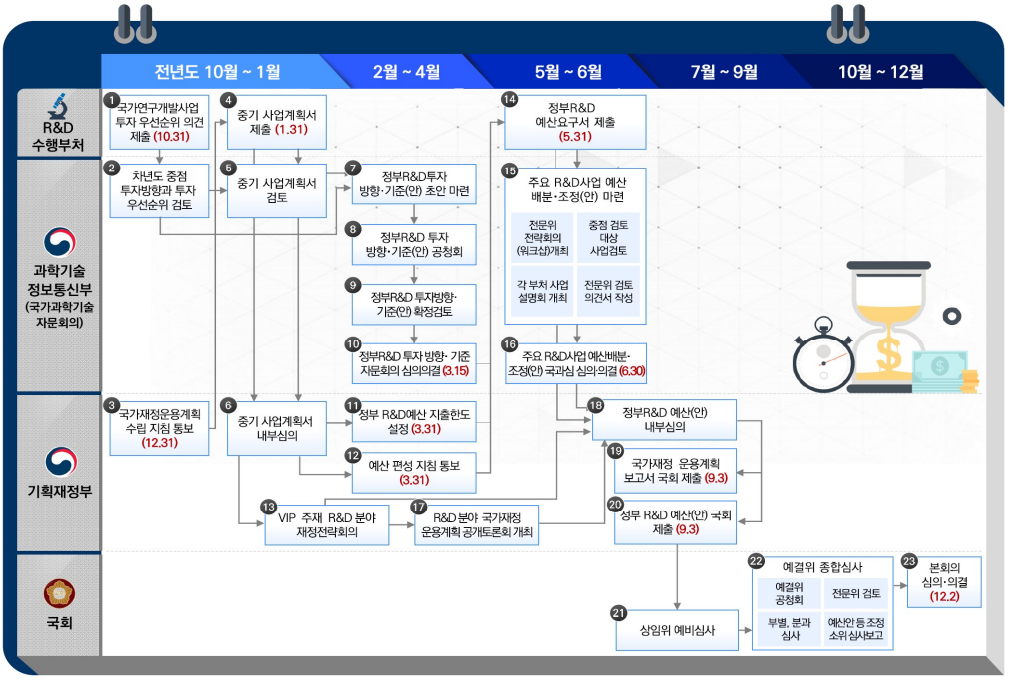

참고: 명기된 날짜는 법정시한 또는 통상적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해당 업무가 이루어진 날짜와는 다를 수 있음.

-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은 각 부처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35]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6]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③항에 의거하여 부처에서 제공받은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해서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에 통보

34) '26회계연도 예산 편성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이나,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25.10.8)에 따라 '27회계연도부터 기획예산처로 변경
35) 「국가재정법」 제28조.
36)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②.

■ 2025년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이 지침을 「국가재정법」 제29조 1항에 의거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

- 기재부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등을 활용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총연구개발예산 규모, 부처별 지출한도를 확정하고, 2025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 지침에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각 부처에 통보[37)]
- 각 부처에서는 이 지출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2026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 각 부처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정부연구개발예산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6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38)]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9)]에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4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 결과, 2026년 주요 R&D 규모는 30.1조 원으로 확정('25년 국회확정 예산 대비 21.4%(약 5.3조 원) 증가)

■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활용해서 내부 예산심의를 시작

■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의 일부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41)]

■ 국회에서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등을 거쳐, 2025년 12월 2일에 전년 대비 8.1%(약 55조 원)가 증가한 727.9조 원(총지출 기준)을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최종 의결·확정

-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35조 4,928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9.9%(5조 8,960억 원)가 증가함
- 연도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추이는 [부록-1A~C]와 [부록-2] 참조

37) 「국가재정법」 제29조.
38) 「국가재정법」 제31조 ①.
3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④.
4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⑤.
41) 「국가재정법」 제33조.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방향[42)]

‘기술주도 성장’ 및 ‘모두의 성장’을 위해 과감한 R&D 확대와 전략적 배분·조정 기반의 새정부 국정과제 적극 이행 및 과학기술계와 함께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방향 설정

- AI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여, 첨단기술 기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
- 위축된 연구 현장이 다시금 활력을 머금고,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
- 단순 예산 복원을 넘어서,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우고 기초과학, 중소·벤처, 지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연구생태계로 전환

  ※ 정부총지출 대비 5% 투자 노력 의무를 명시한「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발의

과학기술 기반의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R&D 투자시스템으로 전환

표 3-1 2026년도 정부R&D 중점 투자방향

2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기술주도 성장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 ② (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③ (전략기술)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 육성 ④ (방산)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 가속화 ⑤ (중소벤처)중소벤처 혁신으로 여는 성장의 새 길
모두의 성장	⑥ (기초연구)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 ⑦ (인력양성)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 실현 ⑧ (출연기관)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출연기관 혁신 ⑨ (지역성장)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⑩ (재난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 총력 대응

(기술주도 성장)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 반짝성장이 아니라, 체질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

- (인공지능) ‘해외 빅테크 따라가기’에 치중한 산발적 기술개발에서 AI 생태계 전반의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설정

42) (대한민국정부,2026.01) 2026년 경제성장전략, (기획재정부, 2025.08) 2026년 예산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5.08)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기반으로 작성

- (에너지) 기존 요소기술 중심의 분산투자와 소규모 실증 위주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 (전략기술)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매몰되어 산업현장과 연계 단절에서 벗어나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합동 연구성과를 대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방향을 설정
- (방산) AI 등 첨단기술을 국방에 접목하여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
- (중소벤처) 기업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집중적·체계적 지원

(모두의 성장) 일부만이 혁신하고 소수가 과실을 누리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누리는 체감 가능 성장

- (기초연구)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인력양성)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초격차 해외 인재의 유치 및 정착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방향을 설정함
- (출연기관) '인건비 채우기성' 수탁과제 중심의 출연금 재정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출연기관 본질(중장기·대형연구)에 충실하여 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
- (지역성장) 지역 강점·특성을 반영한 지역 자율형 R&D로 지역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재난안전) 현장 활용성을 고려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현장 중심 역량 강화

그 외 R&D 예산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①부처간 유기적 연계·협업으로 시너지를 확대하고, ②사업 통합·대형화로 성과관리 연계를 강화하고, ③예산 편성 이후 지속적 점검·컨설팅을 추진

-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확산까지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병행 검토 및 부처 역할분담과 성과 연계로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 확대
- 파편화된 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목구조 개편 추진 및 분야별 대형 사업으로 재구조화를 통해 R&D 투자 및 관리의 효과성을 증대
- 예산 편성 이후에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정과제 관련 사업의 기획·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새정부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제4절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전년 대비 19.9%(5조 9,010억 원) 증가한 35조 4,978억 원임

-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세부 추이는 [부록-3] 참조

표 3-2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2023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3년[1)]	2024년	2025년(A)	2026년(B)	증감 (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b+c)	**293,163 (310,778)**	**265,369**	**295,968**	**354,978**	**59,010**	**19.9**
• 예산(a+b)	268,733 (286,349)	246,045	274,763	330,461	55,697	20.3
- 일반회계(a)	203,458 (205,286)	189,577	213,736	261,162	47,426	22.2
- 특별회계(b)	65,276 (81,063)	56,468	61,027	69,299	8,271	13.6
• 기금(c)	24,429 (24,429)	19,323	21,205	24,517	3,313	15.6

주 1) ’23년 괄호 안은 국회확정 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2%(4조 7,426억 원) 증가한 26조 1,162억 원임

- 주요 증액사업은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25년 1조 9,053억 원 → ’26년 2조 2,657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부)(’25년 5,960억 원 → ’26년 7,864억 원) 등임
  - 과기정통부의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심화·발전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8.9%(3,604억 원) 증가함
  - 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9%(1,904억 원) 증가함
- 주요 감액사업은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산업부)(’25년 3,904억 원 → ’26년 3,397억 원), 〈양자ICT기술개발〉(과기정통부)(’25년 384억 원 → ’26년 351억 원) 등임
  - 산업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 요소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내역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감소함
  - 과기정통부의 〈양자ICT기술개발〉 사업은 양자 통신·센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확산을 위한 응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과제 종료로 전년 대비 감소함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6%(8,271억 원) 증가한 6조 9,299억 원임

- 주요 증액사업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산업부)('25년 1조 1,780억 원 → '26년 1조 2,909억 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교육부)('25년 5,930억 원 → '26년 6,208억 원) 등임
  -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소재·부품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6%(1,130억 원) 증가함
  - 교육부의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은 이공학 전 분야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연구자 연구역량 확대와 지속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278억 원) 증가함
- 주요 감액사업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산업부)('25년 2,151억 원 → '26년 2,005억 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과기정통부)('25년 1,921억 원 → '26년 1,555억 원) 등임
  - 산업부의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은 첨단 미래·전략산업의 공급망 및 소부장 생태계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일부 과제 종료로 전년 대비 감소함
  - 과기정통부의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은 동위원소 생산 전용 원자로를 설계·구축하고, 최신 핵심기술 실증을 통해 연구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건설공사 누적 공정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감소함

기금은 전년 대비 15.6%(3,313억 원) 증가한 2조 4,517억 원임

- 주요 증액사업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기후부)('25년 3,141억 원 → '26년 3,319억 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25년 993억 원 → '26년 1,074억 원) 등임
  - 기후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로 고용,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178억 원) 증가함
  -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과 ICT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1%(81억 원) 증가함
- 주요 감액사업은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기후부)('25년 1,287억 원 → '26년 1,243억 원),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25년 947억 원 → '26년 772억 원)
  - 기후부의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4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제조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설비 혁신 달성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과제 종료로 전년 대비 감소함
  - 과기정통부의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지능화·융합 SW기술 확보를 통해 SW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부 과제 종료로 전년 대비 감소함

제5절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 주요/일반R&D 현황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권한이 분리됨

- 주요R&D 사업[43]에 해당하는 30조 2,810억 원('26년 기준)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배분·조정함
- 반면, 일반R&D 사업에 해당하는 5조 2,168억 원('26년 기준)은 기재부에서 직접 예산안을 편성함
-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주요R&D 예산은 전년 대비 22.1%(5조 4,866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R&D 예산은 전년 대비 8.6%(4,145억 원) 증가함

표 3-3 주요/일반R&D 예산 현황(2023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3년 (베이스라인 조정)	(국회확정)	2024년[1)]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주요R&D 예산 (비중)	249,392 (85.1)	249,392 (80.2)	219,079 (82.6)	247,944 (83.8)	302,810 (85.3)	54,866	22.1
일반R&D 예산 (비중)	43,770 (14.9)	61,386 (19.8)	46,289 (17.4)	48,024 (16.2)	52,168 (14.7)	4,145	8.6
합계	**293,163 (100.0)**	310,778 (100.0)	**265,369 (100.0)**	**295,968 (100.0)**	**354,978 (100.0)**	**59,010**	**19.9**

주 1) '24년도부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운영비지원 사업에서 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분리하여 일반R&D로 이관함.

43) 주요R&D의 범위는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 R&D,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R&D, ③ 기초과학 분야 R&D,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구축, 다부처 R&D 등(「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

2.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 '26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전년 대비 16.3%(5,851억 원) 증가한 4조 1,856억 원임[4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은 23개 기관이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25년 2,474억 원 → '26년 3,608억 원), 〈한국전자통산연구원 연구 운영비〉('25년 1,126억 원 → '26년 1,692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
- 부처 직할출연기관은 23개 기관이며,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25년 2,726억 원 → '26년 2,903억 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25년 1,092억 원 → '26년 1,485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
  - '24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이었던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항공청 산하 법인으로 편입됨('24. 5. 27.)
  - '25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관 명칭이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변경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예산의 세부현황은 [부록-5A] 참조

■ '26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쟁점으로 소규모 수탁과제를 경쟁 수주하던 출연연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 임무 중심의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로 전환[45)]

- 인건비·운영비 확보 압박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수탁과제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30)하고 이를 출연기관별 임무 중심 대형과제*로 재설계하여 성과 창출 극대화

  * 전략연구사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및 직할기관 대상 국가적 임무 중심의 중장기/대형 연구 사업 신설

표 3-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2023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 과기계 출연연 합계 〉	**35,268**	**32,784**	**36,005**	**41,856**	5,851	16.3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3,683	21,711	22,211	26,418	4,207	18.9
• 부처 직할출연기관	11,585	11,073	13,794	15,438	1,644	11.9

주) R&D 재원으로만 수행되는 예산 규모(부처 직할출연기관 중 4대 과기원은 연구계수 0.5 적용)

44) '24년도부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운영비지원 사업의 시설 지원사업 부분을 일반R&D로 분리 및 이관하였음.
4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 소관 24개[46] 연구기관의 예산은 전년 대비 31.9%(1,731억 원)가 증가한 7,148억 원임

- 한국개발연구원('25년 657억 원 → '25년 828억 원), 국토연구원('25년 243억 원 → '26년 354억 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5년 313억 원 → '26년 355억 원) 등 예산이 증액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별 예산의 세부현황은 [부록-5B] 참조

■ (국정과제) '26년도 경제인문사회 출연연구기관 정부수탁 사업비 제도(PBS)를 완전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 강화

- 경제인문사회 출연연구기관에서 기존 수행 중인 정부수탁 사업비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하여 출연(연) 본연의 임무를 강화

표 3-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현황(2023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연구기관	5,514	5,306	5,417	7,148	1,731	31.9

46) 정부연구개발예산 출연 기준이며, 부설기관 포함 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총 26개임 (참고: www.nrc.re.kr/menu.es?mid=a10104000000).

제6절 신규·종료사업과 세부사업 개편 현황

1. 2026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26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6개 부·처·청·위원회의 302개 사업(1조 6,707억 원)임

● 예산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5,510억 원, 33.0%)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부(3,379억 원, 20.2%), 기후부(3,031억 원, 18.1%) 순

그림 3-5 2026년도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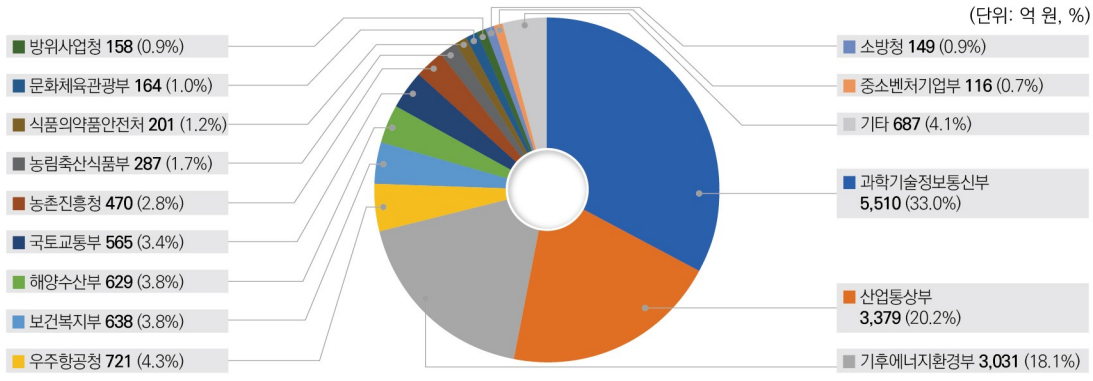

주 1) 기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26년 예산 순)

● 최근 5년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6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내역은 [부록-7T] 참조

표 3-6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2022년~2026년)

(단위: 억 원, %, 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정부R&D예산(a)		297,770	293,163[1)]	265,369	295,968	354,978	59,010	19.9
신규사업	**예산(b)**	**22,502**	**11,135**	**5,949**	**9,882**	**16,707**	**6,825**	**69.1**
	비중(b/a)	7.6	3.8	2.3	3.3	4.7		
	사업수(c)	323	212	145	235	302		
	평균예산(b/c)	69.7	52.5	41.0	42.1	55.3		

주 1) ’23년 국회확정 예산은 310,778억 원.

2. 2025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25년도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4개 부·처·청·위원회의 208개 사업(9,578억 원)임

- 예산 규모 순으로 산업부(2,160억 원, 22.6%)가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과기정통부(1,620억 원, 16.9%), 기재부(943억 원, 9.8%), 국토부(910억 원, 9.5%) 순임
- ’25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부록-8I] 참조

표 3-7 2025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단위: 억 원, %)

부처	종료사업	’25년 예산	비중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35개	2,160	22.6
과기정통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1] 등 40개	1,620	16.9
기재부	〈폐플라스틱활용원료·연료화기술개발사업〉 등 27개	943	9.8
국토부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 등 18개	910	9.5
복지부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 등 6개	747	7.8
중기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 10개	598	6.2
해수부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 등 16개	584	6.1
방사청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 등 8개	352	3.7
우주청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등 9개	330	3.4
산림청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 등 6개	237	2.5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 등 5개	209	2.2
농진청	〈국가농경지환경자원관리기술개발〉 등 6개	195	2.0
식약처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 등 2개	96	1.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 1개	93	1.0
행안부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 등 4개	91	0.9
국방부	〈국방ICT융합〉[1] 1개	88	0.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등 2개	72	0.8
해경청	〈해양사고신속대응군집수색자율수중로봇시스템개발〉 등 2개	61	0.6
경찰청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경찰청)〉 등 2개	50	0.5
질병청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1개	41	0.4
농식품부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1] 1개	38	0.4
기상청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 등 3개	27	0.3
문체부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 등 2개	24	0.3
원안위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 1개	12	0.1
합계	**208개**	**9,578**	**100.0**

주 1)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해당 부처만 집계한 사업비임.

3. 2026년도 세부사업 개편 현황

■ ’26년도 세부사업 단위의 개편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 분할, 이관(회계, 소관), 회계명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 기후부, 산업부, 국토부, 행안부, 국조실 5개 부처의 95개 사업이 20개 사업으로 통합됨
- 중기부의 1개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분할되었으며, 농진청의 2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분할됨
- 과기정통부, 국토부, 해수부 3개 부처의 6개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기후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산림청의 4개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이관됨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면서 기존 〈IP-R&D 전략지원〉 등 3개 사업이 책특회계(특허청)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등 5개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원자력기금으로 이관
-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에너지 기능이 기후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로 소관명이 변경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 30개 사업이 기후부로 이관됨
-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기재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등 49개 사업이 기후부로 이관됨
- 과기정통부의 〈프로그래머블미디어핵심기술개발〉 1개 사업이 방통위로 이관됨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명칭이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기존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3개 부처의 22개 사업의 회계명이 변경됨
- ’26년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편에 관한 상세 내역은 [부록-12c~g] 참조

■ ’26년도 기준 세부사업명 변경은 과기정통부, 해경청, 농진청, 해수부, 우주청, 경찰청, 산림청, 기후부 8개 부처의 13개 사업에서 이루어짐

- ’26년 각 부처별 세부사업명 변경 현황은 [부록-13L] 참조

■ ’26년도 기준 방사청, 국조실, 산림청 3개 부처의 3개 사업이 R&D에서 비R&D로 이관되었으며, 과기정통부 1개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이 비R&D에서 R&D로 이관됨

- ’26년 R&D-비R&D 간 이관 사업 현황은 [부록-14I] 참조

Ⅳ

2026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부처별 총괄 현황
제2절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Ⅳ 2026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부처별 총괄 현황

-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3.2%(11조 7,930억 원)로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16.5%(5조 8,396억 원), 산업통상부 14.7%(5조 2,15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6.2%(2조 1,959억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6.2%(2조 1,92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연구개발예산 상위 5개 부처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7%이며, 상위 3개 부처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64.4% 수준임

그림 4-1 2026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1)]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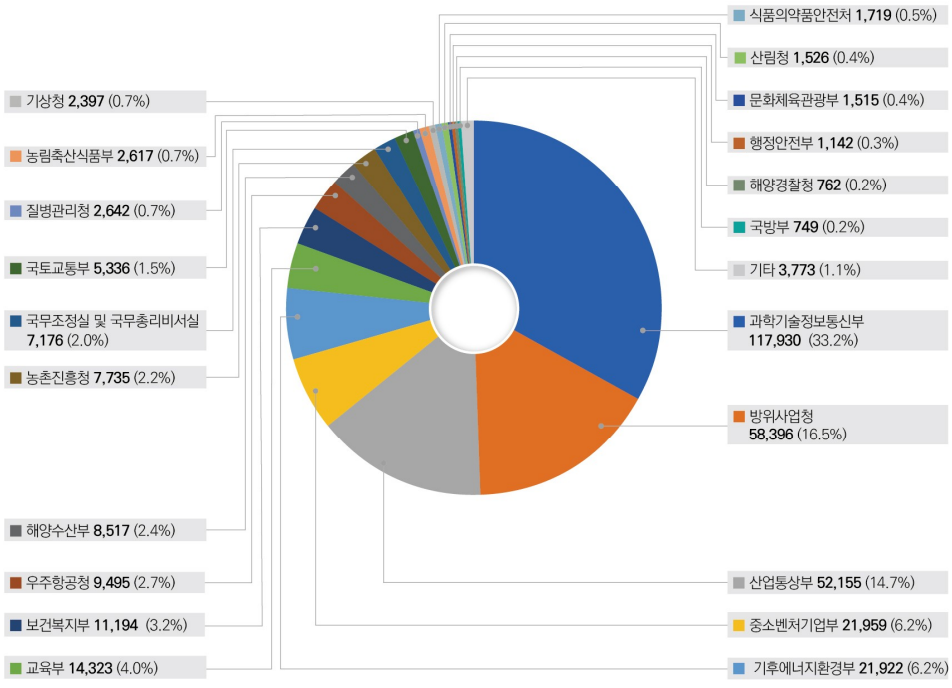

주 1) 기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유산청, 경찰청, 지식재산처, 소방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달청, 법무부, 관세청, 대통령경호처,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26년 예산 순).

■ 전년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조 2,092억 원, 23.1% 증), 기후에너지환경부(1조 8,729억 원, 586.6% 증), 방위사업청(9,502억 원, 19.4% 증) 순으로 예산이 증가함

● 새 정부 조직·기능 개편에 따라 '26년 회계연도 일부 사업이 개편되었으며,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26년 9,400억 원), 기후대응기금 소관이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26년 8,182억 원) 등이 있음

표 4-1 2026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부 처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95,838	117,930	22,092	23.1
방위사업청	48,894	58,396	9,502	19.4
산업통상부(전 산업통상자원부)	52,764	52,155	△609	△1.2
중소벤처기업부	15,170	21,959	6,790	44.8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	3,193	21,922	18,729	586.6
교육부	13,796	14,323	527	3.8
보건복지부	9,858	11,194	1,335	13.5
우주항공청	9,085	9,495	410	4.5
해양수산부	7,488	8,517	1,029	13.7
농촌진흥청	7,147	7,735	588	8.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454	7,176	1,722	31.6
국토교통부	4,879	5,336	457	9.4
질병관리청	2,514	2,642	128	5.1
농림축산식품부	2,267	2,617	350	15.5
기상청	1,448	2,397	949	65.6
식품의약품안전처	1,620	1,719	100	6.2
산림청	1,319	1,526	207	15.7
문화체육관광부	1,062	1,515	454	42.7
행정안전부	1,103	1,142	39	3.5
해양경찰청	489	762	272	55.6
국방부	716	749	32	4.5
기타(원자력안전위원회 외 12개 부처)[2, 3]	9,865	3,773	△6,092	△61.8
합계	**295,968**	**354,978**	**59,010**	**19.9**

주 1)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 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괄 집계함(열린재정 기준).
주 2) 기후대응기금은 '25년 기획처(전 기획재정부), '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총괄 집계함.
주 3)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유산청, 경찰청, 지식재산처, 소방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달청, 법무부, 관세청, 대통령경호처,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26년 예산 순).

● 각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감내역의 세부 현황은 [부록-6] 참조

제2절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23.1%(2조 2,092억 원)가 증가한 11조 7,930억 원임

- '26년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등 5개 계속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이관되었으며, 원자력기금은 과기정통부에서 총괄 집계함
  - 다만,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26년 2,316억 원)은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규제계정('26년 6개 사업, 488억 원)은 원안위에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음
- '26년 과기정통부의 〈프로그래머블미디어핵심기술개발〉 1개 사업('26년 40억 원)이 방통위로 이관되었음

표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 [비중, b/a]	**95,838 (32.4)**	**117,930 (33.2)**	**22,092**	**23.1**
• 일반회계	73,510	89,968	16,458	22.4
• 특별회계	13,903	19,159	5,256	37.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42	8,378	3,936	88.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07	4,708	501	11.9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4,158	4,639	481	11.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092	1,426	334	30.6
- 우편사업특별회계	4	8	4	89.7
• 기금	8,425	8,804	378	4.5
- 원자력기금[1)]	1,922	2,805	883	45.9
- 방송통신발전기금	3,053	2,778	△276	△9.0
- 정보통신진흥기금	2,901	2,632	△269	△9.3
- 과학기술진흥기금	549	590	40	7.3

주 1)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안전규제계정(원안위) R&D사업은 '26년부터 포함(488억 원, 회계이관에 따라 원자력기금은 과기정통부에서 총괄 집계)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 〈개인기초연구〉: ('25) 1조 9,053억 원 → ('26) 2조 2,657억 원 (3,604억 원 / 18.9% 증)

- '86년 〈특정기초연구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세 유형(리더·신진·중견)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개인연구지원〉 사업을 '16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였음
- '17년에는 교육부의 〈개인기초연구〉(674억 원)와 공동 투자·운영하는 '부처 매칭형' 사업으로 개편됨
-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과제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1,439개 중 단일 세부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26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예산의 19.2%를 차지하며,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에서도 6.4%를 차지함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5) 3,611억 원 → ('26) 4,430억 원* (819억 원 / 22.7% 증)

- 산학연에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미래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 사업임

  * 내역사업 중 일부가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과기정통부만 집계한 사업비임.

■ 〈나노·소재기술개발〉: ('25) 3,004억 원 → ('26) 3,307억 원 (303억 원 / 10.1% 증)

-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개발을 통해 나노·소재의 글로벌 기술우위 확보, 주력산업 소재·부품 기술자립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관련 연구기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26 신규) 767억 원

- 피지컬AI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협업지능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및 연구 클러스터化, 연구협업 생태계 구축 추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2. 방위사업청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방위사업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19.4%(9,502억 원)가 증가한 5조 8,396억 원임

- ’26년부터 방사청의 〈근접방어무기체계-Ⅱ〉 1개 사업이 일반재정으로 이관되었음

표 4-3 방위사업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방위사업청(b) [비중, b/a]	**48,894 (16.5)**	**58,396 (16.5)**	**9,502**	**19.4**
• 일반회계	48,894	58,396	9,502	19.4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보라매〉: (’25) 718억 원 → (’26) 8,399억 원 (7,681억 원 / 1,069.6% 증)

- ’26년 방사청 연구개발예산의 14.4%를 차지하며, 공군의 장기운용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Medium급 한국형 전투기(KF-X)를 국제공동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임

■ 방위사업청 ’26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 약 158억 원 규모로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사업 등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함

3. 산업통상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산업통상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1.2%(609억 원)가 감소한 5조 2,155억 원임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로 부처명이 변경되었으며, ’26년부터 기존 에너지 관련 30개 계속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음

- 이관된 사업은 전력기금 19개, 에특회계 6개, 방폐기금 4개, 일반회계 1개 사업임

표 4-4 산업통상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산업통상부(b) [비중, b/a]	**52,764 (17.8)**	**52,155 (14.7)**	**△609**	**△1.2**
• 일반회계	24,174	30,590	6,415	26.5
• 특별회계	22,596	21,334	△1,262	△5.6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8,158	19,485	1,327	7.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03	1,521	119	8.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36	328	△2,708	△89.2
• 기금	5,994	232	△5,762	△96.1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55	232	77	49.7
- 전력산업기반기금	5,439	-	△5,439	순감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00	-	△400	순감

주) ’25년 예산은 개편 전 산업통상자원부 본예산으로 기재함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소재부품기술개발〉: (’25) 1조 1,780억 원 → (’26) 1조 2,909억 원 (1,130억 원 / 9.6% 증)

● ’26년 산업부 연구개발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에서도 3.6%를 차지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 8. 5.)’ 등의 이행을 위해 추진됨

■ 〈산업혁신기반구축〉: ('25) 2,408억 원 → ('26) 2,685억 원 (276억 원 / 11.5% 증)

-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소·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산업기술국제협력〉: ('25) 2,088억 원 → ('26) 2,322억 원 (233억 원 / 11.2% 증)

-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26 신규) 1,666억 원

- 주력산업-팹리스 협력 기반 K-온디바이스 AI생태계 구축으로 주력산업 제품 첨단화 및 팹리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4. 중소벤처기업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44.8%(6,790억 원)가 증가한 2조 1,959억 원임

- 이 중 핵심이 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투·융자연계기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동 4개 일반회계 사업은 '26년 기준으로 중기부 예산의 85.0%를 차지하며, '25년 대비 60.4%(7,036억 원)가 증가한 1조 8,676억 원임

표 4-5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중소벤처기업부(b) [비중, b/a]	**15,170 (5.1)**	**21,959 (6.2)**	**6,790**	**44.8**
■ 일반회계	13,442	19,999	6,556	48.8
■ 특별회계	1,727	1,961	233	13.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70	1,855	484	35.4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357	106	△251	△70.3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창업성장기술개발〉: ('25) 5,960억 원 → ('26) 7,864억 원 (1,904억 원 / 31.9% 증)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디딤돌, 전략형, TIPS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인 TIPS는 액셀러레이터 등의 운영사가 고급기술 창업팀에 투자·보육하고, 정부R&D와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지원함
  - '25년부터 기존의 일반형 TIPS(스타트업), 특화형 TIPS(딥테크) 2개 트랙과 함께 글로벌 TIPS(글로벌)를 신설하여 총 3개의 트랙을 운영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투·융자연계기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25) 5,680억 원 → ('26) 1조 812억 원 (5,132억 원 / 90.4% 증)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등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임
  - '26년부터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 분리되어, 3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됨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25) 216억 원 → ('26) 969억 원 (754억 원 / 349.6% 증)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의 공급망협력 및 기업혁신역량강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26 신규) 50억 원

- 글로벌 탄소감축 압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중소기업의 지속적 탄소저감 동력 창출 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D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5. 기후에너지환경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586.6%(1조 8,729억 원)가 증가한 2조 1,922억 원임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었으며, '26년 예산 중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30개 계속사업('26년 9,400억 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음
- '26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26년 8,182억 원)

표 4-6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기후에너지환경부(b) [비중, b/a]	**3,193 (1.1)**	**21,922 (6.2)**	**18,729**	**586.6**
• 일반회계	167	427	259	155.1
• 특별회계	3,026	6,555	3,529	116.6
- 환경개선특별회계	3,026	3,722	696	23.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784	2,784	순증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9	49	순증
• 기금	-	14,940	14,940	순증
- 기후대응기금	-	8,182	8,182	순증
- 전력산업기반기금	-	6,355	6,355	순증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403	403	순증

주) '25년 예산은 개편 전 환경부 본예산으로 기재함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25) 464억 원 → ('26) 495억 원 (30억 원 / 6.6% 증)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건강한 환경조성 및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선진 환경정책을 지원하고, 환경분야별 이슈·현안의 과학적 지원과 미래 환경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임

■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25) 167억 원 → ('26) 224억 원 (57억 원 / 33.9% 증)

-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미래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자원 안정성 지속 확보로 국가 물관리 정책 지원 및 국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임

■ 〈생물자원발굴 및 분류 연구〉: ('25) 148억 원 → ('26) 159억 원* (11억 원 / 7.1% 증)

-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립을 위하여 자생생물 신종·미기록종 후보 발굴, 해외생물자원의 발굴·확보 및 국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한국 생물지 발간, 생물자원의 유전자(체) 다양성 연구, 화분매개 곤충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 중 일부가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기후부만 집계한 사업비임.

■ 〈CLEAN-AIR 기술개발〉: ('26 신규) 163억 원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한 미해결 대기환경 현안 및 미래이슈 대응을 위한 대기환경분야 기술 성능 확보 및 실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6. 교육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교육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3.8%(527억 원)가 증가한 1조 4,323억 원임

● ’26년 교육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사업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만 이루어짐

표 4-7 교육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교육부(b) [비중, b/a]	**13,796 (4.7)**	**14,323 (4.0)**	**527**	**3.8**
• 특별회계	13,796	14,323	527	3.8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3,796	14,323	527	3.8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25) 5,930억 원 → (’26) 6,208억 원 (278억 원 / 4.7% 증)

● 이공학 전 분야의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연구자 연구역량 확대와 지속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임

-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학술연구혁신지원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 연구자 및 대학부설연구소,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인문사회 기초연구〉: (’25) 2,570억 원 → (’26) 2,884억 원 (314억 원 / 12.2% 증)

● 인문사회분야 연구형태별(개인-공동-집단), 연구자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 체계적 지원으로 연구역량 강화와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임

■ 〈사회과학 연구지원〉: (’25) 137억 원 → (’26) 144억 원 (8억 원 / 5.5% 증)

● 국가·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집단을 육성하여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와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7. 보건복지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보건복지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13.5%(1,335억 원)가 증가한 1조 1,194억 원임

표 4-8 보건복지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보건복지부(b) [비중, b/a]	**9,858 (3.3)**	**11,194 (3.2)**	**1,335**	**13.5**
• 일반회계	9,672	10,955	1,283	13.3
• 특별회계	112	164	52	46.6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	112	113	1	0.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1	51	순증
• 기금	74	74	-	-
- 국민건강증진기금	74	74	-	-

주 1)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5) 632억 원 → (’26) 1,088억 원 (456억 원 / 72.2% 증)

●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의 적시성·효과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해 ‘임무 트랙(Mission-Track)’과 ‘신속 트랙(Fast-Track)’, 필수의료 혁신 R&D 지원, 임무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지원

■ 〈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 (’25) 768억 원 → (’26) 1,014억 원 (246억 원 / 32.0% 증)

●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융합연구-사업화-글로벌진출’을 아우르는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자 성장 단계를 전주기 지원

■ 〈연구중심병원육성〉: ('25) 818억 원 → ('26) 947억 원 (129억 원 / 15.7% 증)

- 진료영역에서의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병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6 신규) 200억 원*

- 미래 의료기기 선도기술 확보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신시장 선점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와의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복지부만 집계한 사업비임.

8. 우주항공청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우주항공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4.5%(410억 원)가 증가한 9,495억 원임

표 4-9 우주항공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우주항공청(b) [비중, b/a]	**9,085 (3.1)**	**9,495 (2.7)**	**410**	**4.5**
• 일반회계	9,085	9,495	410	4.5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25) 450억 원 → ('26) 809억 원 (359억 원 / 79.8% 증)

● 달 궤도선에 이어 1.8톤급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고,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달 착륙 후 표면 과학임무 수행으로 독자적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임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25) 420억 원 → ('26) 590억 원* (170억 원 / 40.5% 증)

●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신속한 위기상황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군겸용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및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방사청, 해경청과의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우주청만 집계한 사업비임.

■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 ('26 신규) 188억 원

● 다목적실용위성 6호 후속으로 차세대 영상레이더(SAR) 탑재 전천후 한반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지구 저궤도 실용급 관측위성의 국내독자 개발·운용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공공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9. 해양수산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해양수산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13.7%(1,029억 원)가 증가한 8,517억 원임

표 4-10 해양수산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해양수산부(b) [비중, b/a]	**7,488 (2.5)**	**8,517 (2.4)**	**1,029**	**13.7**
• 일반회계	6,235	7,504	1,269	20.3
• 특별회계	1,253	1,013	△240	△19.1
- 교통시설특별회계	895	578	△317	△35.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6	415	59	16.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20	18	900.0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25) 79억 원 → (’26) 611억 원 (532억 원 / 677.0% 증)

●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확보 등 국가적 극지이슈 대응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임

- 총톤수 16,560톤급, 1.5m/3노트 이상의 쇄빙능력, 문풀 및 모듈형 연구시설 장비가 적용된 친환경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설계·건조·시험항해 수행을 목표로 함

■ 〈수산시험연구〉: (’25) 437억 원 → (’26) 474억 원 (37억 원 / 8.4% 증)

●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개발·활용하여 국가 수산정책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관할해역 정밀 해양탐사 기술개발〉: (’26 신규) 70억 원

● 황-동중국해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 특성조사로 해양관할권 확보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해양경계획정 협상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10. 농촌진흥청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농촌진흥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8.2%(588억 원)가 증가한 7,735억 원임

표 4-11 농촌진흥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농촌진흥청(b) [비중, b/a]	**7,147 (2.4)**	**7,735 (2.2)**	**588**	**8.2**
• 일반회계	7,059	7,575	517	7.3
• 특별회계	88	159	71	80.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2	159	77	93.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	△6	순감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원예특작시험연구〉: ('25) 749억 원 → ('26) 774억 원 (25억 원 / 3.3% 증)

● 품종육성, 수급안정(안정생산), 수확후관리기술 개발 등 원예특작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대응 첨단 융복합기술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임

■ 〈작물시험연구〉: ('25) 615억 원 → ('26) 706억 원 (92억 원 / 14.9% 증)

● 벼, 밭작물(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 등), 간척지농업, 고령지 작물, 소득식량 작물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의 부가가치 제고 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임

■ 〈대체단백특화시장맞춤형원료화〉: ('26 신규) 78억 원

● 국산 생물자원(식물, 곤충 등) 기반 대체 단백 소재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화 및 특화시장 창출을 위한 맞춤형 원료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임

1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31.6%(1,722억 원)가 증가한 7,176억 원임

표 4-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b) [비중, b/a]	**5,454 (1.8)**	**7,176 (2.0)**	**1,722**	**31.6**
• 일반회계	5,330	6,921	1,591	29.8
• 특별회계	124	255	131	106.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4	255	131	106.0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 ('25) 5,417억 원 → ('26) 7,148억 원 (1,731억 원 / 31.9% 증)

● '26년은 전년 대비 25개 기관 전체의 예산이 증액되었음([부록-5B] 참조)

■ 국제협력사업(ODA): ('25) 37억 원 → ('26) 28억 원 (9억 원 / 23.9% 감)

●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지원〉(14억 원) 및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14억 원) 2개 사업이 ODA로 진행되고 있음

- '26년부터 기존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캄보디아 국가정책 연구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 3개 사업이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통합되었음
- '26년부터 〈세계은행과의 공동연구 사업〉이 일반재정으로 이관되었음

12. 국토교통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국토교통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9.4%(457억 원)가 증가한 5,336억 원임

- ’23년부터 수행한 〈전기자동차안전성평가및통합안전기술개발〉 사업이 일반회계로 진행되었으나, ’26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됨

표 4-13 국토교통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국토교통부(b) [비중, b/a]	**4,879 (1.6)**	**5,336 (1.5)**	**457**	**9.4**
• 일반회계	3,022	3,351	329	10.9
• 특별회계	1,857	1,986	129	6.9
- 교통시설특별회계	1,807	1,936	129	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	50	-	-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비전통오일생산플랜트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 (’25) 310억 원 → (’26) 473억 원 (163억 원 / 52.5% 증)

- 오일샌드로부터 오일을 추출하기 위한 생산·순환, 수집분리, 수처리, 부분개질 기술개발 및 캐나다 현지 통합실증을 통해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플랜트건설 관련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핵심기술개발사업〉: (’25) 212억 원 → (’26) 307억 원* (95억 원 / 45.0% 증)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초기 상용화(’25년~’29년) 개시 이후 성장기를 대비한 기술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이 검증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로 UAM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기상청과의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국토부만 집계한 사업비임.

■ 〈고부가가치융복합물류배송인프라혁신기술개발사업〉: ('25) 144억 원 → ('26) 156억 원 (12억 원 / 8.4% 증)

- 라스트마일 스마트 배송기술 개발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물류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인터페이스를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임

■ 〈지역특화형자율주행서비스모델및실증기술개발〉: ('26 신규) 45억 원

-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및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통하여 자율주행 상용화 및 사회적 수용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13. 질병관리청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질병관리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5.1%(128억 원)가 증가한 2,642억 원임

표 4-14 질병관리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질병관리청(b) [비중, b/a]	**2,514 (0.8)**	**2,642 (0.7)**	**128**	**5.1**
• 일반회계	2,513	2,641	128	5.1
• 특별회계	2	2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	2	2	-	-

주 1)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25) 383억 원 → (’26) 411억 원 (27억 원 / 7.2% 증)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의 조사·감시·예방·진단·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반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임

■ 〈소외질환 극복연구〉: (’26 신규) 32억 원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예방진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임

14. 농림축산식품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15.5%(350억 원)가 증가한 2,617억 원임

표 4-15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농림축산식품부(b) [비중, b/a]	**2,267 (0.8)**	**2,617 (0.7)**	**350**	**15.5**
• 일반회계	500	533	34	6.7
• 특별회계	1,767	2,084	317	17.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67	2,068	301	17.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6	16	순증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25) 418억 원 → (’26) 448억 원* (30억 원 / 7.2% 증)

- 국가재난형 등 동물질병,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 방지·예방·진단기술개발과 동물복지 향상 기술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임

  * 내역사업 중 일부가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농식품부만 집계한 사업비임.

■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26 신규) 70억 원*

- 농업·농촌 노동력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하여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전환(RX) 기술 기반의 농업 로봇·드론 활용 및 협업기술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농진청과의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농식품부만 집계한 사업비임.

15. 기상청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기상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65.6%(949억 원)가 증가한 2,397억 원임

표 4-16 기상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기상청(b) [비중, b/a]	**1,448 (0.5)**	**2,397 (0.7)**	**949**	**65.6**
• 일반회계	1,448	2,397	949	65.6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 (’25) 195억 원 → (’26) 1,111억 원* (916억 원 / 469.5% 증)

● 고품질의 기상·우주기상 관측정보를 생산하고, 민간 주도로 정지궤도 위성 개발체계를 전환하여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 및 정지궤도 위성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위성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우주청과의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기상청만 집계한 사업비임.

■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26 신규) 34억 원

● 위험기상 및 미래수요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상장비 및 관측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16. 식품의약품안전처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6.2%(100억 원)가 증가한 1,719억 원임

표 4-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식품의약품안전처(b) [비중, b/a]	**1,620 (0.5)**	**1,719 (0.5)**	**100**	**6.2**
• 일반회계	1,620	1,719	100	6.2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25) 194억 원 → (’26) 257억 원 (64억 원 / 32.9% 증)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독성·약리·임상 및 부정물질 및 담배 분석·실험동물·대체시험법 등 안전성 예측·평가 기반기술을 확립하는 사업임

■ 〈AI 기반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연구〉: (’26 신규) 59억 원

● 의약품에 대한 기존 부작용(독성)평가 결과의 개인별 적용 한계 극복을 위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예측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의약품 허가·심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17. 산림청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산림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15.7%(207억 원)가 증가한 1,526억 원임

● ’26년부터 산림청의 〈열대·아열대 임업기술개발 공적개발원조〉 1개 사업이 일반재정으로 이관되었음

표 4-18 산림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산림청(b) [비중, b/a]	**1,319 (0.4)**	**1,526 (0.4)**	**207**	**15.7**
• 일반회계	1,275	1,385	110	8.6
• 특별회계	44	141	97	222.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4	141	97	222.9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산림과학연구〉: (’25) 424억 원 → (’26) 521억 원 (98억 원 / 23.0% 증)

● 산림자원 조성·이용과 환경이 조화된 산림과학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일류의 산림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민행복, 국토건강, 세계녹화를 선도하는 산림과학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 (’26 신규) 57억 원

●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소재의 인체 기능성 검증과 양산화를 통하여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18. 문화체육관광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42.7%(454억 원)가 증가한 1,515억 원임

표 4-19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문화체육관광부(b) [비중, b/a]	**1,062 (0.4)**	**1,515 (0.4)**	**454**	**42.7**
• 일반회계	1,042	1,413	370	35.5
• 기금	20	103	83	424.2
- 국민체육진흥기금	8	65	57	715.6
- 관광진흥개발기금	12	38	26	223.3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문화기술 연구개발〉: (’25) 600억 원 → (’26) 832억 원 (232억 원 / 38.6% 증)

● 유망 서비스 분야이자 핵심 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서비스 융합 기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문화기술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문화산업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 (’26 신규) 57억 원

● 의료데이터와 연계한 운동활동기록 데이터화 및 활용형 AX기술 개발로, 노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과 운동-건강 AX 신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임

19. 행정안전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행정안전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3.5%(39억 원)가 증가한 1,142억 원임

표 4-20 행정안전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행정안전부(b) [비중, b/a]	**1,103 (0.4)**	**1,142 (0.3)**	**39**	**3.5**
• 일반회계	1,047	1,058	11	1.0
• 특별회계	56	84	28	50.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6	84	28	50.0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 (’25) 144억 원 → (’26) 153억 원 (9억 원 / 6.0% 증)

●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임

- 재난원인과학조사, 잠재재난 위험요소 발굴, 대형실험시설 활용 등 고유업무 지원연구를 포함함

■ 〈재난안전산업우수기술개발지원〉: (’26 신규) 20억 원

● 우수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상, 기술·제품 고도화 및 현장 보급을 위한 사업화 R&D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20. 해양경찰청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해양경찰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55.6%(272억 원)가 증가한 762억 원임

표 4-21 해양경찰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해양경찰청(b) [비중, b/a]	**489 (0.2)**	**762 (0.2)**	**272**	**55.6**
• 일반회계	489	762	272	55.6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AI기반해양재난대응체계CDX기술개발〉: (’25) 10억 원 → (’26) 48억 원 (38억 원 / 380.0% 증)

● 인공지능 현장 업무적용 확대를 위하여 해양재난 데이터를 AI 활용(학습·인식) 형태로 변환하는 디지털전환(DX) 체계 및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AI기반해상긴급상황접수및대응체계개발〉: (’26 신규) 10억 원

● 현재 해양경찰청 인력 중심의 무선통신 조난신호 청취 업무를 ‘AI기반 신고접수·대응 시스템’ 개발 및 구축으로, 접수자의 인적 오류를 해소하고 안정적 신고 접수·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임

21. 국방부

(1)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

■ 국방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4.5%(32억 원)가 증가한 749억 원임

표 4-22 국방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 정부연구개발예산(a)	295,968	354,978	59,010	19.9
■ 국방부(b) [비중, b/a]	**716 (0.2)**	**749 (0.2)**	**32**	**4.5**
• 일반회계	716	749	32	4.5

(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한국국방연구원〉: (’25) 559억 원 → (’26) 574억 원 (15억 원 / 2.7% 증)

● 군사전략·군사력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정책 대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출연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연구사업비, 시설사업비 등을 포함함

■ 〈국방ICT혁신기술〉: (’25) 10억 원 → (’26) 67억 원 (57억 원 / 565.1% 증)

● 국방혁신 4.0에 따른 국방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기술개발 시 국가·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ICT 분야 국방 필요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신속히 군에 실용화하는 사업임

22. 기타 부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12개 부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61.8%(6,092억 원)가 감소한 3,773억 원임

- ’26년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등 5개 계속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이관되었으며, 원자력기금은 과기정통부에서 총괄 집계함
  - 다만,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26년 2,316억 원)은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규제계정(’26년 6개 사업, 488억 원)은 원안위에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음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었음
- 기후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기재부에서 기후부로 변경되었음

표 4-23 2026년도 기타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부 처	2025년(A)	2026년(B)	증감(B-A)	증감률
원자력안전위원회[1)]	1,017	702	△314	△30.9
국가유산청	624	695	70	11.3
경찰청	640	682	42	6.5
지식재산처 (전 특허청)	648	682	34	5.3
소방청	305	503	198	64.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138	138	순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7	133	46	52.9
조달청	30	80	50	169.5
법무부	44	52	8	18.2
관세청	38	49	11	29.7
대통령경호처	30	33	3	10.0
고용노동부	-	16	16	순증
기획예산처 (전 기획재정부)[2)]	6,402	8	△6,394	△99.9
합계	**9,865**	**3,773**	**△6,092**	**△61.8**

주1) 원안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R&D사업은 ’26년 미포함(488억 원, 회계이관에 따라 원자력기금은 과기정통부에서 총괄 집계)
주2) 기후대응기금 소관 부처가 ’26년회계연도부터 기획예산처(전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

V

2026년도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총괄현황
제2절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V 2026년도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총괄현황

■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특별회계 총액은 ’25년 대비 13.6%(8,271억 원)가 증가한 6조 9,299억 원으로,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의 19.5%를 차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10개의 특별회계 중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의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됨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47]는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춘천병원 등 8개 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 ’26년 기준 정부연구개발예산액 상위 3개의 특별회계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함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25년 2조 2,673억 원 → ’26년 2조 4,229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5년 1조 4,888억 원 → ’26년 1조 5,74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5년 7,405억 원 → ’26년 1조 2,184억 원)
- 그 외 조달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음(’25년 30억 원 → ’26년 80억 원, 169.5%)

47) 정부개편에 따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소관 사업이 특허청(책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

표 5-1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22년~2026년)

(단위: 억 원, %)

부 처 명	2022년[1]	2023년[2]	2024년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 특별회계 합계	**57,655 (56,345)**	**65,276 (81,063)**	**56,468**	**61,027**	**69,299**	**8,271**	**13.6**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3,201 (22,335)	22,923 (22,923)	21,382	22,673	24,229	1,557	6.9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2,969 (28,756)	13,347	14,888	15,749	861	5.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275 (15,070)	9,840 (9,840)	5,685	7,405	12,184	4,778	64.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480 (8,277)	8,568 (8,568)	7,578	7,366	8,075	709	9.6
• 환경개선특별회계	3,622 (3,617)	3,882 (3,882)	2,890	3,026	3,722	696	23.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77 (3,476)	3,207 (3,207)	2,104	2,172	2,624	451	20.8
• 교통시설특별회계	2,825 (2,796)	3,043 (3,043)	2,724	2,702	2,514	△188	△7.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39 (738)	791 (791)	735	761	115	△647	△84.9
• 조달특별회계	-	17	18	30	80	50	169.5
• 우편사업특별회계	32	4	4	4	8	4	89.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3]	4 (3.8)	4	-	-	-		

주 1) '22년 괄호 안은 추경예산 및 수정된 기금운용계획 기준.
2) '23년 괄호 안은 국회확정 예산.
3) '24년부터 정책연구비가 비R&D로 이관됨.

제2절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표 5-2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
연혁	• '19년 7월, 日 경제산업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의 對韓 수출 제한 계획 발표 • '19년 8월, 日 수출 대상 국가 중 신뢰 가능 국가 27개 목록에서 대한민국 제외 • '19년 8월,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및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 '19년 10월,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개최 및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 출범 • '19년 12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제68조) 마련(「국가재정법」제4조 제3항의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 개정 병행) •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3년 7월 김경만 의원 등 12인이 '29년까지 연장할 것을 발의하였으며, '24년 6월 이재관 의원 등 21인이 다시 연장할 것을 발의하고 '24년 12월 개정됨 • '24년 12월 3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을 변경 및 시행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25년 1차 추경 이후 기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특별회계'로 표기명이 변경됨
재원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관세 징수액의 10%)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기술료, 보유자산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원리금 수입 등
주요 R&D 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 • 〈나노·소재기술개발〉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19년 7월부터 불거진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 중 하나로 ’20년도부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목표로 함(「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

● 소특회계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2조 4,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511억 원)가 증가함

표 5-3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운용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운용규모	22,843	24,354	1,511	6.6
• R&D (34개 사업)	**22,673**	**24,229**	**1,557**	**6.9**
- 산업통상자원부 18개 사업	18,158	19,485	1,327	7.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개 사업	4,158	4,639	481	11.6
- 중소벤처기업부 4개 사업	357	106	△251	△70.3
• 비R&D (5개 사업)	170	124	△46	△27.1
-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85	46	△39	△46.2
-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47	43	△5	△9.7
- 〈투자연계형기술확보지원사업〉	14	15	1	3.8
-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상용화 실증확산〉	15	15	△1	△5.0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	9	6	△2	△27.3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토대로 산출.

● ’26년 소특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조 4,229억 원이며, 소특회계 전체 운용규모 중 99.5%를 차지함

- 소특회계로 지원하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에서 산업부가 1조 9,485억 원으로 80.4%를 차지하며, 과기정통부(4,639억 원, 19.1%)와 중기부(106억 원, 0.4%)가 뒤를 이음

● 소특회계는 ’26년 기준 총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에서 6.8%, 정부연구개발예산 특별회계 중에서는 35.0%를 차지함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표 5-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
연혁	• '22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방향 발표 • '22년 11월, 교육부·기획재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되던 교육세('22년 기준 3조 원 가량)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 발표 • '22년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국회 통과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23년 2월, 관계부처 합동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발표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관련 예산통합 및 교육 예산 조정) 및 '25년까지 관련 예산 확대 추진
재원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주요 R&D 사업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국립대학 인건비〉(연구계수: 0.26) • 〈인문사회 기초연구〉

'22년 12월 31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동 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분야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 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동 회계의 주요 재원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동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예산이며, 그 규모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전입되는 금액의 50%를 넘지 않음
- 고특회계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17조 8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834억 원)가 증가함
  - 전체 운용규모로는 '26년 정부 특별회계 중 2순위를 기록

표 5-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용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용규모	163,998	170,831	6,834	4.2
• R&D (9개[1), 2)] 사업)	**14,888**	**15,749**	**861**	**5.8**
- 교육부 7개[1), 2)] 사업	13,796	14,323	527	3.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개[1)] 사업	1,092	1,426	334	30.6
• 비R&D (60개[1), 2)] 사업)	149,110	155,083	5,973	4.0

주 1) '25년~'26년 공통 사업 수.
2) 일부 연구계수사업(R&D+비R&D)을 포함.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토대로 산출.

- '26년 고특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조 5,749억 원이며, 고특회계 전체 운용규모 중 9.2%를 차지함
  - 고특회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9개 중 7개는 교육부 소관, 나머지 2개는 과기정통부 소관임
- 고특회계는 '26년 기준 총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4.4%, 정부연구개발예산 특별회계 중에서는 22.7%를 차지함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표 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연혁	• '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05년 예산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10년 예산부터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기조로 新지역발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면 개편 • '15년 예산부터 지자체 자율성 제고 및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18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으로 회계명칭 변경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정으로 회계명칭 변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 주세수입 전액 (지역자율계정에 40%, 지역지원계정에 60%)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전입금 • 개발·과밀·개발제한구역보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주요 R&D 사업	• 〈연구개발특구육성〉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 지특회계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22조 9,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4%(8조 1,672억 원) 증가함

- 전체 운용규모로는 정부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투자되고 있음

그림 5-1 최근 5년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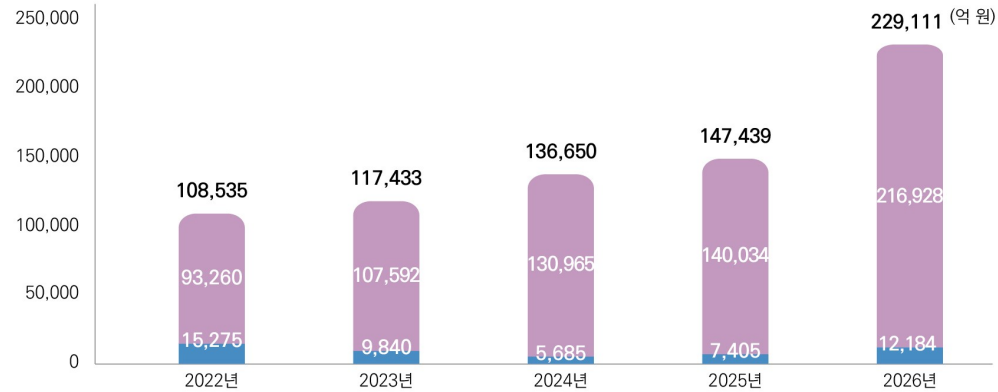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특(비R&D)	93,260	107,592	130,965	140,034	216,928
지특(R&D)	15,275	9,840	5,685	7,405	12,184

■ (R&D분야) ’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64.5%(4,778억 원) 증가한 1조 2,184억 원임

● ’25년도 기준 지특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중 3순위를 기록하였고, ’26년에도 3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표 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2025년(A)	2026년(B)	증감 (B-A)	증감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	**7,405**	**12,184**	**4,778**	**64.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42	8,378	3,936	88.6
• 중소벤처기업부	1,370	1,855	484	35.4
• 산업통상부	1,403	1,521	119	8.5
• 농촌진흥청	82	159	77	93.3
• 행정안전부	56	84	28	50.0
• 보건복지부	-	51	51	순증
• 국토교통부	50	50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49	49	순증
• 해양수산부	2	20	18	900.0
• 농림축산식품부	-	16	16	순증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표 5-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혁	•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재정개혁계획 추진 • '94년 3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정,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통합 • '94년 12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정 • '97년 1월 가스안전관리기금 통합 • '25년 10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소관부처가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변경
재원	• 에너지 관련 부과금 및 과징금 •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등
주요 R&D 사업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조)

● 에특회계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5조 9,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102억 원) 증가함

– '26년부터 에특회계의 관리운용주체가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변경됨(개정, '25.10.1)

그림 5-2 최근 5년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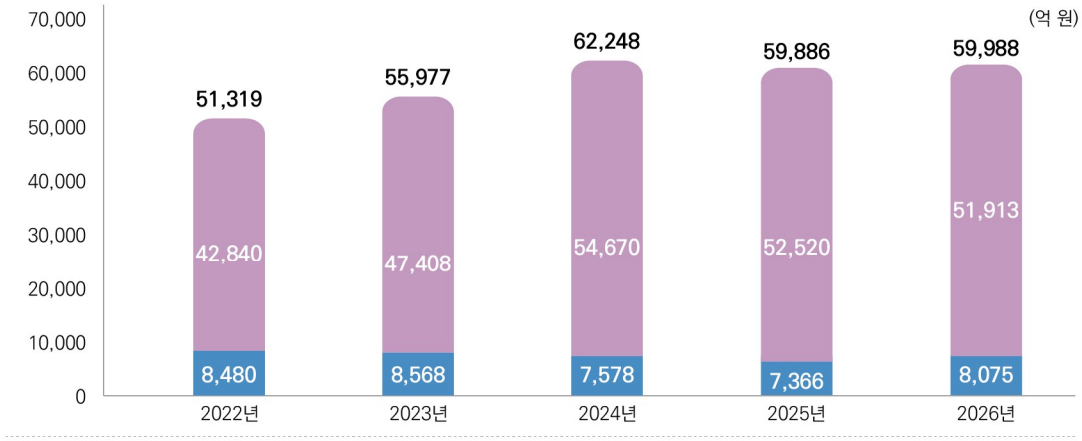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에특(비R&D)	42,840	47,408	54,670	52,520	51,913
에특(R&D)	8,480	8,568	7,578	7,366	8,075

(R&D분야) ’26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9.6%(709억 원) 증가한 8,075억 원임

- 에특회계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기관지원,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연구기관지원이 61.5%(4,963억 원)를 차지
  - 연구기관지원 사업은 아래 기관들의 시설 지원 및 주요사업비를 포괄함[48],
    ①에너지경제연구원(’25년 124억 원 → ’26년 255억 원)
    ②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5년 896억 원 → ’26년 1,008억 원*
    ③한국원자력연구원(’25년 1,657억 원 → ’26년 1,867억 원)*
    ④한국전기연구원(’25년 638억 원 → ’26년 743억 원)*
    ⑤한국지질자원연구원(’25년 1,016억 원 → ’26년 1,090억 원)*

    * ’24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연구기관은 시설 지원과 연구운영비가 분리되었으며, 위 금액은 이를 합산한 금액임.

48) 해당 예산액은 기관 출연금 중 에특회계에 해당하는 액수로, 기관 전체의 예산이 아님.

5. 환경개선특별회계

표 5-9 환경개선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확대 및 관리·운영 효율화
연혁	• '80년 환경청 발족 • '95년 환경청 → 환경부 승격, 「환경개선특별회계법」재정 • '12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통합
재원	• 환경관련 과징금·가산금·부과금·수수료 • 저탄소차 협력금 •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등
주요 R&D 사업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CLEAN-AIR 기술개발〉

■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

● 환특회계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4조 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8,661억 원) 감소함

그림 5-3 최근 5년간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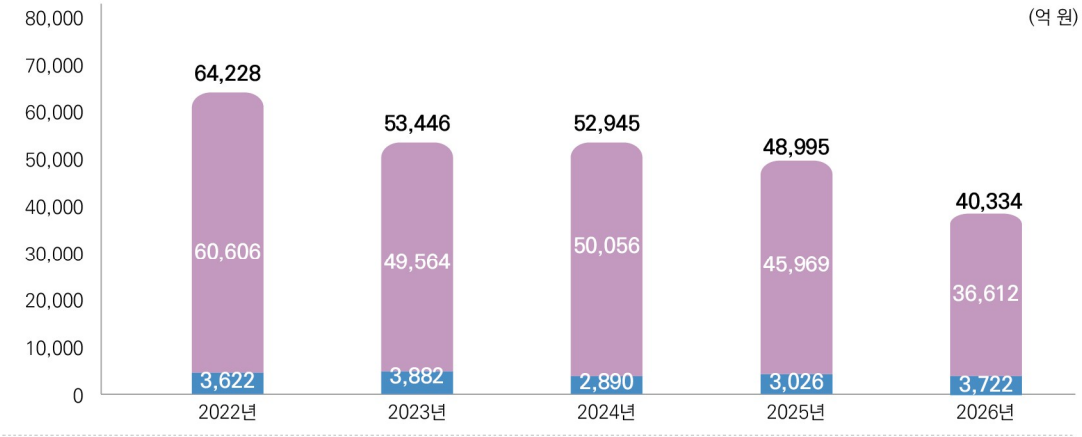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환특(비R&D)	60,606	49,564	50,056	45,969	36,612
환특(R&D)	3,622	3,882	2,890	3,026	3,722

(R&D분야) ’26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23.0%(696억 원) 증가한 3,722억 원임

- 환특회계는 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해당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1조 3,739억 원 중 환특회계가 27.1%의 비중을 차지함
  - 최근 5년간 환특회계 중 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0.7%로, 동기간 환특회계 전체 운용규모 증가율(△11.0%)을 넘어서고 있음
-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4%(34억 원)가 증가함
- ’26년 환특회계 정부연구개발 신규사업은 〈CLEAN-AIR 기술개발〉 등 15개(852억 원)이며, ’25년부로 종료된 사업은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 등 5개(209억 원) 사업임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표 5-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연혁	• '89년 4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발표 • '90년 10월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대통령 대처 지시 • '91년 1월 농어촌대책 수립 • '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발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5,500억 원) • '91년 11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정
재원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농어촌특별세액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등
주요 R&D 사업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술사업화지원〉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조)

● 농특회계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7조 3,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4,667억 원) 감소함

그림 5-4 최근 5년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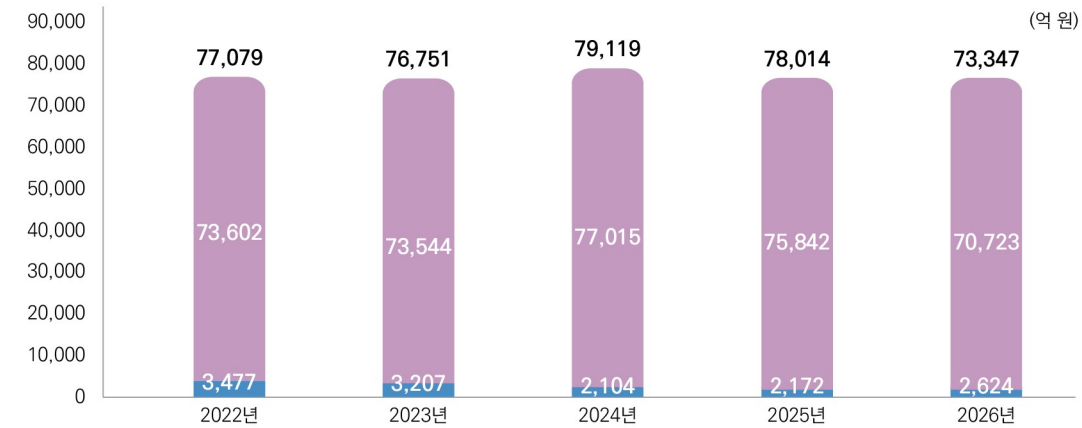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농특(비R&D)	73,602	73,544	77,015	75,842	70,723
농특(R&D)	3,477	3,207	2,104	2,172	2,624

■ (R&D분야) ’26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20.8%(451억 원) 증가한 2,624억 원임

- 최근 5년간 농특회계 중 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8%임

● 농특회계에 포함된 3개 부·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가운데 농식품부가 2,06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78.8%)를 차지하며, 산림청이 141억 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5.4%)을 차지함

- ’26년 기준 농식품부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사업이 389억 원으로 전체 농특회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기술사업화지원〉(농식품부, 249억 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농식품부, 178억 원)*이 뒤를 이음

  * 과기정통부, 농진청과의 다부처 사업이며 표기된 액수는 농식품부만 집계한 사업비임.

● 해수부가 농식품부의 뒤를 이어 두번째 높은 비중(415억 원, 15.8%)을 차지함

- ’26년 기준 농특회계의 해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는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94억 원) 사업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진청의 경우 ’25년부로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6억 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농특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가 됨

7. 교통시설특별회계

표 5-11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
연혁	• '93년 12월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정 – 기존의 도로사업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던 고속철도·공항사업을 흡수·통합 – 설치당시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4개 계정 운용 • '95년 12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개정 • '97년 4월 광역교통시설계정 신설 • '03년 12월 도시철도계정 분리·신설 • '05년 7월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명칭 변경 • '06년 12월 유효기간을 '09년까지 연장 • '09년 12월 한시법 체계를 영구법화(유효기간 삭제)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도로, 철도 등의 이용에 따른 수입금 • 국유재산 매각 대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등
주요 사업	•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핵심기술개발사업〉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 〈수소전기동차실증〉 • 〈내구연한도래노후디젤기관차대체를위한친환경수소전기기관차기술개발〉

■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

● 교특회계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15조 7,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8,153억 원) 증가함

– 전체 운용규모로는 '26년 정부 특별회계 중 3순위를 기록

그림 5-5 최근 5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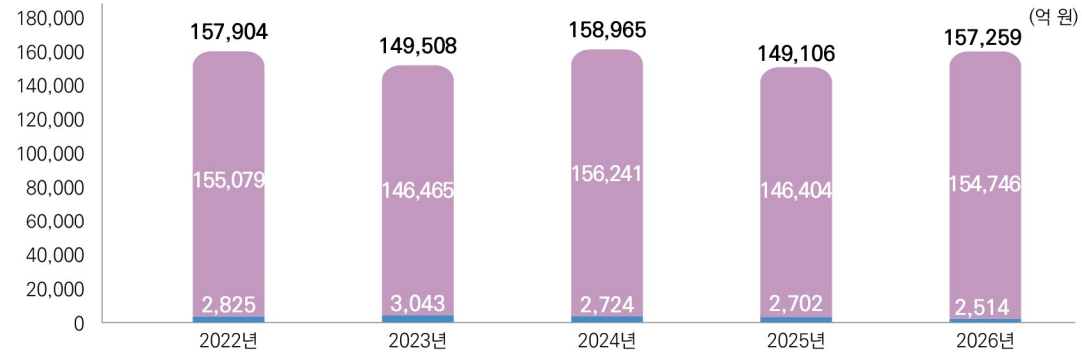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교특(비R&D)	155,079	146,465	156,241	146,404	154,746
교특(R&D)	2,825	3,043	2,724	2,702	2,514

■ (R&D분야) ’26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7.0%(188억 원) 감소한 2,514억 원임

- 최근 5년간 교특회계 중 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9%로, 교특회계 전체 운용규모의 연평균 증가율(△0.1%)보다 근소하게 낮음

● ’26년 기준 국토부 30개, 해수부 9개 사업을 교특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음

- 국토부는 ’26년 〈과적단속효율화를위한화물차중량정보플랫폼구축및실증기술개발사업〉 등 9개 사업(19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25년 완료 사업은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등 9개 사업(461억 원)임
- 해수부는 ’26년 〈화물차 중량정보 플랫폼 구축 및 육상-항만 연계 실증사업〉 1개 사업(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25년 완료 사업은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 등 5개 사업(218억 원)임

● 교특회계 내 주요 증가 사업은 〈수소전기동차실증〉 사업으로 ’25년 대비 1,071.8%(107억 원) 늘어난 117억 원 규모임

8. 기타 특별회계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5) 761억 원 → ('26) 115억 원 (647억 원 / 84.9% 감)

-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가진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책임운영기관법」 제4조, 제27조)
- 책특회계의 총 8개 기관회계 중 국립재활원 1개 기관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국립마산병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은 전년 수준 유지, 나머지 2개 기관은 감소하였음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구개발사업비 10.3%(3억 원) 및 임상연구비 11.2%(0.2억 원)가 감소하였고, 국립나주병원은 임상연구비 2.4%(0.02억 원)가 감소하였음
  - 정부개편에 따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소관 사업이 책특회계(특허청)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

표 5-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	761	115	△647	△84.9
• 국립재활원	78	83	4	5.5
• 국립정신건강센터	31	28	△3	△10.4
• 국립병원 6개[1)]	5	5	△0	△0.4
• 특허청	648	-	△648	순감

주 1) 국립마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춘천병원.

조달특별회계: ('25) 30억 원 → ('26) 80억 원 (50억 원 / 169.5% 증)

- 정부기업[49]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50]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함(「정부기업예산법」 제3조)

우편사업특별회계: ('25) 4억 원 → ('26) 8억 원 (4억 원 / 89.7% 증)

-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조특회계와 동일하게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를 근거로 설치

49)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함(「정부기업예산법」 제2조).
50)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VI

2026년도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총괄현황
제2절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VI 2026년도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총괄현황

■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기금 총액은 ’25년 대비 15.6%(3,313억 원) 증가한 2조 4,517억 원으로, 정부연구개발 총 투자의 6.9%를 차지함

-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은 해당 기금 자체의 운용여건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상대적으로 유연함
- 기금에 속하는 46개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사업(1,320억 원)이 ’25년에 종료되었음

표 6-1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22년~2026년)

(단위: 억 원, %)

부 처 명	2022년[1]	2023년	2024년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 기금 합계	25,363 (25,072)	24,429	19,323	21,205	24,517	3,313	15.6
• 기후대응기금	5,481	5,806	4,306	6,392	8,182	1,790	28.0
• 전력산업기반기금	6,658 (6,367)	6,270	5,378	5,439	6,355	917	16.9
• 원자력기금	2,115	2,078	1,710	1,922	2,805	883	45.9
• 방송통신발전기금	4,163	4,118	3,188	3,053	2,778	△276	△9.0
• 정보통신진흥기금	4,125	3,892	3,194	2,901	2,632	△269	△9.3
• 과학기술진흥기금	424	630	563	549	590	40	7.3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18	266	346	400	403	2	0.6
• 국가유산보호기금	362	363	353	300	349	50	16.6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341	329	165	155	232	77	49.7
• 국민건강증진기금	1,078	279	67	74	74	-	-
• 국민체육진흥기금	207	189	29	8	65	57	715.6
• 관광진흥개발기금	51	66	12	12	38	26	223.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	-	16	16	순증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	37	41	12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3]	102	102	-	-	-		

주 1) ’22년 괄호 안은 운용계획변경 후 규모.
2) ’24년부로 소진기금의 중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1개 종료.
3) ’23년부로 중진기금의 중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3개 종료.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입 이력

표 6-2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입 이력

기금명	편입 이력
관광진흥개발기금	• '11년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사업〉(문광부)이 신설되어 연구개발재원에 추가됨
국민건강증진기금	• '06년 복지부 일반회계 추진사업을 기금으로 이관
국민체육진흥기금	• '07년 〈스포츠과학기술개발사업〉(문광부)이 신설되면서 연구개발재원에 추가됨
기후대응기금	• 기후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22년 1월 1일 신설하였으며, '22년 기후기금은 연구개발을 포함한 총 2.4조 원 규모로 편성
국가유산보호기금	• 문화재청 소관 일부 연구개발사업이 '09년 신설된 문화재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재원에 추가되었으며, 「국가유산기본법」시행('24. 5. 17.)과 함께 문화재보호기금에서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09년 〈중저준위방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지경부)과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개발〉(지경부) 2개 사업이 신설되면서 연구개발재원에 추가됨
방송통신발전기금	• 기존 지경부 소관 정보통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1년 새롭게 신설된 방발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재원에 추가됨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14. 4. 23.)에 따라 '15년 새롭게 신설된 기금으로, 정부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기술료를 재원으로 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0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중기부)이 신설되어 연구개발재원에 추가됨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자력진흥법」에 의거 1997년부터 운용되어 왔으며, 동 법 개정('16. 1. 1. 시행)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자력기금으로 변경되고,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기정통부)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원안위)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됨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국가재정법」 개정('14. 1. 1.)으로 기술료수입이 국고로 세입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기술료 사업을 기금 내 경상사업으로 신설함

제2절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 기후대응기금

표 6-3 기후대응기금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재원	• 정부의 출연금, 장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 기금 운용 수입금
용도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주요 R&D 사업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 〈에너지인력양성〉 •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설치(「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 기후대응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2조 5,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2,667억 원) 증가함

표 6-4 기후대응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 사업추진부처별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 기후대응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1)]	**6,392**	**8,182**	**1,790**	**28.0**
• 산업통상부 42개 → 37개 사업[2)]	2,911	2,592	△319	△11.0
• 기후에너지환경부 15개 → 20개 사업[2)]	811	1,711	900	1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개 사업	832	1,677	845	101.5
• 해양수산부 18개 사업	745	961	216	29.0
• 국토교통부 14개 사업	535	720	185	34.6
• 농촌진흥청 3개 사업	424	390	△34	△7.9
• 산림청 2개 사업	89	130	41	45.9
• 중소벤처기업부 2개 사업	44	-	△44	순감

주 1) 각 부처 사업 개수는 '25년~'26년 공통 사업 수를 의미.
2) 기후부가 신설되면서 〈에너지인력양성〉 등 5개 사업의 실제 수행부처가 '26년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

■ (R&D분야) '26년 기후대응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28.0%(1,790억 원) 증가한 8,182억 원임

● '26년 기준, 전체 기금 중 가장 많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2.3%, 정부연구개발기금 사업 중 33.4%를 차지함

● 기후대응기금의 정부 사업들은 다른 기금과 달리 예산소관[51)]과 추진부처가 상이하며, 실제 사업추진 부처가 해당 세부사업의 성과관리를 시행함

- '26년 기준으로 기후대응기금 내 국가연구개발사업수와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산업부로 종료사업을 제외하고 22개 사업이 포함되며 규모는 2,592억 원으로 '25년 대비 11.0%(319억 원) 감소함
- '26년 기후대응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수는 30개(사업추진부처 기준 산업부 11개, 과기정통부 8개, 기후부 5개, 해수부 5개, 농진청 1개)로 총규모는 1,785억 원임
- 종료사업 수는 27개(사업추진부처 기준 산업부 15개, 환경부 4개, 해수부 3개, 국토부 2개, 중기부 2개, 농진청 1개)로 총규모는 943억 원임

51) '26년도부터 기후기금 예산 총괄 관리·운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2. 전력산업기반기금

표 6-5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재원	•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 및 가산금 * 부담금: 전기요금 × 6.5% • 신재생에너지공급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등
용도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사업 • 전력수요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등
주요 R&D 사업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함(「전기사업법」 제48조)

● 전력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2조 6,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6,806억 원) 증가함

그림 6-1 최근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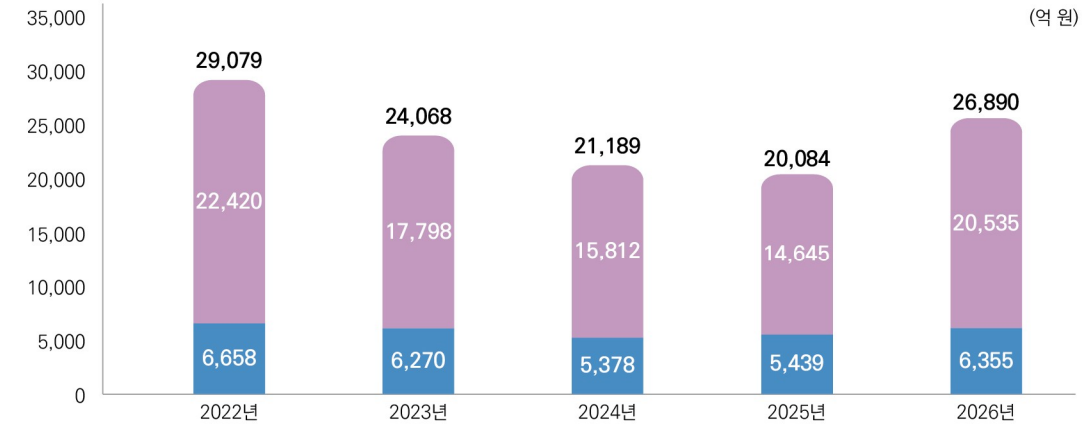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력(비R&D)	22,420	17,798	15,812	14,645	20,535
전력(R&D)	6,658	6,270	5,378	5,439	6,355

(R&D분야) ’26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16.9%(917억 원) 증가한 6,355억 원임

- 전체 기금 중 두 번째 큰 규모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1.8%, 정부연구개발기금 사업 중 25.9%를 차지함
- 전력기금 중 연구개발 분야 21개 사업은 모두 기후부 소관이며, 주요 지원 항목은 전력공급기술, 전력수요기술, 기반구축, 기술정책, 에너지신산업 등으로 구성됨
  - ’26년부터 전력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변경됨(개정, ’25.10.1)
  - ’26년 주요 증액 사업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3,319억 원, 전년 대비 178억 원 / 5.7% 증액),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839억 원, 전년 대비 488억 원 / 138.7% 증액), 〈LiB기반위험성평가및안정성강화기술개발〉(160억 원, 전년 대비 110억 원 / 220.8% 증액) 등이 있음
  - ’26년 신규사업은 〈차세대핵연료시범연료봉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수요기업 맞춤형 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 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이 ’25년 종료됨

3. 원자력기금

표 6-6 원자력기금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
재원	•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 2항에 따른 가산금 * 발전용원자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용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 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주요 R&D 사업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을 설치함(「원자력진흥법」 제17조)

- 원자력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4,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995억 원) 증가함
-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안위가 각각 별도로 관리·운용함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15년까지 재정 외로 운영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16년부터 원자력기금에 포함시키면서 신설

그림 6-2 최근 5년간 원자력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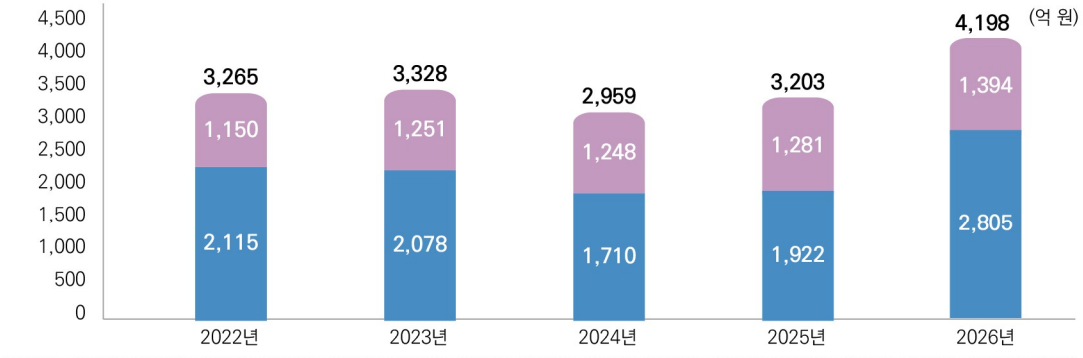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원자력(비R&D)	1,150	1,251	1,248	1,281	1,394
원자력(R&D)	2,115	2,078	1,710	1,922	2,805

■ (R&D분야) ’26년 원자력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45.9%(883억 원)가 증가한 2,805억 원임

- 원자력기금은 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8%, 정부연구개발기금 사업 중 11.4%를 차지함
-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요 지원 사업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25년 366억 원 → ’26년 874억 원),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25년 357억 원 → ’26년 383억 원) 등이 있음
  -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한 의무지출 사업으로, 원자력기금에서는 ITER 현금분담금을 일부 출연하고, 장치개발 비용은 전력기금에서 조달함
  - ’26년은 〈원자로 재료열화 대응 혁신기술개발〉(30억 원) 등 3개 사업이 총 63억 원의 규모로 신규 추진될 예정임

표 6-7 원자력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 사업추진부처별 현황(2025년~2026년)

(단위: 억 원, %)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증감률
■ 원자력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1)]	**1,922**	**2,805**	**883**	**45.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계정) 14개 사업	1,922	2,316	394	20.5
•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규제계정) 6개 사업	-	488	488	순증

주 1) 각 부처 사업 수는 ’25년~’26년 공통 사업 수를 의미.

4. 방송통신발전기금

표 6-8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
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통신 주파수 할당대가의 일부(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배분)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용도	•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등
주요 R&D 사업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함(「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 방발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5,8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7%(1,519억 원) 감소함

그림 6-3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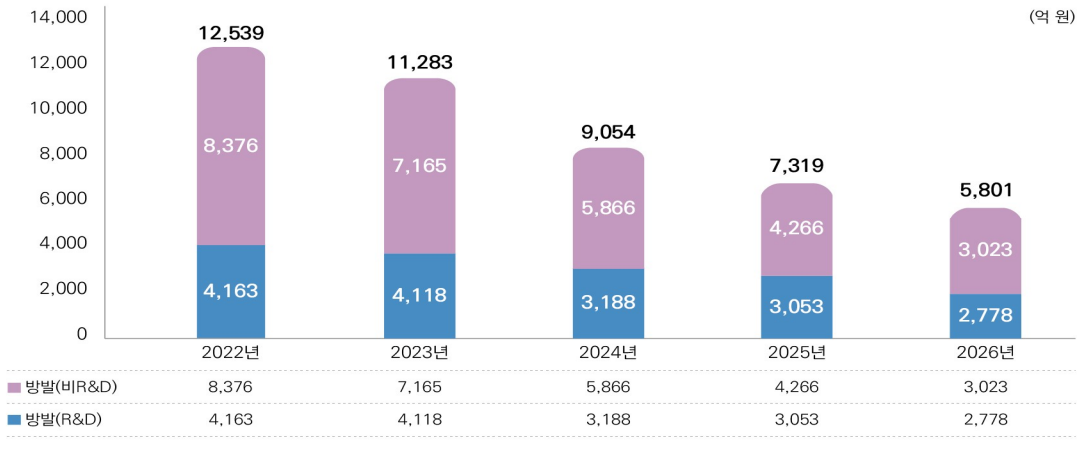

■ (R&D분야) ’26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9.0%(276억 원) 감소한 2,778억 원임

- 방발기금은 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8%, 정부연구개발기금 사업 중 11.3%를 차지함
- 방발기금 중 연구개발 분야 주요 지원 항목은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등으로 구성됨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1,447억 원, 전년 대비 143억 원 / 11.0% 증액) 등 2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등 3개 사업은 감액되었음
  - ’26년 신규사업은 없으며, 〈양자암호통신 집적화 및 전송기술 고도화〉 등 2개 사업이 ’25년 종료됨

5. 정보통신진흥기금

표 6-9 정보통신진흥기금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부담금 •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익금
용도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금 등
주요 R&D 사업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함(「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 정진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7,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1,227억 원) 감소함

그림 6-4 최근 5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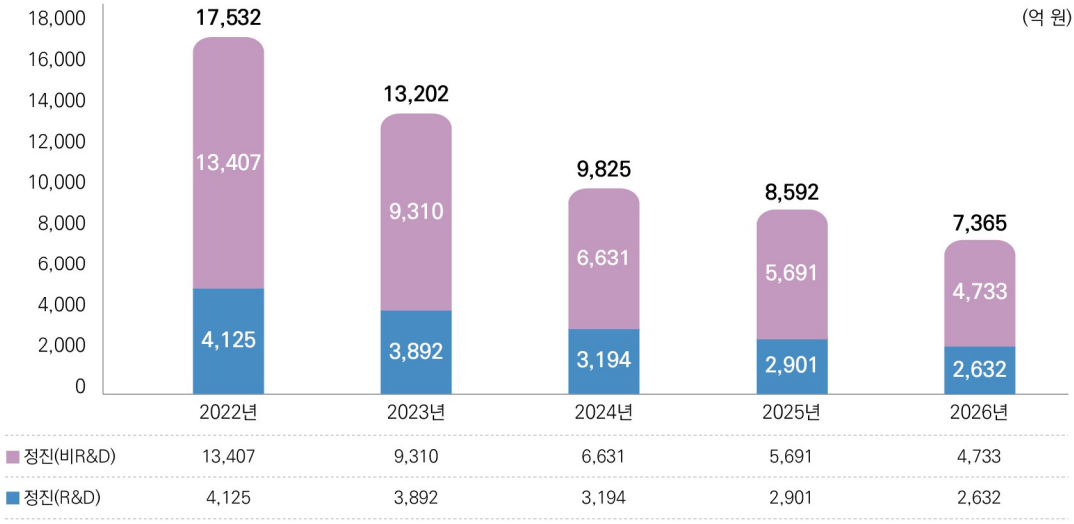

(R&D분야) ’26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9.3%(269억 원) 감소한 2,632억 원임

- 정진기금은 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7%, 정부연구개발기금 사업 중 10.7%를 차지함
- 정진기금 중 연구개발 분야 주요 지원 항목은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등으로 구성됨
  - ’26년은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1,074억 원, 전년 대비 81억 원 / 8.1% 증액) 등 3개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등 3개 사업은 전년 수준 유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은 감소하였음
  - ’26년 신규사업은 없으며, 〈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7개 사업이 ’25년 종료됨

6. 과학기술진흥기금

표 6-10 과학기술진흥기금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 확충, 과학기술인 우대 환경 조성 및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국가 과학기술 역량 제고 • 과학문화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증진
재원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복권수익금: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 중 12.583% •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 기금운용수익금 및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
용도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국공립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 부대시설의 확보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
주요 R&D 사업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 〈과학영재양성〉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함(「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과학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26년 기준 9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9억 원) 감소함

그림 6-5 최근 5년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추이(2022년~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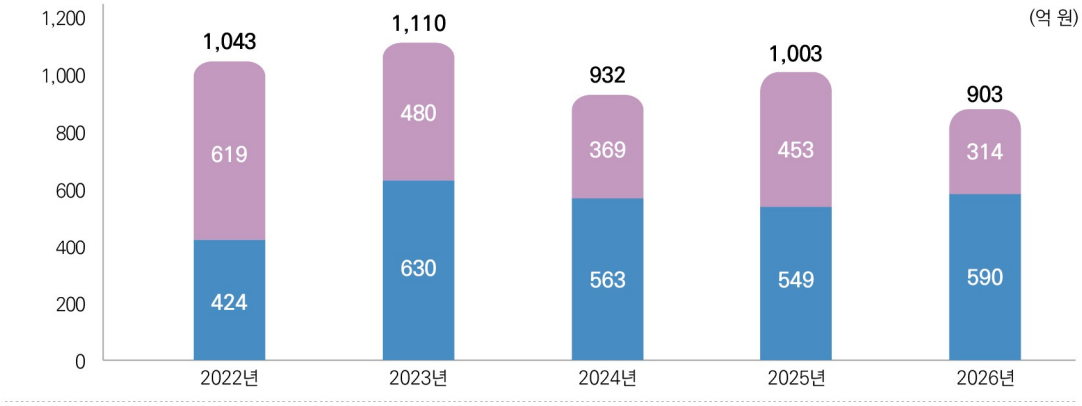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과학(비R&D)	619	480	369	453	314
과학(R&D)	424	630	563	549	590

(R&D분야) ’26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5년 대비 7.3%(40억 원) 증가한 590억 원임

- 최근 5년간 과학기금 중 연구개발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과학기금 전체 운용규모의 연평균 증가율(△3.5%)을 크게 상회함

- 과학기금 중 연구개발 분야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25년 197억 원* → ’26년 207억 원), 〈과학영재양성〉(’25년 144억 원 → ’26년 170억 원)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됨

  - ’26년 신규사업 및 ’25년 종료사업은 없음

    * R&D-비R&D 간 이관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며, 상세 내역은 [부록-14] 참조

7. 기타 기금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5) 400억 원 → ('26) 403억 원 (2억 원 / 0.6% 증)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폐기금을 설치함(「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
  - '26년부터 방폐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변경됨(지침 개정, '25.10.1)
- 방폐기금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이며, '26년 신규사업은 1개, '25년 종료사업은 없음
  - '26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20억 원) 1개 사업이 신규 추진될 예정임

국가유산보호기금: ('25) 300억 원 → ('26) 349억 원 (50억 원 / 16.6% 증)

-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함(「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52]
- 국가유산보호기금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문화유산 조사연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운영지원〉 2개 사업이며, '26년 신규사업 및 '25년 종료사업은 없음
  - 〈문화유산 조사연구〉('25년 212억 원 → '26년 249억 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의 연구를 포괄 수행함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5) 155억 원 → ('26) 232억 원 (77억 원 / 49.7% 증)

- 정부는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촉기금을 설치함(「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 산촉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로 나뉘는데, 이는 동 기금이 산업기술 R&D 혁신 및 촉진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당사국 의무 준수 및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연구개발분야는 전액 산업기술혁신계정에서 지원)
- 산촉기금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성과활용촉진〉 등 4개 사업이며, '26년 신규사업 및 '25년 종료사업은 없음

52) '24. 5. 1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은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변경됨.

국민건강증진기금: ('25) 74억 원 → ('26) 74억 원 (전년 동)

-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금을 설치함(「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 건강기금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형 수술질향상 프로젝트(K-NSQIP)〉,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플랫폼 기술개발사업〉 2개 사업이며, '26년 신규사업 및 '25년 종료사업은 없음

국민체육진흥기금: ('25) 8억 원 → ('26) 65억 원 (57억 원 / 715.6% 증)

- 정부는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기금을 설치함(「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 체육기금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 2개 사업이며, '26년 신규사업은 1개, '25년 종료사업은 없음
  - '26년은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57억 원) 1개 사업이 신규 추진될 예정임

관광진흥개발기금: ('25) 12억 원 → ('26) 38억 원 (26억 원 / 223.3% 증)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기금을 설치함(「관광기금법」 제1조, 제2조)
- 관광기금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 사업이 유일함
  - 〈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38억 원) 사업은 '26년 신규사업이며,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12억 원) 사업이 '25년 종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6 신규) 16억 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기금을 설치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 '26년 신규사업은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16억 원) 사업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광남, 이달환, 주상호, 이정원, 조황희, 홍순기 (199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94-06,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강태혁 (2010),「한국예산제도론」, 율곡출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019년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2019년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발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글로벌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발표”, 2023. 11. 27.,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5),「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기관 2024-03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처 (각 연도),「과학기술연감」.

관계부처 합동 (2018),「「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2),「「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4),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2024. 6. 3., 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24),「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 - R&D 예비타당성조사의 획기적 개선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26),「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안)」.

국회예산정책처 (2010a),「출연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0b),「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1년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Ⅰ」.

국회예산정책처 (2017),「대한민국 재정 2017」.

국회예산정책처 (2018),「대한민국 재정 2018」.

국회예산정책처 (2022),「대한민국 재정 2022」.

국회예산정책처 (2025a),「대한민국 재정 2025」.

국회예산정책처 (2025b),「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5c),「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권명화 (2013),「주요국 성과지향적 R&D 예산조정배분체계 활용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3-0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획재정부 (1999),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R&D)예산 편성방식 개선”,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a), “2022년도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 원, - 뉴딜 R&D, 금년보다 48% 증가된 3.6조 원 투자 -”, 2021. 9. 2.,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b),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 3. 25.,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c),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 7. 24.,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2a),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 2. 21.,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2b),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 5. 29.,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예산처 (전 기획재정부) (각 연도),「나라살림 예산개요」.
김덕용, 정민우 (2021).「예산제도 및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Ⅱ)」, 일반 2021-00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헌, 김나영, 김은지, 김병도 (2014),「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과제.
김인철 (2007),「해설 국가재정법」, 동강사.
김종범 (1999),「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예산제도 개선 및 우선 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춘순 (2012),「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박영사.
대한민국 정부 (2025a),「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부 (2025b),「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대한민국 정부 (2025c), “2025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5. 5. 1.,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5d),「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2021),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연구개발 통합 추진·관리한다 - 11. 9. 통합 연구관리 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출범 -”, 2021. 11. 9.,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6),「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박소희 (2014),「정부 R&D 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가능성 탐색」, 연구보고 2014-0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해룡 (2012),「예산정책론」, 세명서관.
엄익천, 이장재 (2009), “2010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편성(안) 분석과 향후 투자방향”,「과학과 기술」, 42(12), 40-43.
이장재 (1995), “1995년 정부 과학기술관계예산의 개요”,「과학기술정책」, 5(2), 50-5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최미희, 최종국 (2011), “조세지출의 운용 및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소고”,「세무학 연구」, 28(1), 305-333.
하연섭 (2010),「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한국재정정보원 (2022), “’22년 1차 추가경정예산”, 재정통계 BRIEF, NO.9.
황용수 (1997), “과학기술예산 통계·지표체계”,「과학기술정책동향」, 7(8), 41-53.
OECD (1995), “Review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Korea Part Ⅱ: Examiners’ Report”, DSTI/STP, 95(15), Paris: OECD.
OECD (2015), Frascati Manual 2015: Guidelines for Collecting and Reporting Data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Innovation Activities,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25),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5 September, (www.oecd.org/sti/msti.htm).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re.kr).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www.index.go.kr).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재정경제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Budget : FY 2026

나영식, 신우영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